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한-UAE CEPA 비준동의〉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500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요 약

가. 총론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UAE CEPA”라고 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라고 함)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1) 추진 경과 및 비준 동향

우리 정부는 2021년 10월 한-UAE CEPA 협상 개시 선언 및 총 2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최종 타결을 선언함.

이후 협정문 번역 등 국내절차를 거쳐 2024년 5월 29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식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함.

UAE 정부는 2024년 12월 27일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

한-UAE CEPA는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도록 규정[1]되어 있는바, 우리 정부는 정확한 발효일자는 양국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정부의 비준동의 추진 사유

정부는 한-UAE CEPA 추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FTA로서, 관세철폐율 90% 이상 달성, K-콘텐츠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까지 반영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임.

또한, UAE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지역 제2의 교역국인 점을 고려할 때, 한-UAE CEPA는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함.

구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통하여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산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라면, 조미김 등 우리 농축수산물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게임, 시청각 서비스 등 우리측 관심 서비스 분야의

1) 협정문 제18.4조

시장 개방으로, UAE를 거점으로 한 중동 지역 내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마지막으로, UAE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에너지·자원 협력 및 바이오 협력 등을 협정에 반영함으로써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됨.

나. 상품 양허결과

양측은 협정 발효 후 관세 철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품목수 기준으로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확보함.

< 한-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UAE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무관세	2,185	19.3	360	2.3	888	11.3	504	11.8
유관세	6,702	59.3	1,221	7.9	2,942	37.4	305	7.2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최종 관세철폐율	**10,444**	**92.5**	**11,203**	**72.3**	**7,168**	**91.2**	**3,500**	**82.0**
50%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제외	848	7.5	14	0.1	684	8.7	769	18.0
총합계	**11,293**	**100**	**15,492**	**100**	**7,856**	**100**	**4,270**	**100**

* 품목수 : (우리측) HS 2022, 10단위 기준, (UAE측) HS 2022, 8단위 기준
수입액 : (우리측) '22년 (UAE측) '22년 (단위 : 백만불)

< 한-UAE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계목강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	8,887	즉시 철폐	3,830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향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곶감, 떡, 김치,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에틸렌중합체필름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명란, 참치(냉동),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1,135	5년 철폐	95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연료,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조미김, 인삼, X선 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기타정밀화학연료,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낙농품, 오징어, 새우, 칠면조고기, 왁스, 기타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422	10년 철폐	2,385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라면, 인스턴트 커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염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	10,444	철폐 소계	7,168	-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848	양허 제외	684	폐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분품, 가죽(양, 돼지 등),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	11,293	총합계	7,856	-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결과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6.4%(8,960개), 수입액 기준 72.3%(111.9억불)의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UAE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화학제품은 일부 소수품목에 한하여 개방하였으며, 민감품목인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의 목재류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UAE는 한-UAE CEP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91.5%(5,720개), 수입액 기준 89.9%(34.6억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가전 등에서 UAE측 관세 철폐를 확보하고,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수출 유망품목의 관세도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UAE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농산물 양허결과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6.6%(1,036개), 수입액 기준 92.6%(13.1백만불)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측은 대추야자 등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거나, 육류(양고기, 오리고기 등) 등 對UAE 수입액이 적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고, 식량작물(쌀, 감자 등), 축산물(닭고기 등), 낙농품(꿀, 치즈 등), 과실류(사과, 배 등)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함.

UAE는 한-UAE CEPA를 통해 품목수 기준 88.4%(1,139개), 수입액 기준 9.0%(38백만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커피믹스 등 다수의 K-푸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UAE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

3) 수산물 양허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69.6%(448개), 수입액 기준 24.8%(10.1만불)의 수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측은 어류기름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고, 갈치(냉동), 명태(냉동) 등 우리의 주요 생산 어종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함.

UAE는 품목수 기준 98.4%(309개), 수입액 기준 90.0%(219만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인 전복, 김·조미김, 멸치(건조, 염장)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UAE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

다. 농수산물 분야 지원대책

1) 농산물 분야 한-UAE CEPA 영향분석

한-UAE CEPA 영향평가 보고서[2]에 따르면 국내 농업생산액은 15년 누적 약 8억 6천 9백만원, 연평균 5천 8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과일 생산액이 15년 누적 약 5억 9천만원, 연평균 3천 9백만원 감소, 과채류(채소)의 경우 15년 누적 2억 6천 8백만원, 연평균 1천 8백만원 감소가 예상됨.

2) 수산물 분야 한-UAE CEPA 영향분석

한-UAE CEP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생산은 10년 누적 약 1억원(연평균 약 1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품목별로는 10년 누적 기준 갑각류 약 8천만원, 어류 1천 5백만원 감소가 예상됨.

3) 농수산물 정부대책 분석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UAE CEP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 연평균 58백만원 수준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수산업 분야 또한 한-미국, 한-중국 FTA 등에 비하여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 「한-UAE CEPA 경제적 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2024.9~12월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국내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필요시 기존에 마련한 FTA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라. 원산지

공산품과 기계류, 전기 · 전자제품, 승용차 등 상당 수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별시 세번변경기준(4단위 세번변경 또는 이보다 완화된 6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하거나,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육류·낙농품 · 곡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에 합의하여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품목 목록 및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마. 서비스무역

한-UAE CEPA의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

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 UAE는 온라인 게임,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GATS) 양허수준 이상으로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이나 지상조업 서비스, 비행기 기내식 준비 서비스 등의 분야를 한-EU, 한-영국 FTA 수준으로 양허하였고,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음. 또한, UAE로부터 우리 업계의 관심이 큰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건설서비스 등의 분야를 UAE 기체결 CEPA 최고 수준으로 확보함.

한-UAE CEPA 서비스 분야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발효 이후 제3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에 협상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함. 또한,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 수준의 국내규제 규범을 반영하여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 관련 국내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

바. 디지털 무역

한-UAE CEPA의 디지털 무역 챕터는 핵심 의무 조항인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및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UAE 기체결

FTA 최초로 포함하였음.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AI, 핀테크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함.

사. 경제 협력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관광, 수송, 해운, 디지털경제,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14개 협력분야를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함. 특히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첨단산업 등 5대 분야는 부속서를 통하여 협력활동을 구체화함.

아. 검토의견(총괄)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여 UAE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우위 확보가 예상되며 UAE 시장 선점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됨.

상품 양허결과 관세철폐율 90% 이상을 달성하였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었음.

한편, 우리측은 對UAE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대추야자, 어류기름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고, 쌀, 닭고기, 사과, 갈치(냉동)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對UAE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는 기 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임.

또한, 온라임 게임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등 개방으로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협정문에 명시하여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함.

한-UAE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한-UAE CEPA 비준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목 차

Ⅰ. 제안 및 회부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참고사항 ····· 4

Ⅳ. 검토의견 ····· 5

제1장 총 괄 ····· 5

제2장 상품무역 ····· 29

제3장 원산지 규정 ····· 60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 91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99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104

제7장 무역구제 ····· 119

제8장 서비스무역 ····· 140

제9장 디지털무역 ····· 199

제10장 지식재산 ····· 220

제11장 정부조달 ····· 256

제12장 투자 원활화 협력 ····· 276
제13장 경제협력 ····· 281
제14장 중소기업 ····· 302
제15장 분쟁해결 ····· 312
제16장 예외 ····· 348
제17장 협정의 운영 ····· 353
제18장 최종규정 ····· 360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 365
【참고자료 2】 한-UAE CEPA 영향평가 결과 ····· 368
【참고자료 3】 한-UAE CEPA 국내 보완대책 추진 계획 ····· 369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

Ⅰ.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정　부

2. 제안일자 : 2025년 12월 8일

3.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1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협정 제1.2조).

나.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협정 제2.4조 및 부속서 2-가).

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협정 제7.7조).

라.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협정 제3.2조 및 부속서 3-가).

마. 관세법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효율적 운영 및 간소화, 관세 당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함(협정 제4.2조, 제4.3조).

바.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 스마트농업, 보

건의료산업, 관광, 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력활동을 운영 및 이행함(협정 제13.1조, 제13.2조, 제13.8조).

사.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법규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재심사 및 불복청구를 보장하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투자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통상산업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협정 제1.7조, 제15조 및 제17조).

Ⅲ. 참고사항

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다. 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 보고 참고

라. 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마. 추진경위

○ 2021. 10. 14.	협상 개시
○ 2023. 10. 14.	협상 타결
○ 2024. 5. 21.	제22회 국무회의 심의(협정문)
○ 2024. 5. 29.	협정문 서명(서울)
○ 2025. 3. 4.	제9회 국무회의 심의(부속서한)
○ 2025. 4. 22.	부속서한 서명

Ⅳ. 검토의견

제1장 총 괄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간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상관계 확대·강화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함.

총괄부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개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검토’, ‘주요내용 및 평가’,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함.

< 총괄부문 구성 >

세부 부문	주요 기술 내용
1. 개요	- 추진경과, 국회 제출사유, 한국·UAE 양국의 FTA 등 추진현황
2. 통상조약법상 절차 이행 검토	- 법률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3. 주요내용 및 평가	- 상품, 서비스 등 양허, 원산지규정 등 주요내용 및 평가
4.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	- 양국간 교역현황, 경제적 효과 분석, 보완대책

참고로, 동 비준동의안에서는 해당 통상협정의 명칭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통상협정에 사용되는 주요 명칭으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하

여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시장개방 중심의 협정을 의미함.

반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기본적으로 FTA와 유사한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 및 제도적 협력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는 개념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통상협정의 명칭은 협상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근 추진 중인 통상협정의 경우 경제협력, 공급망 안정,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하여 보다 폭넓은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을 반영하여 'CEP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개 요

가. 추진경과

우리 정부는 2021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UAE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총 2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14일 협상을 타결함.

이후 협정문 번역 등 국내절차를 거쳐 2024년 5월 29일과 2025년 4월 22일에 각각 협정문 및 부속서한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3]에 따라 2025년 12월 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함.

< 한-UAE CEPA 추진 경과 >

ㅇ (2021.4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UAE 측은 양자 CEPA 제안
ㅇ (2021.10월) 한-UAE CEPA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ㅇ (2021.11월) 「중동지역 FTA 추진계획」 국회 산중위 보고
ㅇ (2023.9월~10월) 제1~2차 공식협상 개최 * 1차(두바이, ’23.9.18~21), 2차(서울, ‘23.10.2~5.)
ㅇ (2023.10월) 한-UAE CEPA 타결선언(서울, 10.14)
ㅇ (2024.5월) UAE 정상 방한 계기 한-UAE CEPA 협정문 정식서명(5.29)
ㅇ (2025.4월) 한-UAE CEPA 부속서한 정식서명(4.22)

3)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7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통상조약 협상 진행 전 과정은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UAE CEPA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협상이 개시되었는바, 동 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함.

UAE 정부는 주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 통하여 한-UAE CEPA 발효를 위한 UAE 측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문서로 통보함('25.8.6일자).

한-UAE CEPA는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되도록 규정[4]되어 있는바, 우리 정부는 정확한 발효일자는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UAE 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한편, 한-UAE CEPA 발효 및 이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UAE CEPA 이행법령>

구분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예규
발효 전	4(0)	-	2(0)	1(0)	1(0)
발효 후	0(0)	-	-	-	-

4) 협정문 제18.4조

< 이행법령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소관	법 령 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재정경제부(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한-UAE CEPA 관세율 • 한-UAE CEP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현황: 공포('26.1.6.)
재정경제부(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한-UAE CEPA 원산지 결정기준 • 한-UAE CEP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 한-UAE CEPA에 따른 원산지 조사 방법 등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현황: 공포('26.1.6.)
산업통상부(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UAE 포함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의 1년 이상 경과시 조치 완화 국가에 UAE 포함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현황: 공포('25.12.30)
관세청(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 한-UAE CEP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 발급 등)	- 개정기한: 발효 전 - 추진현황: 공포('26.1.5)

※ 자료: 산업통상부

나. 정부의 비준 추진사유

정부는 한-UAE CEPA 추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FTA로서, 관세철폐율 90% 이상 달성, K-콘텐츠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까지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임. 또한, UAE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지역 제2의 교역

국인 점을 고려할 때, 한-UAE CEPA를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함.

구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통하여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산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라면, 조미김 등 우리 농축수산물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게임, 시청각 서비스 등 우리측 관심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으로, UAE를 거점으로 한 중동 지역 내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마지막으로, UAE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에너지·자원 협력 및 바이오 협력 등을 협정에 반영함으로써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됨.

다.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26년 1월 현재 한-미국 FTA, 한-EU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5] 등 22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한-말레이시아 FTA 등 7건의 협상이 타결 및 서명단계에 있고, 한-태국 CEPA 등 10건은 협상 진행 중임.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임.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짐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26년 1월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발효 (22건, 60개국)	칠레	발효('04.4.1)	'03.2.15 서명 '04.2.16 국회비준동의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5.8.4 서명 '05.12.1 국회비준동의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발효('06.9.1)	'05.12.5 서명 '06.6.30 국회비준동의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발효('07.6.1)	'07.6.1 상품 / '09.5.1 서비스 '09.9.1 투자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1.1)	'09.8.7 서명 '09.11.6 국회비준동의	BRICs국가, 거대시장
	EU	잠정 발효('11.7.1) 전체 발효('15.12.13)	'10.10.6 서명 '11.7.1 국회비준동의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발효('11.8.1)	'11.3.21 서명 '11.6.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개정의정서 발효 ('19.1.1)	'07.6.30 서명 '10.12.3 추가협상 타결 '18.9.24 개정의정서 서명 '18.12.7 국회비준동의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튀르키예	기본·상품협정발효('13.5.1)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18.8.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12.11 기본·상품 협정 국회 비준 동의 '15.2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15.11.서비스·투자협정 국회 비준 동의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14.4.8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15.1.1)	'14.9.22 서명 '14.12.2 국회비준동의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15.6.1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24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15.12.20)	'15.3.23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15.12.20)	'15.5.5 서명 '15.11.30 국회비준동의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24년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콜롬비아	발효('16.7.15)	'13.2.21 서명 '14.4.29 국회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 5개국[3]	온두라스('19.10.1) 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18.2.21 서명 '19.8.2 국회비준동의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발효('21.1.1)	`19.6.10 원칙적타결선언 `19.8.22 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4]	발효('22.2월)	'20.11.15 서명 '21.12.2 국회비준동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발효('22.12.1)	'21.5.12 서명 '22.9월 국회비준동의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발효('22.12.1)	'21.10.26 서명 '22.9월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발효('23.1.1)	'20.12.18 서명 '21.6월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필리핀	발효('24.12월)	'23.9.7 서명 '24.11월 국회비준동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서명	UAE	서명('24.5월)	향후일정 협의중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에콰도르	서명('25.9월)	향후일정 협의중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서명('24.1월), 국회비준동의('25.12월)	여타국가(5개국)의 발효 절차 완료시 발효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타결	GCC[5]	타결('23.12월)	향후일정 협의중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조지아	타결('24.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코카서스지역 유망국
	말레이시아	타결('25.10월)	향후일정 협의중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영국 개선	타결('25.12월)	향후일정 협의중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협상 진행	태국	제7차협상('25.9월)	향후일정 협의중	자원부국, 동남아 시장 진출
	몽골	제4차협상('24.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우즈베키스탄	제2차협상('21.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중앙아 최대시장
	한중일	제16차협상('19.11월)	향후일정 협의중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6]	제7차협상('21.8월)	향후일정 협의중	남미 최대 시장
	인도 개선	제11차협상('24.7월)	향후일정 협의중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칠레 개선	제8차협상('23.11월)	향후일정 협의중	통상환경 변화 반영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	제13차협상('26.1월)	향후일정 협의중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러시아 서비스·투자	제5차협상('20.6월)	향후일정 협의중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 신흥 시장
	IPEF[7]	제7차협상('23.11월)	향후일정 협의중	인태지역 주요 경제블록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포함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7)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인니, 베트남, 말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피지
– 기존 FTA와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으로, 직접적인 시장개방 요소 미포함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검토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래 표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한-UAE CEPA 추진 시 동 법률상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함.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경과 >

구 분		주요 내용	경과 및 결과
협상 전 절차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	◦ 통상조약계획수립 ◦ 통상조약계획의 국회보고	◦ '21.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 한-UAE CEPA 추진계획 ◦ '21.11월 국회 산중위 보고 - 중동지역 FTA 추진계획
	공청회 개최 (제7조)	◦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21.11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 이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시	◦ '21.5~7월 경제적 타당성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체결시 실질 GDP, 후생 등 긍정적 효과 - 실질 GDP 0.03%, 후생 5.6~6.6억불 증가
협상 절차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0조)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없음
협상 후 절차	영향평가 (제11조)	◦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 관련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 '24.9~12월 영향평가 진행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
	협상결과보고 (제12조)	◦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회 및 국민에게 알려야함	◦ 서명일: '24.5.29 ◦ 국회 보고 일자: '24.9.9 산중위 보고 ◦ 협정문 공개: '24.4.4(이후 협정문 현행화)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 통상조약의 서명 후에는 비준동의 요청 필요 ◦ 비준동의 요청시 영향평가결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일 '25.12.8 - 영향평가 결과,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제개정사항 모두 포함
	설명회 개최 (제14조)	◦ 조약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노력해야 함	◦ 비준 이후 발효 전, 활용 설명회 개최 예정

※ 자료: 산업통상부

3. 주요내용 및 평가

한-UAE CEPA는 아래와 같이 총 18개의 장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됨.

< 한-UAE CEPA의 구성 >

구분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총칙	서문	서문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등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목적 확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여타 협정과의 관계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상품	제2장	상품 무역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상대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규정
		- 관세양허 부속서	- 관세 철폐 및 감축 계획 규정
	제3장	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및 원산지 증명, 검증 방식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증명서 정보 -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원산지판정기준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협력 강화 규정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 보호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무역제한 효과 최소화 관련 조치 규정
	제7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 관세 관련 규정
서비스	제8장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관련 당사국 조치에 대한 의무 및 예외
		- 금융서비스	- 양국간 금융서비스 무역 관련 당사국 조치에 대한 의무 및 예외
		- 통신서비스	- 양국간 통신 서비스 규제 관련 의무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	- 양국간 허용되는 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및 입국허용 기준
		-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 개방분야를 열거하여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제9장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규범	제10장	지식재산	상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 집행 등
	제11장	정부조달	민자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개방
협력	제12장	투자 원활화 협력	양국 투자 활동 증진 및 원활화 협력활동 규정
	제13장	경제협력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스마트농업, 보건의료산업, 첨단산업 등 분야의 협력 강화
	제14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구분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총칙	제15장	분쟁해결	양국간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패널 등의 절차 규정
	제16장	예외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및 과세 예외
	제17장	협정의 운영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제18장	최종규정	협정 발효, 개정 및 종료
부속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 에너지·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이 UAE 내 자치지역(토후국)에 있다는 연방헌법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규정

가. 상품 양허결과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측은 92.5%, UAE측은 91.2%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측은 72.3%, UAE측은 82.0%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였음.

< 한-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UAE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무관세	2,185	19.3	360	2.3	888	11.3	504	11.8
유관세	6,702	59.3	1,221	7.9	2,942	37.4	305	7.2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최종 관세철폐율	**10,444**	**92.5**	**11,203**	**72.3**	**7,168**	**91.2**	**3,500**	**82.0**
50%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제외	848	7.5	14	0.1	684	8.7	769	18.0
총합계	**11,293**	**100**	**15,492**	**100**	**7,856**	**100**	**4,270**	**100**

* 품목수 : (우리측) HS 2022, 10단위 기준, (UAE측) HS 2022, 8단위 기준
* 수입액 : (우리측) '22년 (UAE측) '22년 (단위: 백만불)

현행 무관세 품목 및 양허제외 대상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관세

철폐 비중은 우리측 수입액 기준 70.0%, UAE측 수입액 기준 70.2%가 추가 개방되는 수준임.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6.4%(8,960개), 수입액 기준 72.3%(111.9억불)의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가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화학제품의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함.

한편, UAE는 한-UAE CEP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91.5%(5,720개), 수입액 기준 89.9%(34.6억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가전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UAE의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선제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전 등 가전 제품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UAE 내 K-뷰티의 인지도 상승 및 K-방산 수요 확대 등에 따라 화

장품, 무기류 등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를 전부 철폐함으로써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이 개선됨.

< 한-UAE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즉시 철폐	8,212	88.3%	1,571	10.1%	2,815	45.0%	805	20.9%
5년 철폐	549	5.9%	2	0.0%	813	13.0%	54	1.4%
(5년 이내)	8,761	94.2%	1,573	10.2%	3,628	58.0%	860	22.3%
10년 철폐	199	2.1%	9,617	62.1	2,092	33.5%	2,601	67.6%
철폐 소계	**8,960**	**96.4%**	**11,189**	**72.3%**	**5,720**	**91.5%**	**3,461**	**89.9%**
양허 제외	336	3.6%	13	0.1%	502	6.4%	388	9.1%
금지품목	-	-	-	-	15	0.2%	0	0.0%
특별관심품목	-	-	-	-	12	0.2%	0	0.0%
관세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합계	**9,297**	**100%**	**15,478**	**100%**	**6,253**	**100%**	**3,849**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기준

2) 농산물 양허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중 품목수 기준 76.6%(1,036개), 수입액 기준 92.6%(13.1백만불)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측은 대추야자 등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거나, 육류(양고기, 오리고기 등), 주스 등 對UAE 수입액이 적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고, 식량작물(쌀, 감자 등), 축산물(닭고기 등), 낙농품(꿀, 치즈 등), 과실류(사과, 배 등)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對UAE 수입액과 무관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업계를 보호함.

한편, UAE측은 한-UAE CEPA를 통해 품목수 기준 88.4%(1,139개), 수입액 기준 9.0%(38백만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커피믹스 등 다수의 K-푸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UAE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

< 한-UAE CEPA 농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수입액(천불)	
즉시 철폐	422	31.2%	10,532	74.2%	776	60.2%	2,315	0.6%
5년 철폐	447	33.1%	2,513	17.7%	108	8.4%	1,952	0.5%
(5년 이내)	869	64.3%	13,044	91.9%	884	68.6%	4,267	1.0%
10년 철폐	167	12.4%	103	0.7%	255	19.8%	33,406	8.0%
철폐 소계	**1,036**	**76.6%**	**13,147**	**92.6%**	**1,139**	**88.4%**	**37,673**	**9.0%**
양허 제외	316	23.4%	1,049	7.4%	39	3.0%	3,153	0.8%
금지품목	-	-	-	-	19	1.5%	-	0.0%
특별관심품목	-	-	-	-	92	7.1%	377,437	90.2%
미철폐 소계	316	23.4%	1,049	7.4%	150	11.6%	380,590	91.0%
합계	**1,352**	**100%**	**14,196**	**100%**	**1,289**	**100%**	**418,263**	**1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기준

3) 수산물 양허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69.6%(448개), 수입액 기준 24.8%(10.1만불)의 수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측은 어류기름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고, 갈치(냉동), 명태(냉동) 등 우리의 주요 생산 어종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UAE측은 한-UAE CEP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98.4%(309개), 수입액 기준 90.0%(219만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인 전복, 김·조미김, 멸치(건조, 염장)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UAE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

< 한-UAE CEPA 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불)		품목수(개)		수입액(불)	
즉시 철폐	253	39.3%	97	23.7%	239	76.1%	1,280,339	52.7%
5년 철폐	139	21.6%	4,207	1.0%	32	10.2%	615,163	25.3%
(5년 이내)	392	60.9%	101,061	24.8%	271	86.3%	1,895,502	78.0%
10년 철폐	56	8.7%	0	0.0%	38	12.1%	291,716	12.0%
철폐 소계	**448**	**69.6%**	**101,061**	**24.8%**	**309**	**98.4%**	**2,187,218**	**90.0%**
양허 제외	196	30.4%	307,150	75.2%	5	1.6%	242,262	10.0%
합계	**644**	**100%**	**408,211**	**100%**	**314**	**100%**	**2,429,480**	**1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022년 기준

나. 원산지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 것임.

한-UAE CEPA에서는 원산지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 원산지 재료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규정함.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공산품과 관련하여 자동차, 기계, 전자기기 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부분품 글로벌 소싱[6]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7]을 적용하되, 가공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일부품목은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원산지 기준으로 합의함.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관련,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특정 상품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논의의 개시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향후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상품이 한-UAE CEP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다. 서비스무역

한-UAE CEPA의 서비스무역 양허수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 UAE는 온라인 게임,

---

6)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 기업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공급 안정성을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조달하는 전략

7)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의료,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GATS) 양허수준 이상으로 UAE가 체결한 CEPA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이나 지상조업 서비스, 비행기 기내식 준비 서비스 등의 분야를 한-EU, 한-영국 FTA 수준으로 양허하였고,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음. 또한, UAE로부터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건설 서비스 등의 분야를 UAE가 체결한 CEPA 중 최고 수준으로 확보함.

한-UAE CEPA 서비스 분야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발효 이후 제3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에 협상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함.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한-UAE CEPA 발효 후 일방 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가 한-UAE CEPA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타방 당사국은 동등한 대우 제공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당사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협상 기회를 부여해야 함.

한-UAE CEPA의 서비스 분야는 WTO 서비스협정(GATS)이나 한-중국 FTA와 마찬가지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함.

포지티브 방식은 양국이 자유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하여 해당 분야만을 개방토록 하는 것으로, UAE의 경우 기체결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시도한 경험이 없고,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여 한-UAE CEP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는 분야와 그 조건 등을 양허표에 기재함.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국이 체결한 CEP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함에 따라, 우리측은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들의 UAE 진출 여건을 확보함.

라. 디지털무역

한-UAE CEPA의 디지털무역 챕터는 핵심 의무 조항인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및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UAE가 체결한 CEPA 최초로 포함함. 이에 따라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핀테크 솔루션 개발 증진과 양국 핀테크 스타트업 간 협력 장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이니셔티브·규제·정책에 대한 경험과 우수 관행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함.

마. 경제 협력

상호 협력 수요를 토대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관광, 수송, 해운, 디지털경제,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14개 협력분야를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함. 특히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첨단산업 등 5대 분야는 부속서를 통하여 협력활동을 구체화함.

4.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

가. 양국간 교역현황

2025년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은 56.7억불, 수입은 141.1억불로 84.5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2025년 우리나라와 UAE 간 교역규모는 197.8억불로서, UAE는 중동지역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음.

나. 경제적 효과[8)]

8) 「한-UAE CEPA 체결 영향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2024. 12.

1)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24)[9]에 따르면, 한-UAE CEPA 발효 시, 단기적(발효 후 5년간)으로 실질 GDP는 약 0.011% 증가, 소비자 후생은 약 1.94억불 개선, 장기적(발효 후 10년간)으로 실질 GDP는 약 0.02% 증가, 소비자 후생은 약 3.68억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 >

구 분	단기 (5년)	장기 (20년)
실질 GDP 추가 증가율	0.011%	0.02%
후생 수준 증가분	1.94억불	3.68억불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로 검토하였음.

가) 제조업

한-UAE CEPA 발효 이후, 자동차 · 전기전자 · 생활용품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석유정제 · 원유 품목 등에서 수입이 확대되어 한-UAE CEPA 발효 이후 15년간 UAE에 대한 제조업 순수출은 연평균 1,9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5년간 연평균 업종별 순수출 증가효과는 자동차 914억원, 화학 625억원, 전기장비 284억원, 일반기계 211억원 등에서 클 것으로 예상됨.

9) <참고자료2> 한-UAE CEPA 영향평가 결과참조

이에 따라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4,967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자동차 1,294억원, 화학 1,059억원 등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됨.

또한, 2024년 기준 對UAE 원유 수입규모(118억불, 141백만배럴)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13.9%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UAE산 원유 관세 철폐로 우리의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원가 인하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나) 농축산업

국내 농업생산액은 15년 누적 약 8억 6천 9백만원, 연평균 5천 8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과일 생산액이 15년 누적 약 5억 9천만원, 연평균 3천 9백만원 감소, 과채류(채소)의 경우 15년 누적 2억 6천 8백만원, 연평균 1천 8백만원 감소가 예상됨.

다) 수산업

국내 수산물 생산은 10년 누적 약 1억원(연평균 약 1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품목별로는 10년 누적 기준 갑각류 약 8천만원, 어류 1천 5백만원 감소가 예상됨. 반면, 수산물 수출은 식용 해조류(김 등), 게, 넙치, 전복, 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국내 고용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각 고용, 재정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였음.

산업별 생산효과를 이용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도출하면 한-UAE CEPA 발효로 임금근로자는 발효 5년 후 1,775명 증가, 발효 10년 후에는 3천명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취업자 전체로는 발효 5년 후 2,115명 증가, 10년 후에는 3,736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재정 관련, 한-UAE CEPA로 인한 세수입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28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944.8억원의 세수입이 감소[10](직접 감소효과)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한-UAE CEPA 체결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657.9억원[11]의 세수입 증가(간접 증대효과)가 예상됨.

< 한-UAE CEPA 체결에 따른 세수 영향 >

(단위: 억원)

구 분	세수감소			세수증가	세수변화
	관세수입 감소효과	수입분 내국세 효과	합 계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1~5년차	-506.9	-50.2	-557.0	363.3	-193.7
6~10년차	-1,212.5	-120.0	-1,332.5	952.5	-380.0
연평균	-859.7	-85.1	-944.8	657.9	-286.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10년간 GDP 추가 성장률 0.02%p를 고려하여 효과 추정

10)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분 내국세(부가가치세 등) 감소액 10년간 연평균 약 8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11) 경제성장을 통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증가를 모두 포함

다. 보완대책

정부에 따르면, 별도의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했던 한-미국 FTA, 한-중국 FTA 등 여타 FTA에 비해 한-UAE CEP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평가되므로, 국내 보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필요시 이미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 결과, 한-UAE CEPA 발효로 인한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6천만원 미만 수준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이에 대추야자 등 과실류 수입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기 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수산업 분야도 국내 생산 감소규모가 연평균 1천만원 수준으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 시 기 지원 중인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라. 검토의견

한-UAE CEPA의 경우,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수입으로 인한 생산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제2장 상품무역

1. 개 요

“상품무역”은 양국 간 상품교역에 적용될 일반 규범을 협정문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철폐 기간을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음.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므로 상품시장의 개방 수준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함.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장(상품무역)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 본문은 내국민대우, 관세철폐, 관세 양허의 가속화와 같이 상품 양허 이행에 필요한 조항과 수출입제한 금지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속서는 각 양허유형에 대한 세부 설명과 품목별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철폐 일정을 표시한 관세양허표를 포함함.

상품협정문은 한국과 UAE 양국이 다른 한쪽 당사국의 상품에 WTO 협정상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 수입 상품을 국내산 물품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

세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standstill 조항)함으로써 교역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관세 양허의 가속화나 범위 확대를 허용하여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자 함.

관세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에 적용되는 관세철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양 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에 따른 개별 품목별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명시함.

3. 주요 협상경과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논의는 공식 협상 외에도 다수의 수석대표회의와 회기간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UAE측과 의견 조율을 해왔으나, 협상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음.

가. 우리측 입장

UAE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가전(에어컨·냉장고) 등 우리 주요 수출 관심품목과 더불어 K-뷰티, K-푸드, K-방산 등 對UAE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식품, 무기류 등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를 UAE측이 철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만, 우리측의 농림수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그간 기체결 FTA에서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해 왔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나. UAE측 입장

UAE측은 최대 관심품목인 원유, 석유제품, 화학제품 원료 등을 우리측이 시장개방 하지 않을 경우 협상 타결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 강조하였음. 다만, 철강, 알루미늄 케이블 등 우리측이 시장개방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초민감 품목들이 다수인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양국의 산업 개발 수준 격차를 고려하여 자유화율 수준에도 일정 수준의 격차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다. 협상결과

양측은 협정 발효 후 관세 철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로 철폐하기로 합의함.

UAE측은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우리 기업의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포장재,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고,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등에 따라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

전제품을 관세 철폐 형태로 개방하는 등 우리측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음. 아울러, 우리측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품(메이크업 제품, 기초화장품 등), 식품(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무기류 등 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측은 對UAE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함.

우리측은 UAE의 주력 생산품이자 우리측 수입액 중 최대 점유 품목인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되, 원유 외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은 국내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일부 소수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함. 아울러, 농림수산물의 경우, 대추야자, 낙타유, 채유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위주로 개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되,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對UAE 수입액과 무관하게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결론적으로,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으며,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에 있어서도 양측은 균형적인 수준으로 맞추고자 나프타를 각각 5년간 50%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상호 유사한 수준의 자유화율을 확보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내국민 대우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Article 2.3**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ative notes.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form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양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함(협정 제2.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내국민대우 조항은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으로, 양국의 기체결 모두에 포함되어 있음. UAE는 이스라엘과의 내국민대우 조항의 예외로 부록에서 비(非)코셔[12] · 할랄 육류, 고철 및 스크랩,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정 내 내국민대우 조항에서도 동일하게 설정된 예외인 바, 이스라엘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UAE-이스라엘간 FTA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12) 비코셔(Non-Kosher) 식품은 유대교 율법(카슈루트)에 따라 정결하지 않아 먹지 못하는 음식을 뜻하며, 돼지고기, 갑각류(새우·게), 지느러미/비늘 없는 어류, 토끼 등과 육류와 유제품을 섞은 음식 등이 해당함. 식품의 원재료 및 제조과정이 율법에 부합하더라도 랍비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코셔(Kosher)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비코셔 식품으로 간주됨.

3) 검토의견

내국민 대우 조항을 통하여 수입된 상품에도 자국 기업과 동일한 혜택 및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UAE에 수출된 우리 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역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관세 철폐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Article 2.4**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cluding as explicitly set out in each Party's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neither Party shall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new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2. 이 협정의 발효 시, 한국은 부속서 2-가-1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부속서 2-가-2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Korea shall reduce or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applied on goods originating from the UAE in accordance with Annex 2-A-1 and the UAE shall reduce or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goods origina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nnex 2-A-2.
3. 당사국이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3. Where a Party reduces its most-favored-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FN") applied rate of custom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그러한 상품에 적용된다.	duty, that duty rate shall apply to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f, and for as long as, it is lower than the customs duty rate for such good as set out in each Party's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음(standstill, 협정 제2.4조제1항).

양국은 상대방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자국의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규정함(협정 제2.4조제2항).

당사국이 자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인하해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보다 낮아진다면 인하된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해당 상품에 적용함(협정 제 2.4조제3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양국의 기체결 FTA는 협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결조항(standstill, 협정 제2.4조제1항)의 경우, 우리측은 한-칠레, 한-EU, 한-미국, 한-중국, 한-베트남 FTA 등 다수 기체결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UAE의 기체결은 한-UAE CEPA 대비 낮은

의무 수준으로 동결조항을 규정하여 구속력이 떨어지거나 동결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검토의견

동 협정은 대부분의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 철폐·인하를 규정하는 한편, 협정 발효 이후 기준세율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동결조항이란 양허에서 제외된 상품이더라도 협정 당시의 기준세율을 협정 세율로 고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조항임. 예컨대 동결조항이 없을 경우, 협상시 기준세율이 10%이던 양허제외 품목의 관세율이 협정 발효 후 20%, 30% 등으로 인상될 수 있으나 동결 조항이 있을 경우, 이런 관세율 인상이 방지됨.

한-UAE CEPA에서는 동결조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상품 무역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무역 자유화 효과를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동결조항이 본 협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제도적 진전으로 볼 수 있음.

다.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확대

1)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확대**	**Article 2.5** **Acceleration or Broadening of Tariff Commitments**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or broadening the scope of tariff commitments as set out in each Party's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국 간의 추가적 약속은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2. Further commitments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supers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Schedules included in Annex 2-A when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관세 양허의 일방적인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는,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ohibit a Party from unilaterally accelerating or broadening the scope of tariff commitments set out in its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on originating goods. Any such unilateral acceleration or broadening of the scope of tariff commitments will not:
가. 부속서 2-가의 각국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영구적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a) permanently supers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its respective Schedule to Annex 2-A; or
나.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 당사국의 권리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b) serve to waive that Party's right to raise the customs duty back to the level established in its respective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following a unilateral reduction.

양국은 한쪽 당사국이 요청할 시 양허 가속화 또는 양허 범위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협정 제2.5조제1항).

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양허표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양허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양허의 인하를 일방적으로 앞당긴 당사국은 양허표상 합의된 수준으로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음(협정 제2.5조제3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관세 양허의 가속화 및 범위 확대 조항은 우리측 기체결 중 한-미국, 한-중국, 한-영국, 한-베트남, 한-필리핀 FTA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관세철폐 조항의 일부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검토의견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개선된 양허의 효력이 각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친 뒤 발생하도록 명시하여(제2항) 양국은 양허 개선의 이행 절차를 명확히 함.

동 조항을 통해 시장 개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양국 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수출입제한

1)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7조 **수입 및 수출 제한**	**Article 2.7**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xc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X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리 정당화되는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조치를 부과하는 당사국은 시기적절하게 그 조치를 공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2. In the event that a Party introduces a measure that imposes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therwise justifi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exportation of goods to the other Party, the Party imposing the measure shall publish the measure in a timely manner. Upon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resolving any problem that may arise due to that measure.

양국은 WTO 협정과 어긋나는 수출입제한을 실시할 수 없음(협정 제2.7조제1항).

한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GATT에 근거한 수출제한 조치를 부

과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그 조치를 공표해야 하며 다른 쪽의 요청이 있을 시 양 당사국 간의 협의를 진행해야 함(협정 제2.7조제2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수출입제한 시 WTO 협정 준용 의무(1항)는 양측 기체결 FTA 대부분에 반영되어 있음. 수출제한 시 공표 및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의무(2항)의 경우, 우리측 기체결 FTA 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포함되어 있음.

3) 검토의견

수출입 제한 요건 사항은 기체결 FTA별로 규정사항이 상이한바, 한-UAE CEPA는 요청시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기체결 FTA 대비 공표 의무까지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증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수출 통제 조치 발동 시 필요한 한도 내로 해당 조치를 제한할 의무를 두지 않은 것은 UAE측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나, 동 내용이 UAE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GCC와 우리나라 간 FTA에 포함되어 있어 상호 보완이 가능한바,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마. 수출 보조금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10조 **수출 보조금**	**Article 2.10** **Export Subsidies**
1. 어떠한 당사국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export subsidy on any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12월 19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WTO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자국의 약속에 따라서만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arties reaffirm that a Party may maintain an export subsidy on an agricultural good only in accordance with its commitments made in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Decision on Export Competition (WT/MIN (15)/45, WT/L/980) adopted in Nairobi on 19 December 2015,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scheduled export subsidy entitlements for agricultural goods.

양국은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WTO 각료합의를 따를 것을 재확인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측 기체결 FTA는 농산물에 한정하여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는

반면, UAE측 기체결 FTA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출보조금의 도입 또는 유지를 금지함.

3) 검토의견

수출보조금 관련 국제협약을 준거 규범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 사실상 모든 정부지원이 수출보조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WTO 협정을 수출보조금 금지의 준거 규범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바. 일시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15조 **상품의 일시 반입[1]**	**Article 2.15** **Temporary Admission of Goods[1]**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입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1. Each Party shall grant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for the following good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regardless of their origin: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 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a) professional equipment, including equipment for the press or television, software, and broadcasting and cinematographic equipment, that a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business activity, trade, or profession of a person who qualifies for temporary entry pursuant to the laws of the importing Party;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b) goods intended for display 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demonstration;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c) commercial samples and advertising films and recordings;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그리고	(d) goods admitted for sports purposes; and
마. 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팔레트	(e) containers and pallets that are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equipment.
2. 각 당사국은, 수입자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2. Each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importer or person concerned and for reasons deemed valid by its customs authority, extend the time limit for temporary admission beyond the period initially fixed.
[각주1] 이 조의 목적상,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컨테이너” 및 “팔레트” 라는 용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각주1]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goods intended for display or demonstration”, “advertising films and recordings”, “goods admitted for sports purposes”, “container” and “pallet”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자국 영역으로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Neither Party shall condition the duty-free temporary admission of a go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to its territory, other than to require that the good:
가.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a) not be sold or leased while in its territory;
나.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b) be accompanied by a security in an amount no greater than the custom duties and any other tax or charge imposed on imports that would otherwise be owed on entry or final importation, releasable on exportation of the good;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c) be capable of identification when exporte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라. 그 상품이 일시 반입의 목적과 관련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수출될 것	(d) be exported within the time period granted for temporary admission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temporary admission;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어 반입되지 않을 것	(e) not be admitted in a quantity greater than is reasonable for its intended use;
바.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 또는	(f) be used solely by or under the personal supervision of a national or resident of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 business activity, trade, profession, or sport of that person; or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g) be otherwise admissible into the importing Party's territory under its law.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과 자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4. If any condition that a Party imposes under paragraph 3 has not been fulfilled, that Party may apply the customs duty, and any other tax or charge that would normally be owed on the importation of the good and any other charges or penalties provided for under its law.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5. Each Party, through its customs authority, shall adopt and maintain procedures providing for the expeditious release of goods admitted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possible, such procedures shall provide that when such a good accompanies a national or resident of the other Party who is seeking temporary entry, the good shall be released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of that national or resident.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6. Each Party shall permit a good temporarily admitted under this Article to be exported through a customs port other than that through which it was admitte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한다.[2]	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importer or person concerned, who is responsible for a good admitted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liable for failure to export the good on presentation of satisfactory proof to the importing Party that the good has been destroyed within the original period fixed for temporary admission or any lawful extension[2].
[각주2] 특정한 경우,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책임 면제의 조건으로, 상품이 그렇게 폐기될 수 있기 전에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주2] In certain cases, a Party may condition relief of liability under this paragraph by requiring the importer or person concerned to receive prior approval from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before the good can be so destroyed.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경우, 합리적인 수량 내에 반입 되어 각국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기간 내에 반출될 것, 반출 시 식별 가능할 것, 상품의 판매 또는 임대가 불가할 것,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의 감독 하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준수할 때 관세를 면제함(협정 제2.15조제3항).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에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서도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함(협정 제2.15조제6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인도, 한-미국, 한-중국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우리의 기체결 FTA 대부분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상품목의 구체화 여부, 반출입 항구의 불일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정별로 일부 차이점이 있음.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기체결 FTA에서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시반입되는 상품의 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3]을 통해 국내에서 이행되고 있음.

한-UAE CEPA의 상품 일시반입 조항은 대상 상품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역업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생략)

사. 수리 개조한 상품에 대한 면세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1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Article 2.16**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1.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각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관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at good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regardless of whether such repair or alteration could be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good was exported for repair or alteration, except that a customs duty or other taxes may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s and procedures to the addition resulting from the repair or alteration that was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imported temporari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3.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repair" or "alteration" does not include an operation or process that: (a) destroys a good's essential characteristics or creates a new orcommercially different good; or (b) transforms an unfinished good into a finished good.

수리 또는 개조 이후 상품을 재반입할 때 가치증가분에 각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면세를 제공함(협정 제2.16조제1항).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파괴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되며, 미완성 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되지 않음(협정 제2.16조제3항).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호주, 한-베트남 FTA 등 우리의 기체결된 다수 FTA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 중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FTA는 한-UAE CEPA와 같이 각국 국내법에 따른 면세를 규정함.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FTA 체결 상대국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4]을 근거로 수리·개조 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음.

동 조항을 통해 UAE측으로 수출된 한국산 기계류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우리 상품의 구매유인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상품양허 결과

한-UAE CEPA의 상품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측은 92.5%, UAE측은 91.2%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측은 72.3%, UAE측은 82.0%를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였음.

< 한-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UAE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무관세	2,185	19.3	360	2.3	888	11.3	504	11.8
유관세	6,702	59.3	1,221	7.9	2,942	37.4	305	7.2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최종 관세철폐율	**10,444**	**92.5**	**11,203**	**72.3**	**7,168**	**91.2**	**3,500**	**82.0**
50%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제외	848	7.5	14	0.1	684	8.7	769	18.0
총합계	**11,293**	**100**	**15,492**	**100**	**7,856**	**100**	**4,270**	**100**

* 품목수 : (우리측) HS 2022, 10단위 기준, (UAE측) HS 2022, 8단위 기준
* 수입액 : (우리측) '22년 (UAE측) '22년 (단위 : 백만불)

현행 무관세 품목 및 양허제외 등을 제외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비중은 우리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70.0%가 추가 개방되며, UAE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70.2%가 추가 개방됨.

참고로, 한-UAE CEPA 상품양허의 유형별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한-UAE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계목강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	8,887	즉시 철폐	3,830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향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곶감, 떡, 김치,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에틸렌중합체필름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명란, 참치(냉동),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1,135	5년 철폐	95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연료,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조미김, 인삼, X선 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기타정밀화학연료,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낙농품, 오징어, 새우, 칠면조고기, 왁스, 기타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422	10년 철폐	2,385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라면, 인스턴트 커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염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	10,444	철폐 소계	7,168	-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848	양허 제외	684	폐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분품, 가죽(양, 돼지 등),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	11,293	총합계	7,856	-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6.4%(8,960개), 수입액 기준 72.3%(111.9억불)의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對UAE 수입은 그간 원유에 집중되어 온바 원유 관세 철폐로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은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하고, 업계 민감성이 높은 파티클보드(원목자재), 섬유판, 합판 등의 목재류는 對UAE 수입액과 무관하게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UAE는 한-UAE CEP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91.5%(5,720개), 수입액 기준 89.9%(34.6억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의 對UAE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가전 등에서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對UAE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예컨대, UAE의 자동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판매도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부품 全 품목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관세 철폐로 UAE의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성장하고 있는 UAE의 친환경차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됨.

아울러, UAE는 포장재, 건설, 자동차, 헬스케어 등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원재료(합성수지)를 제외한 반제품, 완제품, 특수 수지 등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는바, 플라스틱 제품 全 품목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더불어, UAE 가전시장은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등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전 등 가전 제품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 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이 밖에도, UAE의 K-뷰티의 인지도 상승 및 K-방산 수요 확대 등에 따라 화장품, 무기류 등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를 전부 철폐하여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한-UAE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즉시 철폐	8,212	88.3%	1,571	10.1%	2,815	45.0%	805	20.9%
5년 철폐	549	5.9%	2	0.0%	813	13.0%	54	1.4%
(5년 이내)	8,761	94.2%	1,573	10.2%	3,628	58.0%	860	22.3%
10년 철폐	199	2.1%	9,617	62.1	2,092	33.5%	2,601	67.6%
철폐 소계	**8,960**	**96.4%**	**11,189**	**72.3%**	**5,720**	**91.5%**	**3,461**	**89.9%**
양허 제외	336	3.6%	13	0.1%	502	6.4%	388	9.1%
금지품목	-	-	-	-	15	0.2%	0	0.0%
특별관심품목	-	-	-	-	12	0.2%	0	0.0%
관세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합계	**9,297**	**100%**	**15,478**	**100%**	**6,253**	**100%**	**3,849**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기준

< 한-UAE CEP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계목강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	8,212	**즉시 철폐**	2,815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549	**5년 철폐**	81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연료,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X선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왁스, 기타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199	**10년 철폐**	2,092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염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336	**양허 제외**	529	폐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분품, 제트유, 종이류 등
-	**9,297**	**총계**	**6,253**	-

< 한-UAE CEP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UAE 주요 수입품)				UAE 양허 (對UAE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 (백만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 (백만불)	UAE 양허
1	석유(원유)	3	7,462	10년 철폐	승용차(가솔린 1,500-3,000CC)	5	166	10년 철폐
2	나프타	0.5	4,276	50% 감축	타이어 (신형)	5	119	10년 철폐
3	석유(원유)	3	1,603	10년 철폐	귀금속장식품 (금)	5	115	즉시 철폐
4	천연가스	3	640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1,500-3,000CC)	5	109	10년 철폐
5	벙커씨유	3	363	10년 철폐	제트유	5	82	양허 제외
6	알루미늄 괴 (alloy)	1	185	즉시 철폐	기타자동차부품	5	74	즉시 철폐
7	알루미늄 괴 (비합금)	1	134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1,500-3,000CC)	5	64	10년 철폐
8	백금 웨이스트	3	132	즉시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1,500-3,000CC)	5	53	10년 철폐
9	석유(원유)	3	70	10년 철폐	승용차(가솔린, 사륜구동, 3,000CC 초과)	5	52	10년 철폐
10	기타 석유(원유)	3	52	10년 철폐	기타자동차부품	5	47	10년 철폐
11	액화 프로판가스	3	42	즉시 철폐	연축전지 (엔진시동용)	5	46	10년 철폐
12	석유(원유)	3	37	10년 철폐	기타항공기부품	5	43	10년 철폐
13	기체액화용 기기 (가정용 제외)	5	24	즉시 철폐	제동장치	5	42	10년 철폐
14	납 괴	3	17	10년 철폐	가정형 식기세척기	5	39	10년 철폐
15	알루미늄 괴 (합금)	3	12	즉시 철폐	클러치	5	39	10년 철폐
16	윤활유	7	10	양허 제외	알루미늄판 (0.2-0.4mm)	5	38	양허 제외
17	철제 저장조	8	9	즉시 철폐	완충기	5	36	10년 철폐
18	기타 알루미늄합금	1	7	즉시 철폐	기타석유제품 (피치)	5	36	10년 철폐
19	경(硬)아연 스펠터	2	4	즉시 철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	36	10년 철폐
20	폴리에틸렌	6.5	3	10년 철폐	폴리에스터직물	5	35	10년 철폐
	(20대 수입소계)		15,083		(20대 수출소계)		1,271	
	공/임산물 수입합계		15,478		공/임산물 수출합계		3,849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관세율 : '23년 WTO MFN 실행세율

2) 농산물 양허 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6.6%(1,036개), 수입액 기준 92.6%(13.1백만불)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우리측은 대추야자, 낙타유, 카놀라유 등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거나 육류(양고기, 오리고기 등), 주스 등 對UAE 수입액이 적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다만, 우리 전통 민감 품목인 식량작물(쌀, 감자 등), 축산물(닭고기 등), 낙농품(꿀, 치즈 등), 과실류(사과, 배 등) 등은 對UAE 수입액과 무관하게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업계를 보호함.

한편, UAE측은 한-UAE CEPA를 통해 품목수 기준 88.4%(1,139개), 수입액 기준 9.0%(38백만불)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함.

특히, K-푸드의 글로벌 성장으로 우리의 對중동 수출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는바, 다수 K-푸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 수출 가속화가 기대됨.

구체적으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삼계탕, 커피믹스 등 다수의 가공식품과 더불어, 면역 증진 효능 등으로 인기있는 홍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K-건강식품의 시장 개방도 확보하여 UAE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

다만, 이슬람 문화권인 UAE 특성상 돼지고기, 주류, 담배 등 111개

품목(3.8억불, 90%)을 금지·특별 관심 품목[15]으로 지정한바, FTA 협상 시 양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한-UAE CEPA 농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수입액(천불)	
즉시 철폐	422	31.2%	10,532	74.2%	776	60.2%	2,315	0.6%
5년 철폐	447	33.1%	2,513	17.7%	108	8.4%	1,952	0.5%
(5년 이내)	869	64.3%	13,044	91.9%	884	68.6%	4,267	1.0%
10년 철폐	167	12.4%	103	0.7%	255	19.8%	33,406	8.0%
철폐 소계	**1,036**	**76.6%**	**13,147**	**92.6%**	**1,139**	**88.4%**	**37,673**	**9.0%**
양허 제외	316	23.4%	1,049	7.4%	39	3.0%	3,153	0.8%
금지품목	-	-	-	-	19	1.5%	-	0.0%
특별관심품목	-	-	-	-	92	7.1%	377,437	90.2%
미철폐 소계	316	23.4%	1,049	7.4%	150	11.6%	380,590	91.0%
합계	**1,352**	**100%**	**14,196**	**100%**	**1,289**	**100%**	**418,263**	**1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기준

< 한-UAE CEP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등 홍차, 밀가루, 커피(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카페인을 제거한 것),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등	422	**즉시 철폐**	776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곶감, 떡, 김치, 인삼 추출물, 포도(신선), 버섯 그 밖의 채소(냉동), 곡물가루(기타), 면류(냉동)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와플과 웨이퍼, 초콜릿 등	447	**5년 철폐**	108	인삼, 과당시럽, 맥아당, 과일·채소 주스, 과당시럽,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보존 처리한 채소, 기타 물(설탕·감미료 등 첨가), 맥아당, 주스 등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기타낙농품, 칠면조고기 등	167	**10년 철폐**	255	라면, 인스턴트 커피, 베이커리제품, 기타 소스류, 과자 등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치즈, 천연꿀, 고구마, 생강 등	316	**양허 제외**	150	궐련(담배 함유), 주류(기타),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1,352	**총합계**	**1,289**	

15) 금지 품목 : 씹는담배, 산동물, 상아, 마약류, 석면제품 등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
특별 관심품목 : 전자·제조담배, 주류,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등으로 종교·건강상의 이유로 규제

< 한-UAE CEP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UAE 주요 수입품)				UAE 양허 (對UAE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 (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 (천불)	UAE 양허
1	정제유	5	9,649	즉시철폐	궐련(담배 함유)	100	374,851	양허제외
2	와플과 웨이퍼	8	1,273	5년철폐	마카로니 등 (새의 알을 넣은 것)	5	9,274	10년철폐
3	기타정당	30	928	양허제외	라면	5	8,446	10년철폐
4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557	5년철폐	인스턴트 커피	5	3,601	10년철폐
5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40	470	즉시철폐	케이크	5	2,634	10년철폐
6	대추야자	30	276	즉시철폐	빵	5	1,750	10년철폐
7	감자조제품	20	234	5년철폐	마카로니 등 (기타)	5	1,414	양허제외
8	로얄제리	8	228	5년철폐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00	1,226	양허제외
9	빵제조용재료	513	88	양허제외	기타 소스류	5	879	10년철폐
10	기타두류	20	70	5년철폐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	5	830	5년철폐
11	기타식물성유지	5	65	즉시철폐	바삭·짭짤한 식품(팝콘 등)	5	714	10년철폐
12	과실주스 음료	9	64	10년철폐	조제식료품(기타)	5	675	10년철폐
13	기타유지가공품	8	51	즉시철폐	식이보조제	5	672	10년철폐
14	기타 버터	89	36	10년철폐	사료용 조제품 (기타)	5	657	10년철폐
15	기타농산가공품	45	31	양허제외	스위트 비스킷	5	582	10년철폐
16	기타향신료	8	29	5년철폐	주류(기타)	특별 관심 품목	429	양허제외
17	혼합조미료	45	25	5년철폐	인삼 추출물	5	418	즉시철폐
18	해바라기씨유	5	15	5년철폐	기타 파스타 (새의 알을 넣은 것)	5	358	양허제외
19	밀가루	3	13	즉시철폐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5	314	양허제외
20	과당시럽	8	12	5년철폐	잎담배	100	272	양허제외
	(20대 수입소계)		14,113		(20대 수출소계)		409,995	
	농산물 수입합계		14,196		농산물 수출합계		418,263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관세율 : '23년 WTO MFN 실행세율

3) 수산물 양허 결과

한-UAE CEPA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69.6%(448개), 수입액 기준 24.8%(10.1만불)의 수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함.

우리의 對UAE 수산물 수입은 약 41만불로 미미한 수준이나 어류 기름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되, 우리의 주요 생산 어종인 갈치(냉동), 명태(냉동), 대구(냉동), 고등어(냉동), 전복(활·신선·냉장) 등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 분야의 우려를 최소화함.

한편, UAE측은 한-UAE CEP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98.4%(309개), 수입액 기준 90.0%(219만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함.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인 전복, 김·조미김, 멸치(건조, 염장)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UAE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

< 한-UAE CEPA 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불)		품목수(개)		수입액(불)	
즉시 철폐	253	39.3%	97	23.7%	239	76.1%	1,280,339	52.7%
5년 철폐	139	21.6%	4,207	1.0%	32	10.2%	615,163	25.3%
(5년 이내)	392	60.9%	101,061	24.8%	271	86.3%	1,895,502	78.0%
10년 철폐	56	8.7%	0	0.0%	38	12.1%	291,716	12.0%
철폐 소계	**448**	**69.6%**	**101,061**	**24.8%**	**309**	**98.4%**	**2,187,218**	**90.0%**
양허 제외	196	30.4%	307,150	75.2%	5	1.6%	242,262	10.0%
합계	**644**	**100%**	**408,211**	**100%**	**314**	**100%**	**2,429,480**	**1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기준

< 한-UAE CEPA 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어류 기름(상어), 기타어류(냉동), 조미김, 소금, 굴(냉동), 어묵(게맛·기타), 붕장어(활), 생선소시지, 가루 한천 등	253	즉시 철폐	239	김, 게, 넙치(신선·냉장), 멸치(건조), 가자미(신선·냉장), 송어(신선·냉장), 캐비어 대용물, 틸라피아(건조·염장), 홍합(활·신선·냉장), 터벗(신선·냉장) 등
어육(틸라피아, 메기, 연어 등), 명란, 참치(냉동), 참치통조림(기타), 어류 기름(기타), 김 등	139	5년 철폐	32	조미김, 게(조제·보존), 멸치(염장), 갑오징어·오징어(활·신선·냉장) 등
오징어, 새우, 기타 태평양 연어(냉동), 삼치(냉동), 눈다랑어(냉동), 왕게 등	56	10년 철폐	38	전복(활·신선·냉장), 문어(냉장), 갑오징어·오징어(조제·보존), 굴(조제·보존) 등
뱀장어, 넙치, 갈치(냉동), 명태(냉동), 대구(냉동), 고등어(냉동), 전복(활·신선·냉장) 등	196	양허 제외	5	참치(조제·보존), 새우류(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등
	644	총합계	314	

< 한-UAE CEPA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UAE 주요 수입품)				UAE 양허 (對UAE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 (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 (불)	UAE 양허
1	갈치(냉동)	10	307,150	양허제외	조미김	5	392,547	5년철폐
2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72,960	즉시철폐	김(식용)	5	377,840	즉시철폐
3	기타어류(냉동)	10	23,774	즉시철폐	기타 조제·보존처리 어류	5	216,502	양허제외
4	기타 포유류	8	4,198	5년철폐	전복 (활·신선·냉장)	5	89,728	10년철폐
5	조미김	8	95	즉시철폐	게 (조제·보존)	5	68,531	5년철폐
6	소금	8	25	즉시철폐	갑오징어·오징어 (냉장·냉동 외)	5	68,307	10년철폐
7	참치통조림(기타)	20	6	5년철폐	기타 건조수산물	5	42,836	10년철폐
8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기타)	3	3	5년철폐	김(기타)	5	34,879	즉시철폐
9	(8위 이하는 수입액 없음)				통조림(오징어)	5	30,303	10년철폐
10					멸치(건조, 염장)	5	30,096	5년철폐
	(10대 수입소계)		408,211		(10대 수입소계)		1,952,293	
	수산물 수입합계		408,211		수산물 수출합계		2,429,48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관세율 : '23년 WTO MFN 실행세율

제3장 원산지 규정

제1절 원산지 규정

1. 개 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규정·판례·행정적 절차를 총칭함.

FTA 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국간 교역되는 상품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규정을 의미함.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서 FTA 체약국간 교역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는 중립적 원칙이어야 하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산업 부문별 경쟁력 및 원산지 충족 여건 등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규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교역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를 고려하여 자국의 산업 환경에 맞는 FTA 원산지 규정 채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측에 유리하지만, 해당 품목 제조에

있어서의 상대방 국가와의 공정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16], 부가가치기준[17], 특정공정기준[18]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원산지 결정 기준의 예 >

구 분		개념/특징	적용 예
완전생산기준		-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거의 모든 FTA원산지 규정에서 채택 - 생산활동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에 한계	- 당사국에서 생산된 광물, 농산물, 식물 - 당사국의 살아있는 동물과 이로부터 채취된 상품
실질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 코드)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HS 품목분류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	- **HS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in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in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in Tariff Sub Heading)은 완화된 기준** -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한 경우 :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한국산 인정 * 6단위 변경(O) : 9613.90 → 9613.10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한국산 불인정 * 4단위 변경(x) : 9613 → 9613
	부가가치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민감하다는 단점	- 부가가치비율 계산방식은 공제법과 집적법 등으로 구분 : (공제법)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법 (집적법)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누적하여 계산하는 방법
	특정공정기준	-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가장 객관적인 기준임.	- 의류는 재단 및 봉제를 수행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16)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수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HS code)와 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17) 부가가치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0%)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18)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SP가공공정기준)은 FTA 원산지 결정 시 물품의 주요 제조·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을 말함. 주로 섬유의류화학 제품 등에 적용되며 세번변경기준(CTC)이나 부가가치기준(RVC)과 결합하거나 대체하여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됨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UAE CEPA 제3장(원산지 규정) 제1절(원산지 규정)은 14개의 조문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협정문 본문에서는 한-UAE CEPA의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 3-가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각 품목의 개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부속서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원자재 해외 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준을 규정함.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등 상당수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4단위 세번변경 또는 이보다 완화된 6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하거나,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선택적으로 규정함.

육류·낙농품·곡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함.

제3.16조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특정 상품의 처리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① 모든 상품에 상품 가격의 10%, 섬유 및 의류에는 상품 가격 또는 중량의 10%까지 허용치(tolerance) 규정, ② 개성공단 관련, 역외에서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 인정에 대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제안함.

허용치(tolerance)란, 상품에 세번변경기준(CTC)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그 재료가 상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그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임.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우리측 기체결 FTA에서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 규정하기도 함.

예컨대, 혼합주스(HS 2009.90)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부가가치 40%로, 만일 비원산지 사과주스(HS 2009.71)가 혼합주스 생산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2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비원산지 사과주스가 혼합주스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허용치 규정에 따라 혼합주스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음.

우리 정부는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 기체결 FTA와 동일

한 수준의 허용치 규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상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 FTA 활용 용이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수준을 10%로 제한함으로써 유연성과 합리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임.

나. UAE 측 입장

UAE 측은 ① 비원산지 재료의 허용치를 상품 가격의 20%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②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 조항의 경우 우리측의 제안 배경(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 인정)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사안으로 원산지 규정 분과에서 검토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다. 협상 결과

우리측은 UAE측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① 비원산지 재료의 허용치로서 상품 가격의 15%까지 수용하고(단, 섬유 및 의류에는 상품 가격 또는 중량의 10%), ② 역외가공[19]과 관련해서는 절충안으로서 RCEP과 동일하게 한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조항을 제안하여 양측은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함.

19) 역외가공 : 해외에서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든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서 가공하고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생산 방식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원산지 일반 기준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2조 **원산지 기준**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goods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in territory of a Party, if:
가. 상품이 제3.3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a) goods are wholly obtained the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나.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제3.4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b) goods are not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the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r
다.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goods are produced there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2. 제1항에 규정된 각각의 경우,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In each case provided in paragraph 1, the goods shall satisfy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Article 3.3** **Wholly Obtained Goods**
제3.2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For purposes of Article 3.2.1 (a), the following goods shall be deemed to b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a) 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collected, or harvested there;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b)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살아 있는 동물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c) products obtained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생략)	...(생략)
제3.4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Article 3.4**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 제3.2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상품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 For purposes of Article 3.2(b), a good shall be considered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and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in a Party when the good satisfies any of the following:
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이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또는	(a) a Change in Tariff Heading (CTH), which means that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have undergone a change in HS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4-digit level; or
나.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b) a Qualifying Value Content (QVC) not less than 40% of the FOB Price.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록에 포함된 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와 관련하여 목록에 기술된 특정 규정을 충족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that falls within the classifications included in the list of Product Specific Rules (PSR)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PSRs)), shall satisfy the specific rule pertaining to it detailed therein.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QVC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인정가치포함비율= (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 ―――――――――――――――――――― x 100 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QVC = (FOB Price or Ex-Works Price) - V.N.M ―――――――――――――――――――― x 100 FOB Price or Ex-Works Price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	where Ex-Works Price is used, the QV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낮다.	requirement shall be five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QVC requirement which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FOB Price.
...(생략)	...(생략)
제3.5조 **중간재**	**Article 3.5** **Intermediate Goods**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When an originating good is used in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another good,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ontained in the originating goo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subsequently produced good.
제3.6조 **누적**	**Article 3.6** **Accumulation**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가공 또는 생산에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1.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processing or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shall be deemed as a material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서 제3.8조에 기재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넘어선 가공이 일어나지 않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that does not undergo processing beyond th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listed in Article 3.8 in the other Party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of the former Party.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3. The Joint Committee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ac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7조 **허용치**	**Article 3.7** **Tolerance**
1.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3.4, a good will be considered to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good.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을 거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will be considered to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f the weight or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of the weight or the Ex-Works Price of the good.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3. The good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meet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4.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4.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QVC requirement.
제3.8조 **불충분 작업 또는 가공**	**Article 3.8**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 are satisfied,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f the following operations are undertaken exclusively y itself or in combin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동물의 도살 나. 건조, 냉동, 환기, 냉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과 같이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다. 감별, 세탁, 절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연마, 단순 분쇄, 얇게 자르기 ...(생략)	(a) slaughter of animals; (b)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ventilation, chilling, and like operations; (c) sifting, washing, cutting, slitting, bending, coiling or uncoiling, sharpening, simple grinding, slicing; ...(생략)
제3.15조 **상품의 세트**	**Article 3.15** **Sets of Good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Sets, as defined in General Rule 3 of the HS, shall be regarded as originating when all component goods are originating. However, when a set is composed of originating and non-originating products, the set as a whole shall be regarded as originat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products does not exceed 1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set.

한-UAE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교역되는 ①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거나, ②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생산되거나, ③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실질적 변형)을 거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부가가치 40%를 충족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협정 제3.2조 및 제3.4조).

완전생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은 역내에서 재배·수확·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역내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등이 존재함(협정 제3.3조).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쪽 당사국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그 재료는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 조항을 도입하고, 다른 형태의 누적 규정을 위한 검토 조항을 규정함(협정 제3.6조).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허용치(tolerance)[20]을 도입함. 다만 섬유 및 의류(HS 50~63류)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이 그 상품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함(협정 제3.7조).

세트 상품[21]은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세트 상품도 원산지 상품이지만, 구성품 중 비원산지 상품이 있는 경우 그 구성품의 가치가 세트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협정 제3.15조).

---

20)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

21) 세트 상품이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호의 적용에 의한 세트 상품으로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일례로 스파게티 면, 잘게 갈은 치즈, 토마토 소스를 함께 포장한 것을 들 수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대부분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변형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 변형 기준은 품목별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이들의 조합)을 적용함.

< 원산지 결정 기준의 유형 >

구 분	완전생산 기 준	실질적 변형기준			보충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미소기준	누적 원칙	역외가공
한·UAE	적 용	CTH[22] 또는 RVC[23]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24] 가격의 15%	적 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논의 개시 (3년 내 논의 완료)
RCEP	적 용	CTH 또는 RVC 40%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논의 개시 (3년 내 논의 완료)
한·필리핀	적 용	CTH 또는 RVC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이스라엘	적 용	CTH 또는 RVC 40-50%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인니	적 용	CTH 또는 RVC 40%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베트남	적 용	CTH 또는 RVC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호주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미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조정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EU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 가격의 10%	적 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한·인도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ASEAN	적 용	CTH 또는 RVC 40% (일반기준)		제한적 사용	FOB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EFTA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공장도(Ex-works) 가격의 10%	적 용	인 정
한·싱	적 용	주로 사용	적 용	제한적 사용	관세가격의 10%	적 용	인 정

22) CTH(Change in Tariff Heading) :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4단위(heading)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
23) RVC :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24) 공장도 가격(Ex Work)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 FTA별 부가가치비율 계산법 >

구분	계산법	부가가치 기준	기준가격	비고
한·UAE	공제법	40%	공장도가격 또는 FOB	CTH 또는 RVC 40%를 일반기준으로 도입
RCEP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필리핀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45%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이스라엘	비원산지재료 비율 계산	40-5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한·인니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45%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베트남	집적법 또는 공제법	40-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선택 가능
한·호주	집적법	30-40%	조정가격	완성차에 대해서는 집적법(30%)/공제법(40%) 중 선택 가능
	공제법	40%		
한·미	집적법	30-40%	조정가격	자동차에 한하여 순원가법도 선택 가능
	공제법	35-55%		
한·EU	비원산지재료 비율 계산	50-75%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한·인도	공제법	25-50%	FOB	CTSH+RVC 35%를 일반기준으로 도입
한·ASEAN	집적법 또는 공제법	35-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가 선택 가능(우리는 공제법 선택)
한·EFTA	비원산지재료 비율 계산	25-6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한·싱가포르	공제법	45-55%	관세가격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누적 조항을 통해 한쪽 당사국의 재료가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그 재료는 그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어, UAE 기업은 한국산 재료를, 한국 기업은 UAE산 재료를 활용할 유인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함.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함.

이 높아지는바 이는 양국간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품의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는 허용치(tolerance) 규정을 도입하여 수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나.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정 부속서 3-가)

1) 협정문의 내용

협정문 본문 제3.4조 제1항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을 일반기준으로서 규정하고, 부속서 3-가에는 일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과 그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원자재의 해외 조달비율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

< 주요 공산품 원산지 기준 >

품목	HS류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 승용차, 화물차 등의 완성차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CTSH 또는 RVC 40% 적용
전기전자	85	·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등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부분품·부속품은 CTSH 또는 RVC 40% 적용
기계	84	· 선박・항공용 엔진, 냉장고, 세탁기 등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부분품·부속품은 CTSH 또는 RVC 40% 적용
섬유 및 의류	50-63	· 실, 직물, 의류, 특수직물 등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누에고치·생사·견웨이스트(waste)는 완전생산기준(WO) 적용
철강/ 철강제품	72-73	· 철, 비합금강, 스테인리스 강 등 CTH 또는 RVC 40% 적용

품목	HS류	원산지 기준
비철금속	74-81	·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은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텅스텐, 몰리브덴, 마스네슘, 코발트 등은 CTSH 또는 RVC 40% 적용
화학	27	· 석유, 석탄 등 광물성 연료는 CTH 또는 RVC 40% 적용 · 단,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 증류법) 선택적 적용
	28-38	· 무기·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비료 등은 CTSH 또는 RVC 40% 적용
	39-40	· 플라스틱 제품 및 고무제품은 CTH 또는 RVC 40% 적용

* RVC :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자료: 산업통상부

공산품과 관련하여 기계·전자기기 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부분품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함.

완성차의 경우, 역외산(비원산지재료) 부품 사용이 용이하도록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함.

< 주요 농산물 원산지 기준 >

품목	HS류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등은 완전생산기준(WO) 적용 · 단, 곡분제품에서 쌀은 역내산 사용, 커피는 CTSH 기준 도입
축산물	2-4	· 완전생산기준(WO) 적용
수산물	3	· 완전생산기준(WO) 적용
가공 농·수산물	15-23	· 대부분 CC 또는 RVC 40%, CTH 또는 RVC 40% 기준 적용 · 단, 인삼·조미김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산 재료 사용 기준 도입

※ 자료: 산업통상부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완전생산기준을 사용하고, 자동차, 전자기기·기계, 섬유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함.

< 기체결 FTA 주요품목 PSR 비교 >

구 분	신선농산물 (HS 1-14)	자동차 (HS 87)	섬유 (HS 50-60)	의류 (HS 61-63)
한·UAE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완성차는 CTH 또는 RVC 40% - 자동차 부품은 CTSH 또는 RVC 40%**	**CTH or RVC 40% * 예외존재**	**CTH or RVC 40%**
RCEP	완전생산기준 또는 CC * 예외존재	- 승용차는 RVC 40% - 자동차 부품은 ①CTH 또는 RVC 40% 이거나 ②CC 또는 RVC 40%	CC 또는 CTH	CC 또는 CC or RVC 40%
한·필리핀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완성차는 RVC 45% - 자동차 부품은 CTH or RVC 40%	CC or RVC 40% 또는 CTH or RVC 40%	CC or RVC 40%
한·이스라엘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CTH or RVC 40% 이상	CC 또는 CTH or RVC 40%	CC + 재단 및 봉제
한·캄보디아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완성차는 RVC 45% - 자동차 부품은 CTH or RVC 40%	CC or RVC 40% 또는 CTH or RVC 40%	CC or RVC 40%
한·인도네시아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완성차는 RVC 40% - 자동차 부품은 주로 CTH 또는 RVC 40%	CC 또는 CTH	CC 또는 CTH
한·베트남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완성차는 RVC 45% -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40%	RVC 40% or CC 또는 CTH (또는 둘 이상의 예비/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	RVC 40% or CC + 재단 및 봉제 - 62류, 63류 중 일부 품목 완화
한·호주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 승용차는 CTH+RVC 30%(집적법)/40%(공제법) 이상, 그 외 완성차는 CTH+RVC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 자동차 부품은 RVC 30%(집적법)/40%(공제법)이거나 RVC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CTH -직물의 경우 염색·날염 공정의 선택적 인정	CC -직물의 경우 염색·날염 공정의 선택적 인정
한·미국	CC * 예외존재	RVC 55%*/35%** * 공제법 ** 순원가법/집적법	원사기준(yarn forward) * 예외존재	원사기준(yarn forward) * 예외존재
한·EU	완전생산기준	CTH or RVC 50~55%	CTH 등 품목별 상이	직물기준 (fabric forward)

구 분	신선농산물 (HS 1-14)	자동차 (HS 87)	섬유 (HS 50-60)	의류 (HS 61-63)
한·인도*	완전생산기준	CTH + RVC 40%	RVC 40% + CTH	직물기준 (fabric forward)
한·ASEAN**	완전생산기준 * 예외존재	RVC 45%	RVC 40% or CC 또는 CTH (또는 둘 이상의 예비/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	RVC 40% or CC + 재단 및 봉제
한·싱가포르	CC * 예외존재	CTH + RVC 50~55%	CC 또는 CTH	CC + 재단 및 봉제
한·EFTA	완전생산기준	CTH or RVC 40%	CTH or 둘 이상의 예비/마감공정이 수반된 염색 또는 날염(단, 옷감의 가치가 생산품의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일 것) * CC, CTH도 존재	CC + 재단 및 봉제

* 한-인도 FTA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① 역내부가가치 40%이상 그리고(and) ② 6단위 세번변경이라는 일반기준을 도입

** 한-ASEAN FTA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① 역내부가가치 40%이상 또는(or) ② 4단위 세번변경이라는 일반기준을 도입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한-UAE CEPA에서는 품목별 특성, 해외 원자재 조달 비율, 업계별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신선 농수산물은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로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되, 가공 농수산물은 우리 수출 잠재력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완성차와 자동차 부분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역외산(비원산지재료) 부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전자기기·기계류는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써 역외산 부분품 사용을 허용하는 완화된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여 완

성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하도록 함.

섬유·의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역외산 재료 사용을 폭넓게 허용함.

다. 개성공단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16조 **영역 원칙**	**Article 3.16** **Principle of Territoriality**
1.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관련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1. The conditions for acquiring originating status set out in Article 3.2 must be fulfilled without interruptio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ncerned.
...(생략)	...(생략)
9.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조에 따른 특정 상품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친다.	9. Upon the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discussions on the treatment for certain goods under this Article through the Joint Committee and conclude such discussion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start of the discussions.

양국은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조항에 합의하여, 특정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기 위해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개시하고 3년 내에 논의를 마쳐야 함을 규정함(협정 제3.16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FTA에서 개성공단 조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규정하여 구체적 원산지 요건을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위원회 구성방식)과 일정 품목을 열거함.

해당 상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외지역에서 가공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에서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품목 리스트 방식), 발효 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조건, 적용 품목 등을 별도 논의하는 방식(후속의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UAE CEPA는 발효 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조건, 적용 품목 등을 별도 논의하고, 논의 개시 후 3년 내에 논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 하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임.

< FTA별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비교 >

구분	한·UAE	RCEP	한·미국/ 한·EU/ 한·필리핀/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한·EFTA	한·ASEAN	한·인도
적용 방식	발효 후 논의 개시	발효 후 논의 개시	위원회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품목 리스트 방식
적용 조건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논의 개시 (3년 내 논의 완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논의 개시 (3년 내 논의 완료)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구분	한·UAE	RCEP	한·미국/ 한·EU/ 한·필리핀/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한·EFTA	한·ASEAN	한·인도
적용 품목 수			기준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100개 (HS6단위)	267개 (HS6단위)	100개 (HS6단위) (ASEAN 각 국별로 100개씩 선정)	108개 (HS6단위) (한국선정품 목 중 인도 최종 선정)
참고 사항	-	-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지역도 역외가공지 역으로 선정이 가능토록 하여, 남포, 신의주 등 제2, 제3의 남북경제특 구 건설의 중요한 전기 마련	개성공단 생산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 입제한조치 , 연례검토 등 규정	적용대상으 로 “개성 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 예정 품목을 대상품목으 로 적시	개성공단 생산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ASEAN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 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생산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의 우려를 반영, 한•아세안 FTA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긴급수 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역외가공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3년 내에 논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음.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개되는 경우 우리 기업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반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2절 원산지 절차

1. 개 요

FTA 제도에서 해당 수출물품이 특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함. 원산지 증명 방식에는 “기관증명제”와 “자율증명제”가 있음.

“기관증명제”는 정부기관이나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반면 “자율증명제”는 수출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입 통관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과 모든 수출자, 생산자에게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구분됨.

“기관증명제”는 세관 등의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공신력은 있으나 시간과 비용 및 절차 면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자율증명제”는 절차와 비용측면에서 수출업자에게 편리하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원산지 증명은 대체로 기관증명제에서 자율증명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제도적 이유나 자율증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유로 기관증명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우회수입이나 원

산지 위조 등을 통한 부당한 특혜관세 수혜를 방지함. 원산지 검증제도는 검증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직접검증방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방식”이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원산지 절차 관련 내용은 14개의 조문(제3.19조～제3.32조) 및 부속서(부속서 3-나, 3-다)로 구성됨.

조문은 원산지 증명방식,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인증수출자, 원산지 검증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고, 부속서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 원산지 신고서 서식을 다루고 있음.

원산지 증명방식으로는 기관증명 또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함(협정 제3.19조).

특혜관세대우[25] 신청 관련, 수입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의 관세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수입국 설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을 면제함(협정 제3.23조).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

25) 특혜관세대우 :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정을 맺은 상대국 원산지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혜택

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검증 방식을 도입함.

다만, 방문검증은 간접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함(협정 제3.26조).

3. 주요 협상경과

우리측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UAE 측은 특혜관세 사후신청이 세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 협상 결과, 사후신청 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내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제3.24조).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원산지 증명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19조 원산지 증명	**Article 3.19 Proof of Origi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1. Goods originating in a Party shall, on importation into the other Party,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on the basis of a Proof of Origin.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2.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a Proof of Origin:
가. 제3.20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	(a) a Certificate of Origin in paper or electronic format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as per Article 3.20;
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3.21조에 따라 상호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의하여 교환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b) an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ertificate)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and exchanged by a mutually developed electronic system as per Article 3.21; or
다.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c) an Origin Declaration made out by an approved exporter as per Article 3.22.
3. 원산지 증명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3. A Proof of Origin may apply to a single shipment of one or more goods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4.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이 영어로 작성되고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Proof of Origin shall be completed in the English language and shall remain vali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issued or made out
제3.23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Article 3.23**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1. An importing Party shall gra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an originating good on the basis of a Proof of Origin.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an impor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for the purposes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importer shal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그 세관 신고서에 진술하거나 달리 기재한다.	(a) make a statement or otherwise indicate in its customs declaration that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요구되는 경우 이를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b) have a valid Proof of Origin in its possession at the tim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made and be ready to submit it to the customs authority if so required; and
다.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c) promptly make a corrected declaration in a manner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subject to the customs laws of the importing Party and pay any duties along with interest and other charges owing, where the import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Proof of Origin on which a declaration was based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importing Party may not require a Proof of Origin if: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a)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ation does not exceed US$1,000 or the equivalent amount in the importing Party's currency or such higher amount as the importing Party may establish; or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b) it is a good for which the importing Party has waived the requirement,
다만, 그 수입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does not form part of a series of importations carried out or plann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compliance with the importing Party's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6. (생략)	4.~6. (생략)
제3.24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Article 3.24** **Post-Importation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여, 상품이 수입된 날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Where a good was originating when it wa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but the importer of the good did not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at importer of the good may, no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ood was imported,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apply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ies paid as a result of the good not having been accord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pon presentation to the importing Party of: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a) a valid Proof of Origin and, where appropriate, other evidence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and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b) such other documentation in relation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as the importing Party may require.

기관증명 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함(협정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및 부속서 3-나, 3-다).

상품의 총 가치가 미화 1000불 이하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협정 제3.23조).

수입 당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된 날 후 1년 이내이면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협정 제3.24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원산지 증명방식과 관련하여, 한-UAE CEPA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와 같은 방식(기관증명방식, 인증수출자 증명방식)을 채택함.

< 주요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증명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해서는 기관증명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모두 채택하였음.

UAE측은 한-GCC FTA[26]와 동일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선호하였고, 우리측은 한-GCC FTA에서의 기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증명과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26) 한-GCC FTA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임

나. 원산지 검증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26조 **검증**	**Article 3.26** **Verification**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1. Subsequent verifications of Proofs of Origin may be carried out at random or whenever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has reasonable doubts as to the authenticity of such documents,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concerned or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제1항의 이행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2.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conduct a verification by means of written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throug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3. I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decides to suspend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goods concerned while awaiting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release of the goods shall be offered to the importer subject to any precautionary measures judged necessary.
4.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4. The competent authority requesting the verification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s thereof as soon as possible. These results shall indicate clearly whether the documents are authentic and whether the goods concerned may be considered as goods originating in a Party and fulfil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5.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의 요청일부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6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요청 관세 당국은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5. If, in cases of reasonable doubt, there is no reply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real origin of the goods, the requesting customs authority may refuse entitlement to the preferences.
6.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6.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is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conduct a verification in the exporting Party by means of:
가. 위의 검증 결과에 관하여,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공된다. 또는	(a) written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or explan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bove verification.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no later than 90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request from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or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그 목적을 위하여,	(b) a verification visit to the premises of the exporter or producer in the exporting Party. To that purpose: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i)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fication in advanc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regarding the intention of the importing Party to conduct a visit at the exporter's or the producer's premises;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행된	(ii) the exporting Party shall set a date of visit upon agreement from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the importing Party, and the export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이 방문 시 그리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서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과 동행하고 그를 지원한다. 그리고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검증 방문이 완료된 날 후 3개월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Party. The visit shall be conducted no later than 9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written no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iii) officials from the exporting Party shall accompany and assist the officials from the importing Party in their visit and at the exporter's or the producer's premises; and (iv)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conducting the verification shall provid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with a written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date the verification visit was completed, including findings of fact and the legal basis for the determination.

원산지 검증은 간접검증(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 방문검증(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 방식을 도입함. 다만, 방문검증은 간접 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함(협정 제3.26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한-이스라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규정함.

한-중국,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한-이스라엘 FTA, RCEP은 간접검증을 우선하되 필요시 수입국이 방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면,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는 간접검증과 방문검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 FTA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인니	한·이스라엘	RCEP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방문검증	간접검증,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간접검증 (필요시 방문검증)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한-UAE CEPA는 원산지 검증방식으로 간접검증을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현지 검증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간접검증을 도입함.

다만, 필요시 간접검증 수행 후 수출자·생산자의 제조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토록 하여 간접검증의 부실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 개 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는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양측 관세당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원활한 관세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품의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은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용 및 관세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동 협정에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 여부, 관세평가 등에 대해 수입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결정을 규정하고,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였음(협정 제4.7조, 제4.9조).

또한,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및 불복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관세 협력을 규정하였으며(협정 제4.14조 및 제4.15조),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해석, 적용, 운

영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통관절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함(협정 제4.17조).

3. 주요 협상경과

정부에 따르면, UAE 측이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통관절차에서 효율적인 자유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여, 상품의 신속한 반출, 재심사 및 불복청구, 관세 협력 등을 규정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4.7조 **사전심사결정**	**Article 4.7** **Advance Rulings**
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필요	1.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upon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요청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요청 후 90일을 넘지 않도록 인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request shall issue in a reasonable time-bound manner, not exceeding 90 days after a request, to a person,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into their territory based on a request containing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an advance ruling, in relation to:
가. 품목분류	(a) tariff classification;
나. 상품의 원산지	(b) origin of goods;
다.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규정의 적용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용, 그리고	(c) the application of valuation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d) such other matters as the Parties may agree.
2.~ 8. (생략)	2.~ 8. (생략)
제4.9조 상품의 반출	**Article 4.9 Release of Goods**
1. 각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for the efficient release of good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hat: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a) provide for the release of goods within a period no great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나. 도착 시 세관 통제로부터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적하목록을 포함한 서류와 자료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b) provide for the electronic submission and processing of documentation and data, including manifests, prior to the arrival of the goods in order to expedite the release of goods from customs control upon arriv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c) allow goods to be released at the point of arrival without requiring temporary transfer to warehouses or other facilities; and
라. 당사국이 상품을 신속하게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실행 가능하고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상품이 반출되지 않는 이유와 어느 기관(관세 당국이 아닌 경우)이 상품의 반출을 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절차	(d) require that the importer be informed if a Party does not promptly release goods, including,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permitted by its laws, the reasons why the goods are not released and which agency, if not the Customs Authority, has withheld release of the goods.
3.~5. (생략)	3.~5. (생략)
제4.13조 **통관사후심사**	**Article 4.13** **Post-clearance Audit**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ost-clearance audit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2. Each Party shall select a person or a consignment for post-clearance audit in a risk-based manner,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Each Party shall conduct post-clearance audits in a transparent manner. Where the person is involved in the audit process and conclus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Part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se record was audited of the:
가. 결과	(a) results;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b) reasons for the results; and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c) person's rights and obligations.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	3.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in post-clearanc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audit may be used in fur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4. Each Party shall, wherever practicable, use the result of post-clearance audit in applying risk management.

양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등에게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 여부, 관세평가 등에 대해 수입 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결정을 규정하고(협정 제4.7조),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규정함(협정 제4.1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 및 한-EU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도 한-UAE CEPA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교역 물품이 간소한 통관절차를 통해 신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도입하였고,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결정 조항을 도입하였음.

나. 불복 절차 및 관세협력 강화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4.1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Article 4.14** **Review and Appeal**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관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to whom it issues a determination on a customs matter has access to:
가. 재심사 중에 있는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자국의 관세 당국의 결정에 대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a) at least one level of administrative review of determinations by its Customs Authority independentof either the official or office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under review; and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b) judicial review of decisions.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및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procedures for appeal and review are carried out in a non-discriminatory and timely manner.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를 수행하는 당국이 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판정 또는 결정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 authority conducting a review or appeal under paragraph 1 notifies the person in writing of its determination or decision in the review or appeal, and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제4.15조 **관세 협력**	**Article 4.15** **Customs Cooperation**
1. 양 당사국은 합법적인 무역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관세 당국 간의 관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더욱 강화하고자 양국 간 서명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이행을 계속하고 이 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1. With a view to further enhancing customs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ir customs authorities to secure and facilitate lawful trade, the Parties agreed to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A signed between them and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operate this Chapter effectively.
2. 이 장에 따른 지원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양 당사국 간 서명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e provisions of the CMAA signed between the Parties.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연락처를 교환한다.	3. The Parties shall exchange official contact point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제4.17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Article 4.17**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1. 양 당사국은 제17장에 따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및 권한 있는 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composed of the customs and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Chapter 17.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join the Committee if the Parties deem it necessary.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특히 그러한 장들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적절히 해결한다.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nd, as appropriate, resolve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and Chapter 3 (Rules of Origin) by means of, inter alia, considering common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ose Chapters.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3. The Committee shall meet on request of either Party.

동 협정은 관세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 및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협정 제4.14조). 또한,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협력 및 정보교환을 강화하고자 관세상호지원협정의 이행을 지속하도록 하고(협정 제4.15조),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등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4.17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도 양국 간 관세 사안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였고, 재심사 및 불복청구 조항을 도입하였음.

5. 검토의견

한-UAE CEPA에서는 관세 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협력 규정을 통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기술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원활한 협정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개 요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는 동식물의 병해충,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함.

이러한 SPS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SPS 분야는 협정 당사국의 SPS 조치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및 협력사항,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함.

2. 협정문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협정문안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은 총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SPS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 확인, 협력, 접촉선,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양국이 모두 WTO 회원국이고, WTO SPS 협정 및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권고, 지침 등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WTO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SPS 협정을 기초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1조 **정의**	**Article 5.1** **Definitions**
SPS 협정의 부속서 A에 있는 정의는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The definitions in Annex A of the SPS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Chapter, mutatis mutandis.
제5.2조 **목적**	**Article 5.2** **Objectives**
이 장의 목적은 무역을 촉진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 의사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과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무역에 부당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protect human,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while facilitating trade, to enhance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the Parties, and to ensure that the Part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e science-based and do not create unjustified barriers to trad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3조 **범위**	**Article 5.3** **Scope**
이 장은 당사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This Chapter shall apply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f each Party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제5.4조 **일반 조항**	**Article 5.4** **General Provisions**
1. 당사국들은 SPS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1. The Parties re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SPS Agreement.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요청 시 접촉선을 통해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2. Both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f mutual interest, enhance cooperation and, upon request, consulta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through contact points.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XX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3.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제 5.5조 **접촉선 및 관할 당국**	**Article 5.5** **Contact Points and Competent Authorities**
1. 이 협정이 발효되면 각 당사자는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이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or Contact Poi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on matters covered by this chapter and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이 협정이 발효되면 각 당사국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고 이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Chapter and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각 당사국은 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	3. Each Party shall keep the information 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Contact Points and Competent Authorities up to date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전체적인 개요는 ① WTO 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② SPS 접촉선 지정, ③ 양국간 SPS 관련 협력 강화, ④ 양국간 SPS 관련 분쟁은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협정안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또는 위생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당사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SPS 조치가 협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협정 제5.2조, 제5.3조).

또한, WTO SPS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에 대한 논의 채널로서 접촉선을 지정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며, 동 챕터는 동 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서 제외됨(협정 제5.4조).

나.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여타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와 같이 SPS 조치를 WTO SPS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국 간 교역량과 SPS 현안을 고려하여 한-UAE CEPA에서는 별도 SPS 위원회 설치 없이, 접촉선(상시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였음.

한-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FTA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와 같이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기체결 FTA와의 비교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EU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국	한-베트남	한-UAE
WTO 준용	WTO SPS 협정 준용										
협의체계	SPS 위원회 *필요시 소위원회 설치	접촉선	SPS 위원회	SPS 위원회	SPS 위원회	접촉선 기술 협의회	SPS 위원회	접촉선 SPS 위원회	SPS 위원회 기술 협력	SPS 위원회 기술 협력	접촉선
분쟁해결	-	-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FTA 분쟁해결 절차 배제

※ 자료: 산업통상부

5. 검토의견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향후 양국 간 SPS 조치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조기에 논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접촉선이 소통창구이자 협의 채널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 개 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국가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함.

양자 통상협정 중 TBT 분야는 WTO TBT 협정을 근간으로 하여,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국 간 상품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총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TBT 협정상 양국의 권리·의무 확인, 국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협력, 투명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정보교환 및 기술 논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당사국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정 시 국제표준에 근거하도록 하고(협정 제6.5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약정의 교섭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협정 제6.6조), 가능한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등(협정 제6.7조) 당사국 간 상이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채택·적용

으로 인한 무역 기술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 조치의 채택 전 상대국 의견 수렴 및 요청 시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 제공 의무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 및 운영을 촉진·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WTO TBT 협정을 기초로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TBT 챕터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하였음.

정부는 양측이 협상 목표에 합의한 상황에서 챕터 내 대부분의 조항에 이견이 없었으나, 우리측이 제안한 적합성 평가절차 문안(협정 제6.7조) 중 국가-지역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문안과 투명성 조항(협정 제6.9조) 중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동 조치들의 채택과 발효 사이에 두는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이견이 존재하였다고 밝힘.

1)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UAE가 회원국으로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과 UAE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이 중복 적용될 경우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험·인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역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을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협정 제6.7조제6항)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제안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WTO 사무국 통보 후 최소 6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부여하는 문안(협정 제6.9조제4항)과,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채택부터 발효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안(협정 제6.9조제5항)을 제안하였음.

2) UAE측 입장

UAE측은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국가-지역의 적합성 절차 요건의 중복 적용 방지 의무의 수용이 어렵고, 제안된 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의 채택과 발효 사이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실무상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3) 협상결과

정부는 UAE측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국가-지역 적합성 평가

절차 요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를 문안에 반영하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채택부터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을 허용하는 문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4. 협정문의 주요 내용 검토

가. 국제 표준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5조 **국제 표준**	**Article 6.5** **International Standards**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1. Each Party shall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to the extent provided in Articles 2.4 and 5.4 of the TBT Agreement, as a basis for it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과 그 후속본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2. In determining whether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 or recommend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 and 5 and Annex 3 of the TBT Agreement exists, each Party shall base its determination on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lation to Articles 2, 5 and Annex 3 of the Agreement", adopted on 13 November 2000 by the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any subsequent version there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국가 표준화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3.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in the context of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ies,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ed within such organizations are trade facilitating and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당사국의 상이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장애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동 조에서 말하는 '국제 표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 WTO TBT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그 결정으로 채택한 국제 표준의 개발 원칙(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참여에 대한 개방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와의 비교

WTO 협정 제2.4조 및 제5.4조는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국제 표준 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가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국제표준기관의 지침이나 권고를 회원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하

는 의무는 양자 통상협정의 TBT 챕터에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으로, 한-미국 FTA 제9.3조, 한-EU FTA 제4.4조, 한-중국 FTA 제6.4조, 한-호주 FTA 제5.3조, 한-베트남 FTA 제6.4조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나. 기술규정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6조 **기술규정**	**Article 6.6** **Technical Regulations**
1.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한, 양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	1. The Parties shall use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preparing their technical regulations, unless thos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ineffective or in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legitimate objective pursued. Each Party shall,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its reasons for not having used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preparing its technical regulations.
2.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2. Each Party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arrangements for achieving the equival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shall explain the reasons why it has not accepted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such arrangements.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3.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communications and coordination with each other, where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the equivalence of technic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regulations and related issues in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한 쪽 당사국이 당사국 간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그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적절한 경우, WTO TBT 위원회와 같은 국제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관련 논의에 대한 당사국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음.

2)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와의 비교

동 조항은 회원국 간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WTO TBT 협정 제2.7조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당사국 간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약정의 교섭 및 WTO TBT 위원회 등 국제포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한-중국 FTA 제6.5조, 한-베트남 FTA 제6.5조, 한-호주 FTA 제5.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7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 적합성 평가절차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Article 6.7**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1. 양 당사국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depending on the specific sectors involved, a broad range of mechanisms exists to facilitate the acceptance in a Party's territory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Such mechanisms may include:
가.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 간 인정 협정 및 약정의 인정	(a) recognizing existing international 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s and arrangements amo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증진	(b)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by the other Party, through recognizing the other Party's design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다.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장려	(c) encouraging voluntary arrangements between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라. 적절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d) accepting a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where appropriate;
마. 인정 절차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의 조화, 또는	(e) harmonizing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cluding accreditation procedures; or
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메커니즘	(f) other mechanism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	2. Each Party shall ensure, whenever possible, that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in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가 수용되도록 보장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e accepted, even when those procedures differ from its own, provided that those procedures offer a satisfactory assurance of applicable technical regulations or standards equivalent to its own procedures. Where a Party does not accept the results of a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t shall,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3. 적합성 평가결과의 일관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In order to enhance confidence in the consistent reliability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the Parties may consult on matters such as the technical competence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volved.
4. 각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Each Party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agreements or arrangements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results of their respectiv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5.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intensify their exchange of information on acceptance mechanism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6. 당사국은 국가 및 지역 적합성 평가절차에 포함된 중복 시험 및 인증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6. A Party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to prevent the imposition of duplicative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as contained in national and regional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f any.

동 조항은 일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결과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자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가능한 경우 언제나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의 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국가와 지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2)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와의 비교

동 조항은 WTO TBT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 간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협정 제6.1조) 및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절차 참여와 관련한 비차별 원칙(협정 제6.4조)을 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이러한 규범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의 불수용 시 설명을 제공하고,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의 촉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미국 FTA 제9.5조, 한-EU FTA 제4.6조, 한-호주 FTA 제5.6조, 한-캐나다 FTA 제6.4조 등 기체결 FTA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회원국인 UAE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지역-국가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할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규정한 점이 WTO TBT 협정 및 기체결 양자 통상협정과 구별되는 동 조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투명성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9조 투명성	**Article 6.9 Transparency**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를 포함한 정보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1. Each Party shall,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information, including the objective of, and rationale for,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hich the Party has adopted or proposes to adopt and may affect the trade between the Parti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2. 제안된 기술규정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2. When a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 is notified to the WTO, a Party shall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the comments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and,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written answers to the comments made by the other Party.
3.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3.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adopte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publicly available.
4.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세계무	4 A Party shall allow at least 6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its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o WTO Central Registry of Notifications for the other Party to provide comments on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proposal except where urgent problems of safety,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or national security arise or threaten to arise.
5.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 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5.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the Parties shall allow a reasonable interval between the publ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ir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allow time f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Party to adapt their products or methods of produc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Party.

동 조항은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채택하려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후 60일간 의견 수렴기간을 제공하고, 통보된 조치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함.

또한,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공표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시행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함.

2)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와의 비교

동 조항은 WTO TBT 협정의 투명성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을 규정하였음. WTO TBT 협정 제2.9.4조는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UAE CEPA 제6.9조는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60일 이상의 의견 수렴기간을 명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도록 함.

또한, 동 조항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기술규정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WTO TBT 협정 제2.12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협정별로 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한-미국 FTA 제9.6조, 한-EU FTA 제4.4조, 한-중국 FTA 제6.7조, 한-호주 FTA 제5.8조, 한-베트남 FTA 제6.7조 등에서도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 의견에 대한 답변, 공표 및 시행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기체결 협정 투명성 조항 비교 >

구분	한-UAE (제6.9조)	한-미국 (제9.6조)	한-EU (제4.4조)	한-중국 (제6.7조)	한-호주 (제5.8조)	한-베트남 (제6.7조)	RCEP (제6.11조)
의견 수렴 기간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 후 최소 60일	통보일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
의견에 대한 답변	요청시 서면 제공	중요 의견에 대한 답변 관보 공표	요청시 서면 제공	요청시 제공 노력	서면, 전자 공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	-	요청시 제공 노력
시행 유예	공표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 시간 허용	-	충분한 시간 부여	-	-	기간 연장에 대한 합리적 요청 고려 노력	6개월 이상 부여

※ 자료: 산업통상부

5. 검토의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챕터에서는 당사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이함이 양국 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동 챕터의 핵심 조항인 국제표준(협정 제6.5조), 기술규정(협정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협정 제6.7조)은 당사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에 있어 국제 표준의 사용 및 동등성 인정 등 의무의 규정을 통해 상이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나아가,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원국인 UAE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국가의 적합성 평가절차 요건의 중복 적용 방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또한, 투명성 조항(협정 제6.9조)은 제안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명시하고 상대국 요청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의무화하여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채택 전 당사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였음.

한-UAE CEPA TBT 챕터는 WTO TBT 협정을 반영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및 방법을 협상 상대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7장 무역구제

1. 개 요

“무역구제 제도(trade remedies)”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음.

“반덤핑관세”[27]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임.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의미함.

---

27) 반덤핑관세는 발생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어 특정 수출국 혹은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 혹은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차이가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제7장(무역구제)은 적용범위(제1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제2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제3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제4절),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제5절)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절에서는 무역구제 조치가 각 당사국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 분류된 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함.

제2절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 조치는 WTO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준용함을 확인하고, “최종판정 전 필수적 사실 공개”, “통보 및 협의”, “최소부과원칙”을 규정함.

제3절에서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발동 요건”, “통보 및 협의”, “조건 및 제한”, “잠정조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함.

제4절에서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준용함을 확인하고,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제5절에서는 무역구제 조치 당국간 협력 의지를 확인함.

3. 주요 협상경과

정부는 UAE와의 협상에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과 WTO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발동 권한 유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였으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도기간과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에[28] 대하여 협상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다고 설명함.

가. 우리측 입장

우리 정부는 다수 품목이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므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도기간을 짧게 설정해야 하며, 조치가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또한, 이 협정에 UAE에 특정하여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을 포함하게 되면 개별국 기준 개발도상국 우대를 국내법에 새롭게 규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를 주장하였으며 WTO 준용만으로도 포괄적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함.

나. UAE측 입장

UAE측은 상품 양허 카테고리마다 관세 철폐기간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단계별 과도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각 카테고리에 대한 과도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은 자국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관련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것을 주장함.

---

28) 개발도상국 상품의 수입 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개도국의 수입점유율 합이 관련 상품 총수입의 9% 미만인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배제

다. 협상결과

정부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도기간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관세 인하·철폐 완료일 후 5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조치 발동 권한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함. 또한,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UAE측과 합의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2조 일반규정	**Article 7.2 General Provisions**
1.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및 제1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1. The Parties re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s VI and XVI of GATT 1994,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2.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투명성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The Parties recognize the right to apply measures consistent with Article VI of GATT 1994,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an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transparency.
3.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의 개시와 수행 그리고 반덤핑 및/또는 상계조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3. Except as otherwise stipulated in this Article,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cluding the initiation and conduc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or countervailing measures.
4.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종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모든 필수적인 사실의 공개를 보장한다. 이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와 무관하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4. Each Party's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before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the disclosure of all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w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 whether to apply definitive measures.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6.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12.4 of the SCM Agreement. Disclosures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allow interested parties sufficient time to make their comments.
제7.3조 통보 및 협의	**Article 7.3: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 산업에 의하여 또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서면 신청을 접수할 때, 수령 당사국은 그러한 조사의 개시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신청을 통보한다.	1. When a Party's competent authority receives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its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respect of a good from the other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application as far in advance of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as possible.
2.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의 접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초청한다.	2. As soon as possible after accepting an application for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n respect of a good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and in any event befor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he Party shall provide a written notification of its receipt of the application to the other Party and invite the other Party for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clarifying the situation as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application and arriving at a mutually agreed solution.
3. 이해당사자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동안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3.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during anti-dumping and anti-subsidy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domestic law.
4. 자국의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의 대상이	4. The Party whose goods are subj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measur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되는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imposed by the other Party has the right to request consultations in order to discuss the impact of these measures on bilateral trade.
제7.4조 최소부과 원칙	**Article 7.4 Lesser Duty Rule**
당사국이 잠정 또는 확정인,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마진 또는 상계 가능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될 수 있다.	Should a Party decide to impose a provisional or definitive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e amount of such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or amount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but it may be less than that margin if, pursuant to the Party's domestic law, such a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제7.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Article 7.5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of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Section.

1) 협정문의 내용

제2절에서는 WTO 협정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 조치에 대한 권한·의무를 확인하고, WTO 규범 중 “최종판정 전 필수적 사실 공개”, “통보 및 협의”, “최소부과원칙”을 이 협정에 재차 규정하였음(협정 제7.2조).

“최종판정 전 필수적 사실 공개”는 최종 판정 전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필수적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을 규정함(협정 제7.2조). “통보 및 협의”는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조사를 개시하기 전 협정상대국에 서면으로 통

지하고, 상계 조치 조사 개시 전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협정 제7.3조). “최소부과원칙”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로도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설명한 규정임(협정 제7.4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조치에 대해 WTO 협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WTO 규범 중 “최종판정 전 필수적 사실 공개”, “통보 및 협의”, “최소부과원칙”을 이 협정에 한번 더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이와 관련, 한-인도네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WTO 보다 엄격한 의무 규정으로 도입하였고, 한-미 FTA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조사 개시 전 협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WTO 플러스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3) 검토의견

반덤핑 및 상계 조치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 부과되며, 주력 수출품이 공산품인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 조치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이에 따라 과거 FTA에서는 WTO 플러스

규범을 도입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어렵게 하는 데 집중해 왔음.

그러나 정부는 양국 간 무역구제 조치 건수 및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한-UAE CEPA에서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의무 수준을 WTO 협정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한국과 UAE 간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UAE를 대상으로 1건의 조치(PET 필름[29])를, UAE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건의 조치(아크릴폴리머[30], 납축전지[31])를 부과하여 양국간 조치 횟수가 유사함.

또한, 양국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우리가 UAE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179억불, UAE로 수출한 금액은 51억불로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크게 앞서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조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덤핑 및 상계 조치 규제 강화보다는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WTO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두었음.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대한 조사는 WTO 규범 수준에 따라 국내 절차를 수행하는 조사이므로 본 절이 분쟁해결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우리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음.

한-UAE CEPA에서는 WTO 협정에 따른 주요 조사 절차 중 하나인

29) PET 필름(Polyester Film) : 석유화학 원료인 TPA(테레프탈산)를 기반으로 제작된 고기능성 폴리에스테르 필림
30) 아크릴 폴리머는 투명성, 내후성, 경량성, 가공성이 뛰어난 고분자 소재로, 유리를 대체하여 간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됨
31) 납축전지: 납과 과산화납 극판, 묽은 황산 전해액으로 구성된 1859년 발명된 가장 오래된 충전식 2차 전지

“최종판정 전 필수적 사실 공개”, “통보 및 협의”, “최소부과원칙”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對UAE 반덤핑 조치 세부 내용>

품 목 명	규제내용	규제상태	비고	적용기간
PET 필름	반덤핑	규제중	세율: 3.19~60.95%	18.4.30~21.4.29 재심사 후 21.12.24~26.12.23

※ 자료: 산업통상부

< UAE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 세부 내용[32)]>

품 목 명	규제내용	규제상태	비고	적용기간
아크릴폴리머 (고흡수성 수지)	반덤핑	규제중	세율: 124%	‘23.3.4~’28.3.3
납축전지	반덤핑	규제중	세율: 12~25%	‘17.6.25~’28.4.22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6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7조에 기술	**Article 7.6**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32)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GCC 차원에서 통합된 단일 기구(사무국)을 통해 공동으로 반덤핑 조치 부과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된 것으로서 과도기간 내에 적용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생산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잠정조치**란 제7.10조에 기술된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ean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pplied within a transition period and as described in Article 7.7; **domestic industry** means, with respect to an imported good,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those producers whose collective production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at good; **provisional measure** means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7.10;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means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til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Schedule in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제7.7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으로 구성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Article 7.7**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other Party ma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를 적용할 수 있다.	injury,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isting of: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또는	(a) the suspension of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r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b) an increase of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i) the most-favored-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or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i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제7.8조 **통보 및 협의**	**Article 7.8** **otification and Consultation**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1. A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upon:
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	(a)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described in Article 7.9:
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조사 결과의 도출, 그리고	(b) making a finding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on the goo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다. 잠정 또는 최종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결정	(c) taking a decision to apply or extend a provisional or fi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2. 한쪽 당사국은 조사로부터 얻는 비밀이 아닌 형태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	2. A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s far in advance of applying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s practicable,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non-confidential version of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의한다.	investigation and exchanging views on the measure.
제7.9조 **조건 및 제한**	**Article 7.9** **Conditions and Limitations**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1. A Party shall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4.2(c)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this end, Articles 3 and 4.2(c)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In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4.2(a) and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this end, Articles 4.2(a) and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complete any such investigation within one year of its date of initiation.
4. 어떠한 당사국도	4. Neither Party shall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a)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절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	(b)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one year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determine,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Section, that the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provided that the total period of applic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하는 기간 동안, 또는	measure, including the period of initial application and any extension thereof,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or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	(c)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그 이전의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는다.	5.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good which has been previously subject to such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evious measure was applied.
6.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6.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importing Party shall progressively liberalize it at regular intervals.
7.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7. When a Party terminate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e Party's Schedule in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measure.
제7.10조 **잠정조치**	**Article 7.10** **Provisional Measures**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 a provisional basis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have increased as the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d such imports have cause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2. Before applying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 a provisional basis, the apply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A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may not apply a provisional measure until at least 45 days after the date its competent authorities initiate an investigation.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9조제1항 및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3.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which time th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7.9.1 and 7.9.2.
4. 그 당사국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7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9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4. The Party shall promptly refund any tariff increases if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Article 7.9 does not result in a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7.7 are met.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described in Article 7.9.4(b).
제7.11조 **보상**	**Article 7.11** **Compensation**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1. No later than 30 days after it applie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consult with it regarding appropriate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applying Party shall provide such compensation as the Parties mutually agree.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appli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with respect to originating goods of the applying Party that have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3. 자국의 상품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양	3. A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bilater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허를 정지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shall notify the Party applying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n writing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it suspends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간 행사되지 않는다.	4. The right of suspension referred in paragraph 2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24 months during whi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applied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5.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The applying Party's oblig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other Party's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under paragraph 2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erminates.

한-UAE CEPA에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협정 제7.7조).

해당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5년까지의 기간 내에서 발동이 가능하며, 한번의 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원조치 2년+연장 1년)으로 조치를 재발동하고자 할 경우 이전 조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음(협정 제7.6조, 제7.9조).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과 가능한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로부터 45

일 간 발동을 금지하고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제한하였음(협정 제7.10조, 제7.11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칠레 FTA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음.

한-UAE CEPA는 여타 기체결 FTA와 같이 관세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국 FTA[33],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최대 조치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캐나다 FTA는 최대 4년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한-UAE CEPA는 한-에콰도르 SECA와 같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이전 조치와 동일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재발동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한-미국 FTA, 한-콜롬비아 FTA, 한-이스라엘 FTA에서의 동일한 품목에 대해 재발동을 일절 금지하는 규범과는 차이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비교 >

33)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HS 8703 또는 8704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품목에 한하여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고, 발동기간은 최대 4년으로 연장되었음

구분	한·캐나다	한·미	한·인도	한·EU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이스라엘	한·UAE
적용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기간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재발동	-	재발동 금지	WTO준용	-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WTO 부분 준용
보상/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절대적 수입증가시 최초 3년간 보복 불가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최초 2년간 보복 불가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절대적 수입증가시 최초 2년간 보복 불가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절대적 수입증가시 최초 24개월간 보복 불가
잠정조치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제도존속기간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 후 10년까지 또는 협정발효후 15년까지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후 10년까지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 후 10년까지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초과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 후 5년까지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 후 5년까지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 철폐·인하 완료 후 5년까지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긍정적

인 효과도 동시에 있으므로 협상 상대국에 따라 양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한국과 UAE가 과거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선례는 없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보다 발동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세계적으로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UAE CEPA 발효 후 양자 조치 발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기체결 범위 내에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간과 재발동 금지기간, 제도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적절해 보임.

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협정문안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12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Article 7.12** **Global Safeguard Measures**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9조를 포함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including Article 9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impose any additional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actions taken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same good, at the same time:
가. 제3절에서 적용되는 양자 긴급수입	(a)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applied in Section C; and (b)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3.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특혜 마진은 유지된다.	3. Where, as a result of a global safeguard measure, a safeguard duty is imposed, the margin of pre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Schedule in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hall be maintained.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잠정 결과 및 최종 결과를 포함한, 그 조사의 개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서면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제공하고, 협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4.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and provided that it has a substantial interest, the Party intending to take safeguard measures shall provide immediately written notification of all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initiation of the safeguard investigation, including the provisional findings and the final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s well as offer the possibility for consultations to the other Party.
5.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국이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조사 중인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5.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it is considered that a Party has a substantial interest when it is among the five largest suppliers of the good under investigation during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of time, measured in terms of either absolute volume or value.

양국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였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또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개시, 잠정결과, 최종결과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7.12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국에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한-미국 FTA, 한-이스라엘 FTA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한-미국 FTA, 한-이스라엘 FTA 등 우리나라의 기체결 여타 FTA에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 상대국을 재량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는데, 한-UAE CEPA는 한-중미 FTA, 한-EU FTA에서와 같이 재량적 배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음.

3) 검토의견

2024년 교역액 기준 UAE는 우리나라의 13위 교역국이며,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협정 발효 후 교역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는 2000년 이후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지 않는 반면, UAE는 최근 10년간 한국이 조치 대상으로 포함된 조치를 2건 발동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FTA로 인해 감축·철폐된 관세율을 감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한편, WTO 플러스 규범으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조사개시, 잠정결과, 최종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

정한 것은 양국간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UAE의 對한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부 내용>

품 목 명	규제내용	규제상태	비고	적용기간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종료	1년차: 221USD/ton 2년차: 199USD/ton 3년차: 177USD/ton	'19.6.21～ '22.6.20
도금강판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종료	1년차: 169USD/ton 2년차: 153USD/ton 3년차: 137USD/ton	'18.5.15～ '21.5.1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제8장 서비스무역

1. 개 요

서비스 협정문 제8장과 부속서 가부터 라까지는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일반 원칙과 구체적 개방 약속을 다루고 있음. OECD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2 이상을 창출하며, 선진국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4분의 3 이상을 유치,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 이를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큰 분야임.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제8장(서비스무역)은 17개 조문과 금융 서비스 부속서, 통신 부속서,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같은 방식으로 양국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음. 단, 정부조달, 정부 보조금, 항공 운송 서비스(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지상 조업 서비스 제외) 등은 동 챕터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함.

서비스 자유화 확대를 위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금지 등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간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상기 자유화 의무 외에도 서비스 챕터의 이행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서비스무역위원회 설립,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한 국내 규제, 서비스 공급 관련 자격요건(교육, 자격증, 면허 등)의 상호 인정을 촉진할 것, 비당사국 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상대국 영역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상대국 기업에 대한 혜택의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UAE CEPA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 8-가에서 다루고 있으며, 건전성 조치 예외, 인정, 분쟁해결 등 총 10개의 항으로 구성됨. 건전성 조치 관련 조항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해결 조항을 통해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한-UAE CEPA는 통신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 8-나에서 다루고 있으며, 적용범위,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경쟁보장 장치, 번호이동성, 상호접속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UAE CEPA는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 8-다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반 원칙, 일반 의무,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투명성, 협력,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됨. 부속서 8-라에서는 자연인의 종류를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로 분류하여 규율함.

3. 주요 협상경과

가. 서비스 협정문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한국 또는 UAE가 동종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협정문에 규정하고, 민감한 분야 등은 MFN 면제 리스트[34]에 기재하는 방식을 주장하였음.

나) UAE측 입장

UAE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높은 수준의 MFN 의무는 수용해본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WTO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35]에 있는 MFN 의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 협상결과

양측은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 후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상대국 요청시 상대국에

34) 최혜국대우(MFN) 면제 리스트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하에서 회원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관세 및 무역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MFN 원칙)를 일시적 또는 특정 분야에 한해 면제받는 목록을 말함

35)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WTO 체제하에서 금융, 통신, 관광, 운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교역을 자유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정임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문안에 합의하였음.

이외에도 양측은 서비스 자유화 확대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금지 등) 규율을 GATS 기반으로 논의하여 협정문을 타결하였음.

나. 금융 부속서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양국간 금융 서비스 무역 관련 당사국 조치에 대한 의무 및 예외를 규정하여 금융 서비스 무역에서의 당사국 정책 권한 확보 및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해 부속서 포함 입장을 견지하였음.

나) UAE측 입장

UAE측은 금융 서비스는 민감한 분야인바, 높은 수준의 협정문을 규정하기보다는 GATS 금융 부속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다) 협상결과

양측은 우리측의 금융 포함 의사와 UAE측의 민감도를 고려, GATS

금융 부속서를 적절히 수정하여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통신 부속서 협상경과

양측은 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접근 및 이용, 경쟁보장장치, 번호이동성, 상호접속, 망 요소 세분화, 전주·관로·도관에 대한 접근 등 다른 FTA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종 규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전반적으로 큰 쟁점이 있지는 않았으나, 상호접속에 대하여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였음. 상호접속 계약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의무에 대해 UAE측은 표준상호접속 제안 제도가 없어 통신 기업 간 상호접속 계약 관련 정보는 기업, 운영자 등 해당 당사자에게만 공개한다고 설명하였음. 우리측은 UAE의 통신 법제와 정책, 대중에 대한 정보 미공개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접속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문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음.

라.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협상경과

1)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부속서 8-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통해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여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를 분쟁해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음.

2) UAE측 입장

UAE측은 자연인의 이동은 민감 분야로서, 한-UAE CEPA에서는 WTO GATS보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추가적인 약속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관련 조항들을 분쟁해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음.

3) 협상결과

분쟁해결 절차 적용에 대한 UAE측 우려를 고려하여, UAE측 주장을 반영하여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서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에 '협의를 거쳐' 문안을 삽입하여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를 분쟁해결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데 합의하였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서비스 분야 적용범위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2조	**Article 8.2**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by Parti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2.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	(a)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 agencies of services purcha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with a view to use in the supply of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다.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그리고	(c) measures affecting natural persons seeking access to the employment market of a Party, or measures regarding citizenship, residence or employment on a permanent basis; and
라.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항공 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d) measures affecting air traffic rights, however granted or measures affecting services directly related to the exercise of air traffic rights, other than measures affecting: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i)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ii) the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iii)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or
4) 지상 조업 서비스	(iv) ground handling services.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3.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o regulate the entry of natural persons into, or their temporary stay in, i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자연인이 자국 영역 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3)]	territory, including thos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and to ensure the orderl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cross, its border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nullify or impair the benefits accruing to any Party under the terms of a specific commitment.[3)]
[각주3]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주3] The sole fact of requiring a visa for natural persons of certain country and not for those of others shall not be regarded as nullifying or impairing benefits under a specific commitment.

서비스무역 협정문의 적용범위는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로서, 당사국에는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도 포함됨.

다만, 서비스(services) 정의조항(제8.1조)에서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를 제외하고,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항공운송 서비스 등은 적용범위 조항(제8.2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항공 관련 서비스** 중 '항공기 보수·유지, 항공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이 장에서 서비스무역은 WTO GATS와 동일하게 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서비스 공급, Mode 1)[36)], ②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 내 그 당사국

36)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ex)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직 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법률자문, 건축설계 도면제공)

의 인(人)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人)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 소비, Mode 2)[37], ③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Mode 3)[38], ④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자연인의 이동, Mode 4)[39]의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무역을 의미함.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 기체결 FTA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즉,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서비스 협정의 대상으로 하되,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예외: 항공기 보수·유지, 항공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정부 보조금 등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한-미국, 한-호주 FTA 등에서는 협정 적용을 받는 항공 관련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항공기 외에도 특수항공 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FTA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3) 검토의견

37)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ex)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38)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이동(=외국인 투자)하여 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 포함)의 설립 등을 통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39)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ex)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 등

한-UAE CEPA 서비스무역 장은 WTO GATS 및 포지티브(positive) 방식(양국이 자유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하여 해당 분야만을 개방)을 채택한 우리 기체결 FTA와 거의 유사하게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양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고,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항공운송 서비스 등은 협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의무 사항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3조 **시장접근**	**Article 8.3** **Market Access**
1. 제8.1조에 적시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4)]	1.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through the modes of supply identified in Article 8.1, each Party shall accord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e terms, limitations, and conditions agreed and specified in it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4)]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2. In sectors where market 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the measures which a Party shall not maintain or adopt,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are defined as: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	(a)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service supplier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s of an economic needs test;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b) limitations on the total value of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5)]	(c)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or on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5)]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d)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service sector or that a service supplier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유형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e) measures which restrict or require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service supplier may supply a service; and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f) limita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in terms of maximum percentage limit on foreign shareholding or the total value of individual or aggregate foreign investment.
[각주4]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	[각주4] If a Party undertakes a market access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through the mode of suppl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trade in services in Article 8.1 and if the cross-borde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movement of capital is an essential part of the service itself, that Party is thereby committed to allow such movement of capital. If a Party undertakes a market access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through the mode of suppl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trade in services in Article 8.1, it is thereby committed to allow related transfers of capital into its territory.
[각주5] 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각주5] Subparagraph (c) does not cover measures of a Party which limit inpu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제8.4조 **내국민 대우**	**Article 8.4** **National Treatment**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6]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6]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A Party may mee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 by according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either formally identical treatment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to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3. 한쪽 당사국의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by a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at Party compared to the like service or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각주6]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각주6] Specific commitments assumed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require either Party to compensate for any inherent competitive disadvantages which result from the foreign character of the relevant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제8.5조 **추가적 약속**	**Article 8.5** **Additional Commitments**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The Parties may negotiate commitments with respect to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not subject to scheduling under Articles 8.3 and 8.4, including those regarding qualifications, standards, or licensing matters. Such commitments shall be inscribed in a Party'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Article 8.6**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1. Each Party shall set out in a schedule the specific commitments it undertakes under Articles 8.3, 8.4, and 8.5. With respect to sectors where such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hall specify: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a) terms, limitations, and conditions on market access;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b)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on national treatment;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c) undertakings relating to additional commitments;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d) where appropriate, the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of such commitments; and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such commitments.
2. 제8.3조 및 제8.4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해서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Measures inconsistent with both Articles 8.3 and 8.4 shall be inscribed in the column relating to Article 8.3. In this case, the inscription will be considered to provide a condition or qualification to Article 8.4 as well.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shall be annexed to this Chapter and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제8.7조 **최혜국 대우**	**Article 8.7**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If,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arty enters into an agreement notified under Article V or Article V bis of GATS, it shall upon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afford adequate opportunity to that Party to negotiate the benefits granted therein.

가) 시장접근(MA : Market Access) 제한 조치 금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고용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 공급의 특정 법적 형태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 외국 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함(협정 제8.3조).

나) 내국민 대우(NT : National Treatment)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함(협정 제8.4조).

다)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당사국은 내국민대우 또는 시장접근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을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음(협정 제8.5조).

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UAE CEPA는 포지티브 방식의 서비스 자유화 방식을 채택함.

당사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추가 약속에 관련된 조치,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을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기한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추가적 약속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 당사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됨.

또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공통적으로 불합치하는 조치는 시장접근란에 기재하면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협정 제8.6조).

마)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한쪽 당사국이 협정 발효 후 제3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다면 그 당사국에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협정 제8.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GATS 및 한-중국, 한-EU,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우리 기체결 FTA와 유사한 내용의 시장접근 제한 조치 금지, 내국민 대우, 추가적 약속,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혜국대우 의무의 경우, 한쪽 당사국이 추후 제3국과 서비스 협정문이 포함된 FTA 등을 체결할 경우,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한-UAE CEPA 서비스무역 장(章)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한-EU FTA, 한-중국 FTA, 한-아세안 FTA 등과 같이 자유화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만을 양허표에 기재하고 기재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제한 조치, 내국민 대우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양허표에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함.

주요 의무 사항 관련, 시장접근 제한 조치 금지, 추가적 약속 이외에도, 한쪽 당사국이 향후 FTA 체결을 통해 제3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쪽 당사국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

다. 국내 규제

1)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9조 **국내 규제**	**Article 8.9** **Domestic Regulation**
적용범위	*Scope*
1. 이 조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 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1. This Article shall apply to measures by a Party relating to 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	2.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되도록 보장한다.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3. 이 조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terms, limitations, conditions, or qualifications set out in a Party's Schedule pursuant to Articles 8.3 or 8.4.
4. 이 조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 요건, 자격 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uthorization means the permission to supply a service, resulting from a procedure to which an applicant must adhere in order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licensing requirement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r technical standards.
신청의 제출	*Submission of Applications*
5.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5.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void requiring an applicant to approach more than one competent authority for each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If a service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multiple competent authorities, multiple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may be required.
신청 기간	*Application Timeframes*
6.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7] 특정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6. If a Party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the extent practicable permit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t any time throughout the year.[7] If a specific time period for applying exists,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allow a reasonabl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전자 신청과 사본의 수용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cceptance of Copies*
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7. If a Party requires authorization f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가. 상충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적 형태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a)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eting priorities and resource constraints, endeavor to accept applications in electronic format; and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원본 문서 대신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b) accept copies of documents, that are authent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of original documents,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require original documen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authorization process.
신청의 처리	*Processing of Applications*
8.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8. If a Party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제공한다.	(a)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n indicative timeframe for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과도한 지체 없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한 신청의 완료를 확인한다.	(c) to the extent practicable, ascertain without undue delay the completeness of an application for processing under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라.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8],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d)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8]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ensure that: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i)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s completed; an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9], 신청에 관한 결정이 신청인에게 알려진다.[10]	(ii) the applicant is informed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9] to the extent possible in writing;[10]
마.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e)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in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the extent practicable:
1) 신청이 불완전함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i) inform the applicant that the application is incomplete;
2)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ii)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identify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or otherwise provide guidance on why the application is considered incomplete; and
3) 신청인에게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11]를 제공한다.	(iii) provide the applicant with the opportunity[11] to provide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however, if none of the above is practicable, and the application is rejected due to incompleteness, ensure that they so inform the applica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의 재제출 절차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다른 신청[12]을 제출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f) if an application is rejected, to the extent possible, either up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of the applicant,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rejection and, if applicable, the procedures for re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n applicant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submitting another application[12] solely on the basis of a previously rejected application.
9.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	9.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Party shall ensure that authorization, once granted, enters into effect withou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장한다.[13]	undue delay, subject to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13]
수수료	*Fees*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승인 수수료[14]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uthorization fees[14] charg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are reasonable, transparent, based on authority set out in a measure, and do not in themselves restrict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자격의 평가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1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그 밖의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11. If a Party requires an examination for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chedule such an examination at reasonably frequent intervals and provid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enable applicants to request to take the exa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ost, administrative burden, and the integrity of the procedures involved,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accept requests in electronic format to take such examinations, and to consider,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n other aspects of examination processes.
인정	*Recognition*
12. 양 당사국의 전문직 기관이 전문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고 적절한 경우, 그 기관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 Where professional bodies of the Parties are mutual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dialogues on issues relating to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licensing or registration, the Parties should consider supporting the dialogue of those bodies where requested and appropriate.
독립성	*Independence*
13.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	13. If a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결정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15]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reach and administer their decisions in a manner independent from any supplier of the service for which authorization is required.[15]
공표 및 이용 가능한 정보[16]	*Public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16]
14. 제1.7조(투명성)에 더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이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17]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그러한 정보는 존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4. Further to Article 1.7 (Transparency), if a Party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Party shall promptly publish,[17]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n writ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obtaining, maintaining, amending, and renewing such authorization.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ter alia, where it exists:
가. 요건 및 절차	(a)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b)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다. 수수료	(c) fees;
라. 기술표준	(d) technical standards;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한 절차	(e)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of decisions concerning applications;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f) procedures for monitoring or enforc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icenses or qualifications;
사. 공청회 또는 의견을 통한 것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그리고	(g) opportunities for public involvement, such as through hearings or comments; and
아.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	(h) indicative timeframes for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문의처	*Enquiry Poin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5.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18] 당사국은 문의처와 연락처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5. Each Party shall maintain or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regard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18] A Party may choose to address such enquiries through either the enquiry and contact points or any other mechanisms as appropriate.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s*
16. 각 당사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제기구[19]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6.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competent authorities, when adopting technical standards, to adopt technical standards developed through open and transparent processes, and shall encourage any body, including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19] designated to develop technical standards to use open and transparent processes.
조치의 개발	*Development of Measures*
1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7. If a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Party shall ensure that: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20]에 기초한다.	(a) such measures are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20]
나. 절차가 공정하고, 그 절차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b) the procedures are impartial, and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for applicants to demonstrate whether they meet the requirements, if such requirements exist;
다. 절차는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c) the procedures do not in themselves unjustifiably prevent the fulfilment of requirements; and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21]	(d) such measure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21]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각주7]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공식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신청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각주7]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start considering applications outside of their official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각주8]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이 "처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고 간주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가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주8]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all information is submitted in a specified format to consider it "complete for processing".
[각주9]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각주9] "In writing" may include in electronic form.
[각주10]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림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각주101] Competent authorities may meet this requirement by informing an applicant in advance in writing, including through a published measure, that lack of response aft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indicates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각주11] 그러한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시한 연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주11] Such opportunity does not require a competent authority to provide extensions of deadlines.
[각주12]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각주12]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the content of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revised.
[각주13]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각주13]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sponsible for delays due to reasons outside their competence.
[각주14]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14] Authorization fees do not include fees for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payments for auction, tendering or other non-discriminatory means of awarding concessions, or mandated contributions to universal service provision.
[각주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한 행정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운영을	[각주15]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does not mandate a particular administrative structure; it refers to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지칭한다.	decision-making process and administering of decisions.
[각주16] 제14항은 양 당사국이 특정 조치의 채택 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하기 위한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14항에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적 시스템을 반영함을 인정한다.	[각주16] Paragraph 14 recognize that the Parties have different systems to consult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on certain measures before its adoption, and that the alternatives set out in paragraph 14 reflect different legal systems.
[각주17] 이 조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와 같은 공식 간행물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각주17]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publish means to include in an official publication, such as an official journal, or on an official website.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consolidate electronic publications into a single portal.
[각주18] 자원 제약은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각주18] It is understood that resource constraints may be a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mechanism for responding to enquiries is appropriate.
[각주19] "관련 국제기구"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각주19] The ter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s to international bodies whose membership is open to the relevant bodie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각주20] 그러한 기준은 특히, 보건 및 환경 요건과 같은 당사국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각주20] Such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a service, including to do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 Party's regulatory requirements, such as health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Competent authorities may assess the weight to be given to each criterion.
[각주21]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등 대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한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임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각주21] Differential treatment that is reasonable and objective, and aims to achieve a legitimate purpose, and adoption by the Parties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당사국은 개방한 분야에 있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가능한 한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함.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시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시험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함.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존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을 포함 ① 요건 및 절차, ② 관련 당국 연락처, ③ 수수료, ④ 기술표준, ⑤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나 재심사 절차, ⑥ 면허나 자격 조건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⑦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⑧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아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 관련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절차가 공정하고 그 자체로 요건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국내 규제 조항 자체는 그간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발효 중인 기체결 FTA들보다 높은 수준의 국내 규제 문안을 규정함. 한-UAE CEPA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율 수준은 아직 발효 중인 기체결 FTA 중 선례가 없음.

3) 검토의견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WTO 회원국의 국내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총 72개 회원국 참여)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 모두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 참여국임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국내 규제 문안에 합의하게 되었음.

UAE 기체결 FTA 최고 수준의 국내규제 규범을 반영하여, 특히 면허, 자격 승인절차 시 진행상황 및 결과 통보, 부당한 절차 지연 금지 등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이를 통해 UAE 진출 우리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라. 혜택의 부인

1)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15조 **혜택의 부인**	**Article 8.15** **Denial of Benefits**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이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 juridical person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juridical person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juridical person.
한쪽 당사국이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나.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in the case of the supply of a maritime transport service, if it establishes that the service is supplied: (a) by a vessel registered under the laws of a non-Party; and (b) by a person which operates and/or uses the vessel in whole or in part but which is of a non-Party;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 juridical person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that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비당사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등),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대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paper company)에게는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함. 이에 더하여, 혜택부인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인할 수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의 혜택의 부인 규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었음.

3) 검토의견

한-UAE CEP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국 FTA와 유사한 혜택의 부인 규정을 삽입할 것을 의도하였으나, 일부 문안에 대한 UAE측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현재와 같이 규정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제제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의 부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음.

5. 금융 부속서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국내 규제	*Domestic Regulation*
6.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6.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7.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10. 건전성 문제와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다.	10. Panels for disputes on prudential issues and other financial matters shall have the necessary expertise relevant to the specific financial service under dispute.

1) 국내 규제(건전성 조치)

당사국은 FTA 발효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양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도입 가능하도록 함.

①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

②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성의 보장

따라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불건전 영업형태를 보이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의 건전성 조치가 가능하여 각국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가 마련됨.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양국 합의사항의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2) 분쟁해결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금융분야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분쟁 중재패널을 금융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전성 조치는 FTA 금융서비스 분야

의 여러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치로서, GATS, 한-미국, 한-EU FTA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패널에 대해 금융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무 또한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한-미국, 한-EU FTA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검토의견

금융서비스의 건전성 조치 및 분쟁해결 조항은 한-미국 FTA를 비롯하여 금융서비스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건전성 조치 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아울러 분쟁해결 조항을 통해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패널들이 금융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6. 통신 부속서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적용범위	*Scope*
2.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This Annex applies to measures affecting trad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cluding: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a) measures relating to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b) measures relating to obligations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c) other measures relating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nd
라.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d) measures relating to the supply of value-added services.
3.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Except to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perating broadcast stations and cable systems have continued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relating to broadcast or cable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4.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Nothing in this Annex shall be construed to: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a) require a Party, or require a Party to compel any service supplier, to establish, construct, acquire, lease, operate, or provid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not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b) require a Party to compel any service supplier exclusively engaged in the broadcast or cable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to make available its broadcast or cable facilities as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접근 및 이용	*Access and Use*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have access to and use of any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including leased circuits, offered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s set out in paragraphs 6 through 10.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re permitted to: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a) purchase or lease, and attach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hat interfaces with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 provide services to individual or multiple end-users over owned or leased circuits;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c) connect owned or leased circuits with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r across the borders, of that Party, or with circuits leased or owned by another service supplier;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d) perform switching, signaling, processing, and conversion functions; and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e) use operating protocols of their choice in the supply of any service.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	7.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may use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movement of information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including for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 and for access to information contained in databases or otherwise stored in machine-readable form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 Notwithstanding paragraph 7, a Party may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message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9.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no condition is imposed on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other than as necessary to: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a) safeguard the public service responsibilities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n particular their ability to make their networks or services available to the public generally; or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b) protect the technical integrity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10.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9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0. Provided that conditions for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satisfy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9, such conditions may include: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a) a requirement to use specified technical interfaces, including interface protocols, for interconnection with such networks or servic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b) requirements, where necessary,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uch networks and services; and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c) type approval of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hat interfaces with the network and technical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attachment of that equipment to such networks.
경쟁보장장치	*Competitive Safeguard*
1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11. Each Party shall maintain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that, alone or together, are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from engaging in or continu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12. 제1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2.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1 include in particular: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a) engaging in anticompetitive cross-subsidization;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b)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competitors with anticompetitive results; and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c) not making available, on a timely basis,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echnical information about essential facilities and commercially relevant information that are necessary for them to provide services.
번호이동성	*Number Portability*
1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its territory provide number portability for mobile services, to the extent technically feasible,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일반조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1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1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is required to provide interconnection fo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 Such interconnection shall be provided: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 및 요율에 따라	(a) under non-discriminatory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rates;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b) of a quality no less favo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ts own like services, for like services of non-affiliated service suppliers, or for like services of its subsidiaries or other affiliates;
다.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c) in a timely fashion, on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cost-oriented rates that are transparent, reasonable, having regard to economic feasibility, and sufficiently unbundled so that the suppliers need not pay for network components or facilities that they do not require for the services to be provided; and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d) upon request, at points in addition to the network termination points offered to the majority of users, subject to charges that reflect the cost of construction of necessary additional facilities.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	*Public Availability of th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1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15.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applicabl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with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16.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1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make their interconnection agreements available to service suppliers providing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망 요소 세분화	*Unbundling of Network Elements*
1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7.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offers access to network elements on an unbundled basis on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for the supply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 Party may determine the network elements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in its territory, and the suppliers that may obtain those ele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전주, 관로 및 도관에 대한 접근	*Access to Poles, Ducts, and Conduits*
1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이 결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8.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provides access to poles, ducts, conduits, or any other structures as determined by the Party, owned or controlled by the major supplier,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n the Party's territory,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subject to technical feasibility.
19.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8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접근의 부족에 따른 경쟁적 효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	19. A Party may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the poles, ducts, conduits, or any other structures to which it requires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provide acc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8. When the Party makes this determination, it shall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 구조물이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특정한 공익 요인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competitive effect of lack of such access, whether such structures can be substituted in an economically or technically feasible manner in order to provide a competitive service, or other specified public interest factors.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Value-Added Services*
20.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20. Neither Party may require an enterprise in its territory that it classifies as a supplier of value-added services and that supplies those services over facilities that the enterprise does not own to: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a) supply those services to the public generally;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b) cost-justify its rates for those services;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c) file a tariff for those services;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d) connect its networks with any particular customer for the supply of those services; or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할 것	(e) conform with any particular standard or technical regu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for connecting to any other network, other than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21. 제20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0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 Notwithstanding paragraph 20, a Party may take the actions described in paragraph 20 to remedy a practice of a supplier of value-added services that the Party has found in a particular case to be anticompetitive under its law or regulations, or to otherwise promote competition or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국제 모바일 로밍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2.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operate on promoting transparent and reasonable rates for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that can help promote the growth of trade among the Parties and enhance consumer welfare.
23.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23. A Party may take step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such as:
가. 소비자가 소매 요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a) ensuring that information regarding retail rates is easily accessible to consumers; and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b) minimizing impediments to roaming, whereby consumers when visiting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can acces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using the device of their choice.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24.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4. Each Party has the right to define the kind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it wishes to adopt or maintain.
2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25. Each Party shall administer any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that it maintains in a transparent, non-discriminatory, and competitively neutral manner and shall ensure that its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s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for the kind of universal service that it has defined.
허가 절차	*Licensing Process*
26.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26. When a Party requires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o have a license, the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a) all the licensing criteria and procedures it appl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b) the period it normally requires to reach a decision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and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ll licenses in effect.
27.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7.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on request, an applicant receives the reasons for the denial of, revocation of, refusal to renew, or imposition of conditions on, a license.
통신규제기관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28.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 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8.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is separate from and functionally independent of any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does not own equity or maintain an operating or management role in any such supplier.
29.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29.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decisions and procedures of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are impartial with respect to all market participants.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30.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30. Each Party shall administer its procedures for the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telecommunications resources, including frequencies, numbers, and rights-of-way, in an objective, timely,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31.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1.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current state of allocated frequency bands but retains the right not to provide detailed identification of frequencies allocated or assigned f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specific government uses.
32.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3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2. A Party's measures allocating and assigning spectrum and managing frequencies shall not be considered inconsistent with Article 8.3. Accordingly,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establish and apply spectrum and frequency management policies that may limit the number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Each Party also retains the right to allocate frequency bands, taking into account present and future needs and spectrum availability.
통신 분쟁의 해결	*Res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Disputes*
3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3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이의신청	*Recourse*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5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a) (i)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may have recourse to 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of the Party in its territor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n a timely basis regarding measures relating to matters set out in paragraphs 5 through 19;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고,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ii)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which have obtained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that have requested interconnection with a major supplier in the Party's territory may have recourse, within a reasonable and publicly specified period after the supplier requests interconnection, to 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the terms, conditions, and rates f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interconnection with such major supplier; and
사법적 심사	*Judicial Review*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하여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사법적 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b) any service supplier whose legally-protected interests are adversely affected by a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the Party'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may obtain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by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judicial authority of the Party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Party. Neither Party shall permit the making of an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to constitute grounds for non-compliance with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unless the relevant judicial body otherwise determines.
투명성	*Transparency*
3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3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relevant information on conditions affecting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s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가. 서비스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a) tariff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나.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b) specifications of technical interfaces with such networks and services;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c) information on bodie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adoption of standards affecting such access and use;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d) conditions for attaching terminal or other equipment; and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e) requirements for notification or licensing, if any.
기술 선택의 유연성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5.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5. Each Party shall not preven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from having the flexibility to choose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36. 제3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Notwithstanding paragraph 35, a Party may apply a measure that limits the technologies that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may use to supply its services,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designed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and is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in a manner that creates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통신서비스 부속서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관련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치 등에 적용됨. 단, 방송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함.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한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함.

다만,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또한,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경쟁적 교차보조 행위,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기술 및 상업적 정보의 미공개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 사업자에게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요율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함.

또한,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하고,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전주·관로·도관 등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율표 제출 등의 의무 부과를 금지하면서, 다만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당사국은 당사국 간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율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노력하며, 소비자의 소매 요율 정보 접근과 상대국 방문 시 보유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는 당사국이 규정할 권한을 보유함.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중통신사업 허가 절차의 보장,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주파수·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 시행, 협정문 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대해 국내 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 기술 선택의 유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국 FTA도 한-UAE CEPA와 같이 경쟁보장장치, 망 요소 세분화, 상호접속,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 도입된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주요내용 검토

가.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일반 원칙 1. 이 부속서는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양국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	*General Principles* 1. This Annex reflects the Parties' mutual desire to facilitate entry and temporary stay of natural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ir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mitments in their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this Chapter and of establishing transparent measures affecting the entry and temporary stay of natural persons covered by their respectiv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ensure border security and to protect the domestic labor force and permanent employ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일반 의무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적용한다.	*General Obligations* 2. Each Party shall apply its measures related to this Annex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in particular, shall apply those measures so as to avoid unduly nullifying or impairing the benefits accruing to the other Party or delaying trade in services under this Chapter.

양국의 법 및 규정과 구체적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 구체적 약속에 따른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

한 투명한 조치를 수립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명확히 함(협정 부속서 8-다 제1항).

또한,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와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협정 부속서 8-다 제2항).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은 부속서 8-라의 범주에 따라,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의 5개 범주로 구분됨.

< 인력이동의 주요 개념 >

구 분	Mode 4	종 류
투자와 연계된 인력이동	기업내 전근자 (ICT: Intra Corporate Transferees)	임원(executive), 관리자(manager), 전문가(specialist) 등
	상용 방문자 (BV: Business Visitors)	상업적 주재 설립자 (투자자) 등
		서비스판매자(SS: Services Seller)
투자와 연계 없이, 서비스공급을 위한 인력이동	전문인력 (Professionals)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 서비스 수출국 개인 사업자*

※ 자료: 산업통상부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중 FTA, 한-페루 FTA 등에서도 자연인의 이동 장 또는 기업인의 일시입국 장에 자연인의 이동 관련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 검토의견

한-UAE CEPA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른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 관련 조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및 의무를 규정하여 양국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1) 협정문의 주요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Grant of Entry and Temporary Stay*
3.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제8.6조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3. The Parties may make commitments in respect of entry and temporary stay of natural persons. Such commitments and the conditions governing them shall be inscribed in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referred to in Article 8.6.
4. 이 부속서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자연인은	4.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and subject to each Party'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a Party shall grant entry or extension of temporary stay to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provided for in those commitments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provided that those natural persons:
가. 허용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당사국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a) follow the granting Party's prescribed application procedures under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나.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 meet all relevant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ntry and temporary stay or extension of temporary stay.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임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5.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fees charg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for entry and temporary stay are reasonable, in that they do not unduly nullify or impair the benefits accruing to the other Party or delay trade in services under this Chapter.
6.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6. The sole fact that a Party grants entry to a natural person of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not be construed to exempt that natural person from meeting any applicable licensing or other requirements, including any mandatory codes of conduct, to practice a profession or otherwise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할 수 있으며 관련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라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당사국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함(협정 부속서 8-다 제3항, 제4항).

또한 입국 및 일시 체류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는 합리적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입국 허용 사실 자체만으로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 등의 요건 충족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협정 부속서 8-다 제5항, 제6항).

< 자연인의 이동의 조건 및 제한(우리측) (부속서 8-라) >

구분	내용
기업내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 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 ·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3년까지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 시 기간 연장 가능),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 아랍에미리트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에 책임이 있는 자 ·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90일 이하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서비스판매자 (Service Salespersons)	·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한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 ·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90일 이하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회계 서비스, 건축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전문 엔지니어 등 직업의 계약 서비스 공급자 · 한국의 법·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적, 직업적 자격(요건)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자,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기업(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의 피고용인,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최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 관련 법령 준수

※ 자료: 산업통상부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의 WTO DDA[40] 제2차 수정양허안은 기업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그리고 전문인력 가운데 계약서비스공급자(CSS - 수량제한 권한유보 하에서 일부 분야만 양허)만 양허하고 있음.

40)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기체결 FTA도 대부분 DDA 양허안과 유사한 수준에서 체결(한·미 FTA는 인력이동 분야를 협정문에서 제외)하였으며, 한-EU FTA는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해서는 추후 WTO DDA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포함시키기로 합의함. 다만, 한-인도 CEPA에서 독립전문가(IP)를 최초 양허한 이후, 인력이동 관련 사항을 별도 챕터로 구성한 한-페루 FTA,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독립전문가(IP)를 양허함.

3) 검토의견

한-UAE CEPA는 양국 간 출입국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였음. 대부분 DDA 양허안과 유사한 수준에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을 명시하였음.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등에 한정하여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자연인의 이동 개방 수준에 있어 독립전문가(IP) 등을 인정하는 한-인도 CEPA 등 다른 FTA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임.

8.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가. 개요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방식은 크게 GATS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NAFTA 네거티브(Negative)[41] 방식으로 구분되는바, 한-UAE CEPA에서는 GATS, 한-중국 FTA와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함.

이러한 포지티브 방식은 양국이 자유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하여 해당 분야만을 개방토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방식보다 낮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UAE의 경우 자국의 기체결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시도한 경험이 없고,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는바 한-UAE CEP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양허표를 작성하였음.

한-UAE CEPA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유사한 수준으로,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우리측은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들의 UAE로의 진출 여건을 확보하였음.

나. 양허안 협상경과

1)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UAE 서비스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등 분야

41)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모든 서비스 분야와 투자는 기본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개방하지 않거나 제한하려는 분야만 '유보 리스트(Negative List)'에 명시함

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음.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동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분야 지출책이 가장 높은 UAE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UAE 측에 온라인 게임 분야 개방을 요구하였음.

2) UAE측 입장

UAE측은 항공운송, 해상운송 및 관광 서비스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 우리의 기체결 협정인 한-EU, 한-영국 FTA에서의 개방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3) 협상결과

UAE측은 우리측 관심분야인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분야 등에 대해 UAE-인도 CEPA, UAE-이스라엘 CEPA 등 기체결 협정 대비 최고 수준으로 개방하였고, 우리측은 UAE측 관심분야인 항공·해상 운송, 관광 등 분야에 대해 대체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 및 일부 한-영국 FTA 수준으로 개방하였음.

양측의 주요 시장개방 관련, UAE측의 경우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분야를 UAE CEPA 최초로 개방하고, 의료·치의료, 병원, 산후조리 등 의료 서비스와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영화 상영, 시청각 후반제작

등 시청각 서비스를 UAE-인도 CEPA 등 기체결 협정 수준으로 개방하였음. 우리측의 경우 해운 부수서비스, 호텔 서비스 등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 지상조업, 비행기 기내식 준비 서비스를 한-EU, 한-영국 FTA 수준으로 개방하였음.

다. 양허안 주요내용 검토

1) UAE측 양허

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UAE측은 협상 당시 기체결 CEPA 협정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한 사례가 없었으나, 한-UAE CEPA를 통해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하였음.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을 획득할 경우, 우리나라 게임 업체는 UAE에 외국인 지분 49% 제한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으며 모드(Mode) 1[42]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장되었음.

나) 의료 서비스

UAE측은 GATS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의료·치의료(의원급), 병원, 산후조리, 간호, 물리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여,

42) 모드 1(Mode 1, 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각각 자국 영토 내에 머물면서, 서비스 내용만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형태를 말함

UAE의 기체결 CEPA 양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였음. 의원급의 경우 70%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으나 병원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으며,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모두 경제적 수요심사 조건이나 외국인 지분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또한,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 49% 제한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음.

다) 시청각 서비스

UAE측은 GATS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영화·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영화 상영, 사운드 레코딩,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여, UAE의 기체결 CEPA 양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였음. 이러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미디어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되는 형태의 설립이 허용되었음.

2) 우리측 양허

가) 지상조업 서비스

우리측은 UAE측 관심 분야인 항공운송 분야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한-EU, 한-영국 FTA 수준, 즉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만 개방하였

음. 승객, 수하물 관리, 항공기 청소, 제빙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등 시장접근 요소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으나, UAE 지상조업 서비스 기업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나) 해운 부수 서비스

우리측은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해운 중개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 서비스와 같은 해운 부수 서비스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체결 FTA 협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함.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을 주선하거나 선박의 대여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해운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UAE 기업은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로 설립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다) 관광 서비스

우리측은 호텔 서비스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체결 FTA와 같이 제한 없이 개방하였으며, 비행기 기내식 준비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EU, 한-영국 FTA 수준으로 개방하였음. 즉, 기존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체결 FTA에서 음식 제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Mode 1)의 경우 개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것에 비하여, 동 협정에서는 항공 운송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양허를 개선함.

라. 검토의견

우리측은 전반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이나 지상조업 서비스, 비행기 기내식 준비 서비스 등 분야에서 한-EU, 한-영국 FTA 수준으로 양허를 개선하였으며, UAE측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의료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등 분야에서 자국이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함.

한-UAE CEPA 발효 시, 양국 간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국 업계가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의 진출 확대 및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협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9. 소결

한-UAE CEPA 서비스 분야는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발효 이후 제3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에 협상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나아가, 국내 규제 조항을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여 UAE 진출 우리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분야별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WTO GATS, 한-중 FTA와 마찬가지

로 자유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하여 해당 분야만을 개방토록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유사한 수준으로, UAE는 온라인 게임,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함.

한-UAE CEPA는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자연인의 이동을 부속서의 형태로 규율하고, 양국 간 서비스무역 공급을 위한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제9장 디지털무역

1. 개 요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을 규정하여 왔음.

이후 미국 주도로 강력한 디지털 무역 규범이 확대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상거래 대신 '디지털 무역'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이 등장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기존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업그레이드 하여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고 디지털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하며 디지털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9장(디지털 무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는 디지털 무역의 핵심조항을 포함하여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나날이 발전하

고 복잡해지는 디지털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ID, 핀테크, AI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여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디지털 무역을 통한 글로벌 교역 증가 및 향후 동 분야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 및 데이터 현지화 등 디지털무역 챕터의 핵심 의무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음.

나. UAE측 입장

UAE측은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 및 컴퓨터 설비 조항과 관련하여 내부 논의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의무 조항 대신 노력 조항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다. 협상결과

양측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등 총 23개 조항 중 14개 조항에 합의하였으나, 우리측이 제안한 국경간 정보이전 조항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UAE측이 수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UAE의 DEPA 가입 준비 작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초반 UAE측이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조항을 수용하여 UAE FTA 최초로 디지털 무역 챕터의 핵심 의무 조항인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컴퓨팅 설립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된 협정문을 타결함. 이에 K-콘텐츠 수출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4. 협정문의 주요 내용 검토

가.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4조 관세	**Article 9.4 Customs Du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fees, or other charges on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such taxes, fe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제9장(디지털 무역)은 최근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반영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양 당사국 간의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증진, 디지털 무역의 발전에 관한 당사국간 협력 제고를 통한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디지털 무역 이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9.4조(관세)는 동 챕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 중 하나로,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적 전송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과세표준이 명확치 않음.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회의 결정”[43]에 따라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관행을

43)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후 격년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통해 매회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고 있음.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WTO 각료회의를 통해 이 관행을 유지해 왔으나, ‘24년 개최된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무관세 관행을 제14차 각료회의 또는 ’26.3.31일 중 빠른 날까지 연장하되 이후의 연장 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았음.

한-UAE CEPA 협정 내 동 규정은 우리나라와 UAE 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 및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영구적 무관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9.4조제2항은 국가 간 관세가 아닌 내국세 및 그밖의 국내 부과금은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임.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국 FTA의 경우 제15.3조(디지털제품)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D 등 전달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싱가포르 DPA도 제14.5조(관세) 제1항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이 밖에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터키 등과의 FTA에서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대상 문안 비교 >

기체결 FTA 분류	협정문상 무관세 대상
한-싱가포르 DPA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content transmitted electonically
DEPA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한-EU DTA	ㅇ electronic transmission
한-조지아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한-페루	ㅇ digital products by electronic means
한-미국	ㅇ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ㅇ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한-콜롬비아	ㅇ products by electronic means
한-호주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한-캐나다	ㅇ digital products delivered electronically
한-터키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한-베트남	ㅇ electronic transmissions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 의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으로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를 무관세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무관세 관행 유지에 합의하는 것임.

WTO 각료회의를 통해 유지되었던 무관세 관행이 '26.3.31.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 3월 개최 예정인 제14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현재 WTO 각료회의에서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관해 국가별 이견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나, 선진국의 경우는 FTA협정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규정을 두고 있음.

싱가포르는 FTA 협정 체결 시 전자적 전송 관련하여 영구적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전송 매체에 포함된 디지털 기록 및 무형의 가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EU 또한 전자적 전송을 서비스로 보아 무관세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EU-베트남 FTA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미-일 DTA(디지털통상협정)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25년 9월 서명을 완료한 한-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뿐 아니라, 이미 타결하여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조지아 CEPA, 한-EU DTA(디지털통상협정)에서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무관세 규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전송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무역의 기반을 조성하여 K-콘텐츠 수출의 안정성 및 확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5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Article 9.5**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 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accor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
2. 제1항은 제10장(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 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Chapter Ten(Intellectual Property)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제1항은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Paragraph 1 shall no apply to broad casting.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조항은 차별 없는 교역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을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과 대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 비차별 대우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정부 보조금, 방송, 지식 재산

권 관련 권리·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임.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국 FTA의 경우 제15.3조(디지털제품)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싱가포르 DPA의 제14.6조에서도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기체결 FTA상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비교 >

구분	한-싱가포르	DEPA	한-미국	한-에콰도르	한-조지아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터키	한-베트남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	○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 의견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조항은 우리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자국산 또는 제3국산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서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 조항은 NT(내국민대우) 및 MFN(최혜국

대우)을 의미하나, 이는 서비스 양허나 MFN 면제 리스트를 조건으로 적용됨.

제9.5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1항 각주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대우로 한정되고 최혜국대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제8장(서비스 무역)에서 별도의 MFN 예외 목록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각주로, UAE가 수용하여 합의함.

해당 조항은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화된 영화, 드라마, 음원 등 콘텐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산 또는 제3국산 디지털 제품과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전 심사·심의·절차·적합성 평가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약속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과 더불어 K-콘텐츠 수출의 안정성 및 확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경 간 정보 이전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13조 **정보의 국경 간 흐름**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Article 9.13** **Cross-Border Flow of Information**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규제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data,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국경 간 정보 이전(Cross-border Flows of Data)이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의미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간주하며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NTE)에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barriers to cross-border data flow)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Electronic Commerce/Digital Trade Barrier)의 하나로 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UAE CEPA는 UAE 기체결 FTA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각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미국 FTA 제15.8조(국경간 정보 흐름)는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노력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체결한 한-싱가포르 DPA(디지털통상협정)의 경우 제14.14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제2항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검토 의견

UAE가 체결한 CEPA 최초로 디지털 무역에서의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의 국내 이전이 가능해짐.

예를 들어 UAE에 진출한 우리 게임 기업이 현지에서 수집한 UAE 이용자들의 상세 정보를 국내 게임회사가 공유 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게임 유저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 아이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임.

정보 및 데이터는 디지털 산업에서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므로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을 통하여 수집된 중요 정보들을 활용하여 디지털 산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량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Article 9.1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컴퓨터 설비의 위치(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란 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에 컴퓨터 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컴퓨터 설비의 위치 조항은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과 묶어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 조항이라고 하며, 2020년 OECD가 발표한 Digital Economy Paper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는 데이터가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저장 또는 처리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의무적인 법적 또는 행정적 요구를 의미함.

제9.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서버·스토리지 등 컴퓨터 설비의 위치를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통신 보안 및 기밀을 위해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싱가포르 DPA 제14.15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제2항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2024년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또한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검토 의견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즉 컴퓨터 설비 위치 조항과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은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조항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 협정문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조항 중 하나임.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통해 국내에 위치한 기존 서버·스토리지 장비를 운용하여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를 위한 기반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이와 더불어 서버 등의 현지 설치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 설치 없이 기존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등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마. 전자상거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항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9.7조 **전자인증 및 전자 서명**	**Article 9.7**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1. Except in circumstances otherwise provided for under its law, a Party shall not deny the legal validity of a signature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signature is in electronic form.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b) preven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their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require that, for a particular category of transactions,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is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its law.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operable electronic authentication.
제9.17조 **전자송장**	**Article 9.17** **Electronic Invoicing**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invoicing to increase the efficienc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Party also recognizes the benefits of ensuring that the systems used for electronic invoicing within its territory are interoperable with the systems us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2.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lated to electronic invoicing in its territory supports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Parties' electronic invoicing frameworks.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base its measures relating to electronic invoicing on international frameworks.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3. The Parties recognize the economi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체계를 포함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importance of promoting the global adoption of interoperable electronic invoicing systems, including interoperable international framework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 장려, 지원 또는 촉진한다.	(a) promote, encourage, support, or facilitate the adoption of electronic invoicing by enterprises;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증진한다.	(b) promote the existence of policies, infrastructure, and processes that support electronic invoicing;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c) generate awareness of, and build capacity for, electronic invoicing; and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d) share best practices and promote the adoption of interoperable international electronic invoicing systems.
제9.18조 **전자지급**	**Article 9.18** **Electronic Payments**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 Recognizing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on-bank, non-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enterprise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safe, and secure cross-border electronic payments by: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a)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for electronic payments;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b)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electronic payment infrastructures; and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c) encourag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servic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공개한다.	(a) make publicly available its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bility relating to electronic payments, including in relation to regulatory approval, licensing requirements,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나. 전자지급에 관한 규제 승인 또는 면허 승인에 관한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완료한다.	(b) finalize decisions on regulatory or licensing approvals relating to electronic payments in a timely manner;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c)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access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라.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하거나 활용한다.	(d) adopt or utiliz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ronic data exchange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suppliers to enable greater interoperability between electronic payment systems;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e) facilitate the use of open platforms and architectures such as tools and protocols provided for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APIs) and encourage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safely and securely make API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and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	(f) facilita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and electronic payment products an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스의 도입을 시기적절하게 촉진한다.	services in a timely manner, such as through adopting regulatory and industry sandboxes.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3. In view of paragraph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pholding safety, efficiency, trust, and security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rough regulations, and that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policie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risks undertaken by the payment service providers.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 제9.7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9.17조(전자송장) 및 제9.18조(전자지급)은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우수 관행 공유 등 양국간 상이한 디지털 거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전자서명 또는 전자인증의 경우 한-미국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싱가포르 DPA 등 대부분의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만, 비교적 최근 논의된 전자송장 및 전자지급의 경우 한-싱가포르 DPA 및 서명 또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조지아 CEPA, 한-EU DTA, 한-에콰도르 SECA 등 최근에 타결한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음.

< 기체결 FTA상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비교 >

구분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에콰도르	한-조지아	한-EU DTA	RCEP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베트남
전자서명	○	○	○	○	○	○	-	-	○	-	○
전자인증	○	○	○	○	○	○	○	-	○	-	○
전자송장	○	-	○	-	○	-	-	-	-	-	-
전자지급	○	-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 의견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부터 논의된 제도임. 반면 전자송장 및 전자지급은 CPTPP 이후 전자상거래 협정으로부터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협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논의된 제도임. 한-UAE CEPA는 기존 논의되던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뿐 아니라 전자송장 및 전자지급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자서명·전자 인증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전자결제 촉진 등을 통해 GCC 내 전자상거래 선두주자인 UAE에서 현지 인지도가 높은 한국 제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가 기대됨.

제10장 지식재산

1. 개 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의한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전통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을 이르는 말이었음.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정의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시,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 데이터, 인터넷 도메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제10장(지식재산)에서는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WTO TRIPS 협정[44] 수준을 상회하는 보호 규범을 마련하였고, 일부 분야(악의적 출원 상표의 등록 거절 의무,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서는 CPTPP 등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에 반영된 현대적 규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44) WTO TRIPS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된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어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고,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에 관한 협정 제10장 본문은 총 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일반 규정)은 목적, 지식재산의 범위, 내국민대우 등 지식재산권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제2절(협력)에서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함.

제3절(상표), 제4절(지리적 표시), 제5절(특허), 제6절(미공개정보 보호), 제7절(산업디자인), 제8절(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개별 지식재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절(지식재산권의 집행)은 집행 일반 의무, 국경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UAE 내 한류 확산으로 인한 K-콘텐츠 저작권과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를 위한 실체적 보호 규범 및 실효적인 집행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특히 기술보호 조치, 권리 관리정보를 포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조항의 중요성과 지식재산 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 구제절차 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규범 반영을 주장하며 협상에 참여하였음.

나. UAE 측 입장

UAE측은 TRIPS 플러스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제안했으나, 저작자 세부권리(복제·배포·공중전달) 등 저작권 핵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집행의 경우 연방법 특성상 연방 및 주 집행기관 모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집행 일반조항 및 국경조치만을 규정하도록 제안함.

다. 협상 결과

UAE측 초안에는 저작권 관련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측 제안으로 저작자의 세부 권리, 기술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우리측이 제안한 유명상표 구제조치, 악의적 상표 등의 조항들을 UAE측이 수용하여 TRIPS 플러스 수준의 실체적 상표·디자인 규범을 마련하였음.

또한, UAE측은 당초 집행 조항 관련 TRIPS 기반의 일반조항 및 국경조치 조항 이상의 규범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

이 집행조항 수준 제고를 수차례 요청함에 따라 양측은 TRIPS에 따른 집행 절차 마련 의무를 규정하였고, 인터넷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조항을 관철시켜 디지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상표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12조 상표 등록이 가능한 표지의 유형	**Article 10.12 Types of Signs Registrable as Trademarks**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냄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표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No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a sign be visually perceptible, nor shall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nly on the ground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Additionally, each Party shall make best efforts to register scent marks. A Party may require a concise and accurate description, or graphical representation, or both, as applicable, of the trademark.
제10.13조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Article 10.13 Collective and Certification Marks**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법에서 별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include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A Party is no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도의 범주로 취급할 의무가 없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가 자국의 상표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obligated to treat certification marks as a separate category in its law, provided that those marks are protected.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that signs that may serve as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capable of protection under its trademark system.
제10.14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	**Article 10.14** **Use of Identical or Similar Signs**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third parties that do not have the owner'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for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owner's trademark is registered, where such use would result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In the case of the use of an identical sign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a likelihood of confusion shall be presumed.
제10.15조 **예외**	**Article 10.15** **Exceptions**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A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rights conferred by a trademark, such as fair use of descriptive terms,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take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of third parties.
제10.16조 **유명상표**	**Article 10.16** **Well-Known Trademarks**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1.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that a mark is a well-known mark, that the mark has been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in another jurisdic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Additionally, neither Party may deny remedies or relief with respect to well-known marks solely because of the lack of: (a) registration; (b) inclusion on a list of well-known marks; or (c) prior recognition of the mark as well-known.
2. 파리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2]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 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Article 6 bis of the Paris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identified by a well-known trademark,[2] whether registered or not, provided that use of that trade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3. 각 당사국은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동맹 총회와 1999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유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공동 권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Each Par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as adopted by the Assembly of the Paris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the General Assembly of WIPO at the Thirty-Fourth Series of Meetings of the Assemblies of the Member States of WIPO held on 20 to 29 September 1999.
4. 각 당사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3]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4.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the application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3] for identical, similar, 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is likely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cause confusion or to deceive with the prior well-known trademark.
[각주2] 상표가 당사국에서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은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각주2] In determining whether a trademark is well-known in a Party, that Party need not requi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extend beyond the sector of the public that normally deals with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각주3] 양 당사국은 유명 상표가 최초로 언급된 상표에 대한 출원, 등록 또는 사용 전에,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이미 유명했던 상표임을 양해한다.	[각주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a well-known trademark is one that was already well-known before, as determined by a Party,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or use of the first-mentioned trademark.
제10.17조 **악의적 상표**	**Article 10.17** **Bad Faith Trademarks**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y has the authority to cancel a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here the application to register the trademark was made in bad faith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제10.18조 **상표의 심사, 이의제기 및 취소의 절차적 측면**	**Article 10.18** **Procedural Aspects of Examination, Opposition, and Cancellation of Trademarks**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 system for the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s which includes among other things: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a) communicating to the applicant in writing, which may be by electronic means, the reasons for any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	(b) providing the applicant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communication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ntest any initial refusal, and to make a judicial appeal of any final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다.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c) providing an opportunity to oppos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r to seek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trademark; and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d) requiring administrative decisions in opposition and cancellation proceedings to be reasoned and in writing, which may be provided by electronic means.
제10.19조 **전자적 상표 제도**	**Article 10.19** **Electronic Trademark System**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 전자적 처리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a) a system for the electronic application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and maintenance of trademarks; and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정보 시스템	(b) a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an online database, of trademark applications and of registered trademarks.
제10.20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Article 10.20**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각 당사국은 1957 년 6 월 15 일 니스에서 체결되고 수정 및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합치하는 상표 분류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trademark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the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done at Nice on 15 June 1957, as revised and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ice Classifica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니스 분류[4]에 의하여 설정된 류별로 분류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그 명칭으로 표시하는 출원의 등록 및 공표, 그리고	(a) registrations and the publications of applications indicate the goods and services by their names, grouped according to the classes established by the Nice Classification;[4] and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없도록 규정한다.	(b) goods or services may not be considered as being similar to each other on the ground that, in any registration or publication, they are classified in the same class of the Nice Classification. Conversel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goods or services may not be considered as being dissimilar from each other on the ground that, in any registration or publication, they are classified in different classes of the Nice Classification.
[각주4] 니스 분류의 번역본에 의존하는 당사국은 발표 및 공표된 공식 번역본의 한도에서 니스 분류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각주4] A Party that relies on translations of the Nice Classification shall follow updated versions of the Nice Classification to the extent that official translations have been issued and published.
제10.21조 **상표의 보호 기간**	**Article 10.21** **Term of Protection for Trademarks**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 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itial registration and each renewal of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hall be for a term of no less than 10 years.
제10.22조 **사용권의 비등록**	**Article 10.22** **Non-Recordal of a License**
어떠한 당사국도	No Party shall require recordal of trademark licenses:
가.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a)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license; or
나.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의 취득, 유지 또는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서	(b) as a condition for use of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trademark by a licensee to be deemed to constitute use by the holder in a proceeding that relates to the acquisition, maintenance, or enforcement of trademarks.
제10.23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Article 10.23**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igital Environment**
1.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ccTLD)의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이 이용 가능하다.	1. In connection with each Party's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its country-code top-level domain(ccTLD) domain names, the following shall be available:
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대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다음의 절차	(a) an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ased on, or modelled along the same lines as,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as approved b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or that:
1)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i) is designed to resolve disputes expeditiously and at low cost;
2)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ii) is fair and equitable;
3)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절차, 그리고	(iii) is not overly burdensome; and
4)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절차	(iv) does not preclude resort to judicial proceedings;
나.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관리자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대중의 접근, 그리고	(b) online public access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 and, if applicable, relevant administrator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and
다. 최소한 어떠한 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5]	(c) appropriate remedies,[5] at least in cases in which a person registers or holds, with a bad faith intent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profit, a domain name that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a trademark.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2. In order to identify and mitigate copyright infringements in digital trade, each Party shall have in place measures to block access to and shut down online services making profits primarily from distribution of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s.
3. 각 당사국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regime providing for limitations on the liability of, or on the remedies available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while preserv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right holder.
[각주5] 양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취하, 취소, 이전, 손해배상 또는 구제명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음을 양해한다.	[각주5] The Parties understand that such remedies may, but need not, include among other things, revocation, cancellation, transfer, damage or injunctive relief.
제10.24조 국가명	**Article 10.24 Country Names**
각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ersons to prevent commercial use of the country name of a Party in relation to a good in a manner that misleads consumers as to the origin of that good.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표장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하지 않은 비전형 상표가 출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 상표 보호에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함(협정 제10.12조, 제10.13조).

유명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의 등록 여부를 보호 요건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사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유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거절·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상표권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함(협정 제10.16조).

또한, 상표 등록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한 당국이 회원국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10.17조).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합치하는 상표 분류 체계를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하여 회원국 간 동일한 상표 분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협정 제10.20조).

아울러, 악의적 도메인네임 등록 대응,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마련함(협정 제10.2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이러한 상표의 보호 규범은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규정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악의적 상표의 등록 취소 권한을 규정함.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냄새・소리 상표 인정	-	소리상표 인정	냄새・소리 상표 인정	소리 상표 인정	냄새・소리 상표 인정
증명표장 제도 도입	-	-	증명표장 제도 규정	증명표장 제도 규정	증명표장 제도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상표등록 절차상 준수의무 규정
유명상표 보호 (미등록 유명상표의 비동일·비유사 상품·서비스까지 보호)	-	유명상표 보호	유명상표 보호	유명상표 보호	유명상표 보호 (미등록 유명상표의 비동일·비유사 상품·서비스까지 보호)
-	-	-	-	-	악의적 상표 등록 취소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우리나라와 UAE의 상표출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4년 UAE 내에서 총 출원은 32,666건으로 우리나라의 12.8%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은 11,496건으로 우리나라의 5%정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UAE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출원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출원인의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45)]

45) 2014년: 328건 → 2019년: 358건 → 2024년: 574건

< 연도별 대한민국과 UAE의 상표 출원 현황 비교 >

(단위: 건, %)

국가별	출원인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스라엘	총	18,688	18,620	25,487	32,236	37,608	32,666
	내국인	5,507	6,415	8,281	8,142	10,782	11,496
	비율	29.5	34.5	32.5	25.3	28.7	35.2
대한민국	총	218,599	256,835	285,285	255,796	253,108	254,893
	내국인	190,194	230,301	255,751	228,217	227,226	227,264
	비율	87.0	89.7	89.6	89.2	89.8	89.2

※ 자료: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홈페이지 검색(2026. 2. 20)

동 협정은 유명상표 보호, 상표등록절차 규정 등의 조항들을 TRIPS 협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국 내 우리 상표권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악의적 상표 등록 취소 규정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 악의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 상표가 현지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되거나 도용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보임.

우리 「상표법」은 악의적 출원을 거절의 사유로 명시[46]하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미 규정[47]하고 있어 국내 법령의 별도 개

46)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47)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정은 불요한 것으로 보이며, UAE에서 우리 기업 상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리적 표시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25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Article 10.25**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1. Geographical indication means an indication that identifies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2. 양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2. The Parties reaffirm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may be protected through a trademark or sui generis system or other legal means.
제10.26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Article 10.26**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각 당사국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등록에 대한 출원 또는 인정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출원 또는 요청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registration or recogni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rough a trademark or a sui generis system. Each Party shall, with respect to applications for that registration or requests for that recognition, ensure that its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filing of those applications or requests ar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clearly set out the procedures for these actions.
제10.27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Article 10.27** **Date of Protec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당사국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 그 보호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의 출원일[6] 또는 등록일 후 개시된다.	If a Party grants protection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the protection shall commence no earlier than the filing date[6] or the registration date in that Party according to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각주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각주6] For greater certainty, the filing dat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cludes, as applicable, the priority filing date under the Paris Convention.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함.

각 당사국은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과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또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의 출원일 또는 등록일 후 개시되도록 함(협정 제10.25, 제10.26, 제10.27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지리적 표시제도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RIPS, 한-EU FTA, 한-미국 FTA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동 협정의 지리적 표시 규정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 뿐 아니라, 독자적 제도,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로 보호	지리적 표시 리스트 교환 및 추가 관련 사항 규정	지리적 표시 보호 규범 無	지리적 표시 보호 규범 無	지리적 표시 보호	지리적 표시를 상표, 독자적 제도 등으로 보호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동 협정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규정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상품 교역 시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에 있어 「상표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UAE와 달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자적 제도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UAE 내에서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제10.26조제2항).

다. 특허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28조 **특허 가능 대상**	**Article 10.28** **Patentable Subject Matter**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7]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1. Each Party shall make patents available for any invention, whether a product or proces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and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7] In addition, each Party may provide that a patent shall be available for any new use or method of using a known product.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8]	2. Each Party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8]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a)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its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its law; and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b)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각주7]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각주7]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inventive step” and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may be deemed by a Party to be synonymous with the terms “non-obvious” and “useful” respectively.
[각주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	[각주8] For greater certainty, it is understood that this paragraph does no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정 제27조와 합치되는 특허대상에 대한 예외를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prevent a Party from legislating exceptions to patentability that are consistent with Article 27 of the TRIPS Agreement.
제10.29조 공지 예외	**Article 10.29 Grace Period**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등록[9] 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Each Party shall disregard information contained in public disclosures of an invention related to an application to register a patent[9] if the public disclosure:
가. 발명가,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a) was made by the inventor, applicant or a person that obtained the information from the inventor or applicant inside or outside its territory; and
나. 출원일 이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b) occurred within at least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각주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을 포함할 수 있다.	[각주9] For greater certainty, patent may include utility model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제10.30조 특허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Article 10.30 Procedural Aspects of Examination, Opposition, and Invalidation of Patents**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 system for the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of patents which includes among other things:
가. 특허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a) communicating to the applicant in writing, which may be by electronic means, the reasons for any refusal to register a patent;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	(b) providing the applicant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communication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ntest any initial refusal, and to make a judicial appeal of any final refusal to register a patent;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특허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c)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interested parties to seek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of a registered patent; and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d) requiring decisions in opposition,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proceedings to be reasoned and in writing, which may be delivered by electronic means.
제10.31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Article 10.31 Amendments, Corrections, and Observations**
1.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 patent applicant with at least one opportunity to make amendments, corrections, or observations in connection with its application.
2.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에게 등록 후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 전체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10]	2. Each Party shall provide a patent owner with opportunities to make amendments or corrections after registration, provided that such amendments or corrections do not change or expand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as a whole.[10]
[각주10] 권리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의 범위가 종전과 같거나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각주10] It is understood that the amendments or corrections which do not change or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means that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stays same as before or reduced.
제10.32조 예외	**Article 10.32 Exceptions**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A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양국은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도록 인정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협정 제10.28조).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조각되었을 때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공지예외' 제도를 규정함. 발명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공지예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협정 제10.29조).

또한, 특허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 조항과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조항 등 특허 절차 관련 조항 등을 규정함(협정 제10.30조, 제10.31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 보호 및 예외, 공지예외 등을 포함하였으나, 특허 우선심사제도 등 일부 절차 규범은 포함되지 않음.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특허 보호 및 예외	특허 보호 및 예외	특허 보호 및 예외	특허 보호 및 예외	특허 보호 및 예외	특허 보호 및 예외
공지예외	-	-	공지예외	공지예외	공지예외
-	-	특허 우선심사 제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동 협정은 특허 대상 및 특허 제외 범위, 공지 예외 등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주요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허 우선심사 제도 등 일부 선진 절차 규범은 포함되지 않음.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여 우리 기업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한 제3자의 유사 특허 출원·등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임.

라. 산업 디자인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34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Article 10.34**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1. 각 당사국은 물품의 일부(들)를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in its domestic law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including a part(s) of an article.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확보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획득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기회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requirements for securing or enforcing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do not unreasonably impair the opportunity to obtain or enforce such protection.
3. 등록된 산업 디자인의 이용 가능한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소 20년에 달한다.	3. The duration of protection available for registered industrial designs shall amount to at least 2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제10.35조 **산업디자인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Article 10.34** **Procedural Aspects of Examination, Opposition, and Invalidation of Industrial Designs**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 system for the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which includes among other things:
가. 산업디자인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a) communicating to the applicant in writing, which may be by electronic means, the reasons for any refusal to register an industrial design;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디자인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b) providing the applicant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communication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ntest any initi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refusal, and to make a judicial appeal of any final refusal to register an industrial design;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c)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interested parties to seek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of a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and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d) requiring decisions in opposition,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proceedings to be reasoned and in writing, which may be delivered by electronic means.
제10.36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Article 10.36** **Amendments, Corrections, and Observations**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등록 전 보정, 정정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an applicant for an industrial design with at least one opportunity to ake amendments, corrections, or observations in connection with its application before registration.
제10.37조 **공지 예외**	**Article 10.37** **Grace Period**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된 디자인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Each Party shall disregard information contained in public disclosures of a design related to an pplication to register an industrial design if the public disclosure:
가. 창작자,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창작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a) was made by the creator, applicant or a person that obtained the information from the reator or applicant inside or outside its territory; and
나. 출원일 이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b) occurred within at least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제10.38조 **예외**	**Article 10.38**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Exceptions** A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n industrial design, 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an ndustrial design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rotected design,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양국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가 산업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의 복제 행위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산업디자인의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갖도록 함(협정 제10.34조).

양국은 물품의 일부를 포함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디자인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 절차,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제도 등을 규정함(협정 제10.35조, 제10.36조).

아울러, 특허권과 동일하게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 관련 당사국의 영역 또는 밖에서 창작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였거나 디자인의 공지가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공지예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협정 제10.37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디자인 보호 및 예외는 한-EU, 한-중국 FTA와 유사하게 규정되었으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를 인정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12개월 공지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디자인 규범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헤이그 협약 가입 노력	디자인 보호 미등록 외관보호	디자인 보호	디자인 보호 미등록 외관보호	디자인보호	디자인 보호 (부분 디자인 포함) 공지예외(12개월)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동 협정은 디자인 보호기간(최소 20년)은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보호기간(10년) 보다 높은 보호수준이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3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Article 10.39**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가. 로마협약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a) Articles 1 through 22 of the Rome Convention;
나.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b) Articles 1 through 18 of the Berne Convention;
다. WCT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c) Articles 1 through 14 of the WCT; and
라. WPPT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d) Articles 1 through 23 of the WPPT.
제10.40조 **제한 및 예외**	**Article 10.40** **Limitations and Exceptions**
1. 이 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With respect to this Section, each Party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ing,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2.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베른 협약, WCT 또는 WPPT 에 의하여 허용되는 제한 및 예외의 적용가능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2. This Article does not reduce or extend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ermitted by the TRIPS Agreement, the Berne Convention, the WCT, or the WPPT.
제10.41조	**Article 10.41**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의 균형	**Balance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s**
각 당사국은 비판, 논평, 뉴스 보도, 수업 · 학문 · 연구와 그 밖의 유사한 목적과 맹인, 시각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정당한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 10.40 조와 합치되는 제한 또는 예외의 수단을 통하여(디지털 환경을 위한 것을 포함한다) 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12]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in it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 among other things by mean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Article 10.40, including those for the digital environmen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legitimate purpos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research, and other similar purposes; and facilitating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12]
[각주12] 마라케시 조약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각주12] As recognized by the Marrakesh Treaty.
제10.42조 **계약에 의한 이전**	**Article 10.42** **Contractual Transfers**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y person acquiring or holding any economic right in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a) may freely and separately transfer that right by contract; and (b) by virtue of contract, including contracts of employment underlying the creation of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shall be able to exercise that right in that person's own name and enjoy fully the benefits derived from that right.
제10.43조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무**	**Article 10.43** **Obligations concerning Protec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authors,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concerned or permitted by its law.
2.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권리관리정보[13]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removing or altering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13] without authority knowing, or with respect to civil remedies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각주13]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대중 전달이나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대중 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저작물 · 저작자 ·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 또는 실연자 · 실연자의 실연 · 음반 제작자 · 음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각주13]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which identifies the work, the author of the work,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or the performer,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er,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the phonogram,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work, the performance or the phonogram,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ttached to a copy of a work, a fixed performance or a phonogram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of a work, or with the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of a fixed performance or a phonogram to the public.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44조 **집중관리**	**Article 10.44** **Collective Management**
양 당사국은 적절한 기록의 유지 및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행을 기초로 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role of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royalties based on practices that are fair, efficient, transparent, and accountable,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mechanisms.
제10.45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Article 10.45** **Presumption of Authorship or Ownership**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 · 출판자 · 실연자 · 제작자 또는 방송국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ublisher, performer,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양 당사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 보호 조약(WPPT)를 모두 준수하도록 함(협정 제10.39조).

베른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당사국은 비판·논평·뉴스 보도·교육·학문・연구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맹인, 시각장애인, 기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촉진하는

목적도 고려해야 함.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반영하여, 양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제한이나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권리보호와 공익 간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함(협정 제10.41조).

아울러 당사국은 저작물 무단복제 등의 불법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하며, 저작물에 부착된 저작권자 식별 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협정 제10.43조).

또한, 당사국은 사용료의 공정·효율적·투명·책임 있는 징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인정함(제10.44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동 협정에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권리, 기술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하였으나,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등 요소는 포함하지 않음.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저작권보호	저작권 보호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
실연・음반 보호	실연·음반 보호	실연・음반 보호	실연·음반 보호	실연 보호	실연·음반 보호
방송사업자 규정無	방송사업자 보호	방송사업자 보호	방송사업자 보호	-	방송사업자 보호
기술보호조치 보호	기술보호조치 보호	기술보호조치 보호	기술보호조치 보호	-	기술보호조치 보호
권리관리정보 보호	권리관리정보 보호	권리관리정보 보호	권리관리정보 보호	-	권리관리정보 보호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고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유선·위성 방송 구독서비스 부정 취득의 형사 범죄 간주	-
	집중관리단체간 협력 촉진 노력 집중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노력		집중관리단체 중요성 인식 집중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노력	집중관리단체 중요성 인식 집중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노력	집중관리단체 역할 인정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양국은 공통으로 가입한 주요 저작권 협약(베른 협약, 로마협약, WCT, WPPT)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자의 세부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음.

또한, 권리관리정보 보호, 기술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을 도입하여 저작물에 부착된 저작권자 식별 정보 보호 및 침해행위 처벌,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용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바. 집행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0.46조 **집행상 일반 의무**	**Article 10.46** **General Obligation in Enforcement**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합치되게 각국의 법에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규정한다.	1. The Parties shall provide in their respective laws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s 41 through 61.
2.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에 명시된 집행절차가 자국의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14]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enforcement procedures as specified in this Section are available under its law so as to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remedies that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These procedures shall be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and to provide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14]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15]	3.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curtail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networks.[15]
[각주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주14] For greater certainty, each Party confirms that the enforcement procedures set out in this Section shall be available to the same extent with respect to act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trademarks, in the digital environment.
[각주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법령, 지침, 정책, 인식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각주15] For greater certainty, it is understood that such measur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egislation, guidelines, policies, awarenes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campaigns, etc.
제10.47조 국경조치	**Article 10.47** **Border Measures**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정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 Each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4 of Part III of the TRIPS Agreement,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o enable a right holder, who has valid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importations of counterfeit trademark or pirated copyright goods may take place, to lodge an application in writing with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suspension by that Party's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of such goods.
2.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그 밖의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상품의 관세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A Party may enable such an application to be made in respect of goods which involve other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4 of Part III of the TRIPS Agreement are met. A Party may also provide for corresponding procedures concerning the suspens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lease of infringing goods destined for exportation from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TRIPS 집행조항 이행 의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구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 조치를 규정함(협정 제10.46조).

국경조치로는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반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또한,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은 폐기되도록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유통을 국경조치 단계에서 방지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0.47조).

아울러 우리측은 디지털 환경 하의 지재권 보호 조항(악의적 도메인 네임 등록 대응,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을 제3절에 신규 제안하여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방지·대응을 위한 규범을 도입함(협정 제10.2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동 협정의 집행 규범은 여타 기체결 FTA에 포함된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나, TRIPS에 따른 집행 절차 마련 의무 및 세관 직권 국경조치 권리 등 실효적 집행을 위한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과거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한-미국	한-EU	한-중국	한-중미	한-이스라엘	한-UAE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민사절차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저작권 섹션에 규정)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조치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조치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조치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조치	침해물품 압류 등 잠정조치	-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형사 절차 및 처벌	형사 절차 및 처벌	형사 절차 및 처벌	형사 절차 및 처벌	형사 절차 및 처벌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
-	-	-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동 협정은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저작권 권리자 추정, 세관 직권 국경조치 가능 등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콘텐츠·브랜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침해·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11장 정부조달

1. 개 요

정부조달[48]은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시장으로서, 현재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개방은 복수국간 협정[49]인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과 국가 간 양자나 다자 통상협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WTO GPA는 우루과이 라운드(1994)에서 서명되어 1996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7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이후 GPA 회원국들은 2004년부터 기존 GPA 협정문을 개선하고 양허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2014년 4월 개정 GP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9개국이 가입한 상태임.

우리나라는 개정 GPA를 2016년 1월 14일 발효하여 GP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했으며 이에 더하여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과는 FTA를 통해 상호 개방함. 한편, UAE는 GPA에 가입하지 않았고 양자 통상협정을 통해서만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한-UAE CEPA의 정부조달 챕터는 우리나라와 UAE가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며, 양자 차원의 정부조달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48) 정부조달 :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

49) 가입국이 협정 부록 양허표에서 자국이 양허한 기관의 양허 하한선 이상 규모의 조달에 대해서만 GPA 적용(GPA 미가입국은 적용 배제)

2.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UAE CEPA 제11장(정부조달)은 23개 조문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 본문에서는 정부조달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 조달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양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것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협정 제11.2조), 비차별 원칙, 대응구매 금지 등 일반원칙(협정 제11.5조), 기간(협정 제11.14조) 등의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음.

부속서 11-가에서는 양측 시장개방 기준금액, 한-UAE CEPA를 통하여 개방한 중앙정부기관과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등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조달 챕터는 양측이 개정 GPA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1차례 실무협상 이후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타결되었음.

시장개방 부속서와 관련하여 UAE측이 기체결과 달리 디지털 조달 플랫폼(DPP, Digital Procurement Platform) 출범 이후에는 동 플랫폼을 활용하는 연방기관(27개)만 양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우리측은 중앙정부기관에 한정한 시장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추후 DPP 활용 기관이 추가될 경우 조달 챕터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문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UAE측이 수용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정부조달 협정문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1.2조 **적용범위**	**Article 11.2** **Scope**
협정의 적용	**Application of Chapter**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vered procurement means government procurement:
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a) of a good, ser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1)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것, 그리고	(i) as specified in each Party's Schedule to Annex 11-A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and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ii) not procured with a view to commercial sale or resale, or for use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or resale;
나. 구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리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	(b)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purchase; rental or le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build-operate-transfe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contracts; and public works concessions contracts;
다. 제 9 항부터 제 11 항까지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c) for which the value, a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9 to 11, equals or exceeds the relevant threshold specified in a Party's Schedule to Annex 11-A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d) by a procuring entity; and
마.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는 것	(e) that is not otherwis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is Agreement.
...(생략)	...(생략)
제11.4조 **예외**	**Article 11.4** **Exceptions**
1.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 당사국 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 measure is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between the Parti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der or safety;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c) necessar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r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d) relating to the good or service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of philanthropic or not-for-profit institutions, or of prison labor.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2.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to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or not disclosing any information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arms, ammunition, or war materials, or to procurement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national defense purposes.
제11.5조 **일반원칙**	**Article 11.5** **General Principles**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1.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each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goods and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nd to th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treatment that the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accords to domestic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의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With respect to a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neither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 trea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less favorably than another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of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to or ownership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b) discriminate agains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that the good or service offered by that supplier for a particular procurement is a good or service of the other Party.
3. 적용대상조달을 위하여 낙찰된 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3. All orders under contracts awarded for covered procurement shall be subject to paragraphs 1 and 2.
...(생략)	...(생략)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1.7조 **조달예정공고**	**Article 11.7** **Notices of Intended Procurement**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 11.10 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공고에 응답하기 위한 기간의 만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1. For each covered procurement, except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Article 11.10,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through the appropriate paper or electronic means listed in Annex 11-A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The notices shall remain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until at least the expiration of the time period for responding to the notice or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tender.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 제 1 절에 규정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공표에 대한 단일 창구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2. Each Party shall ensure for covered procurements that its procuring entities, as set out in Section A of its Schedule, included in Annex 11-A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publish notices of intended procurement in a single point of entry to an electronic publication, that is accessible free of charge through the internet or a comparable network.
3.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정보가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입찰 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unless that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that is mad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interested suppliers at the same time as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생략)	...(생략)
제11.8조 **참가조건**	**Article 11.8**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의 가조건을 공급자가 그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A procuring entity shall limit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to those that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a supplier has the legal and financial capacities and the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to fulfil the requirements of that procur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2. In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 procuring entity: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a) shall not impose the condition that, in order for a supplier to participate in a procurement, the supplier has previously been awarded one or more contracts by a procuring entity of a given Party or that the supplier has prior work experi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nd
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b) may require relevant prior experience if essentia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3. In assessing whether a supplier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 procuring entity shall: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 규제 준수 관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행을 평가한다. 그리고	(a) evaluate the financial capacity, the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the regulatory compliance practices,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of a supplier on the basis of that supplier's business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1 and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b) base its evaluation solely on the conditions that the procuring entity has specified in adva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생략)	...(생략)
제11.10조 제한입찰	**Article 11.10 Limited Tendering**
1. 제 2 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1. Subject to paragraph 2 and provided that it does not use this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to protect domestic suppliers, or in a manner that discriminates against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 procuring entity may use limited tendering.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조달기관이 제한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제 11.7 조부터 제 11.9조까지 및 제 11.11 조부터 제 11.15 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2. If a procuring entity uses limited tendering, it may choos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curement, not to apply Articles 11.7 through 11.9 and Articles 11.11 through Article 11.15. A procuring entity may use limited tendering only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가. 사전 공고, 참가 요청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a) if, in response to a prior notice, invitation to participate, or invitation to tender: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i) no tenders were submitted or no suppliers requested participation;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ii) no tenders were submitted tha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iii) no supplier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r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iv) the tenders submitted were collusive;
다만,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적인 요건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provided that the procuring entity does not substantially modify the essenti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b) if the good or service can be supplied only by a particular supplier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 or substitute good or service exists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i) the requirement is for a work of art;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ii) the protection of patents, copyrights, or other exclusive rights; or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iii) due to an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hnical reasons;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또는 그의 인증 받은 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c) for additional deliveries by the original supplier or its authorized agents, of goods or service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procurement if a change of supplier for such additional goods or servic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원공급자의 보증에 따른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 cannot be made for technical reasons such as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or interoperability with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procured under the initial procurement, or due to conditions under original supplier warranties; and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ii) would cause significant inconvenience or substantial duplication of costs for the procuring entity;
라. 원자재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d) for a good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or exchange;
...(생략)	...(생략)
제11.12조 **기술 규격**	**Article 11.12** **Technical Specifications**
1.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1.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repare, adopt, or apply any technical specification or prescribe an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effect of creating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2. In prescrib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if appropriate: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a) set out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in terms of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b) base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n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ese exist; otherwise, o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recognized national standards or building codes.
...(생략)	...(생략)
제11.14조	**Article 11.14**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기간	**Time Periods**
일반사항	**General**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서류를 획득하고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1. A procuring entity shall, consistent with its own reasonable needs, provide sufficient time for a supplier to obtain the tender documentation and to prepare and submit a request for participation and a responsive tender,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a)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b) the extent of subcontracting anticipated; and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c) the time necessary for transmitting tenders by non-electronic means from foreign as well as domestic points if electronic means are not used.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Such time-periods, including any extension of the time-periods, shall be the same for all interested or participating suppliers.
마감시한	**Deadlines**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 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 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2. A procuring entity that uses selective tendering shall establish that the final date for the submission of a request for participation shall not, in principle, be less than 25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f a state of urgency duly substantiated by the procuring entity renders this time period impracticable, the time period may be reduced to no less than 10 days.
...(생략)	...(생략)
제11.16조 **투명성과 낙찰 후 정보**	**Article 11.16** **Transparency and Post-Award Information**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조달기관은 서면 또는 공고의 신속한 공표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에 낙찰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달기관은 서면으로 제공한다.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suppliers that have submitted a tender of the contract award decision. The procuring entity may do so in writing or through the prompt publication of the notice, provided that the notice includes the date of award. If a supplier has requested the information in writing, the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it in writing.
2. 제 11.17 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그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2. Subject to Article 11.17, a procuring entity shall, on request, provide an unsuccessful supplier with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why the procuring entity did not select the unsuccessful supplier's tender or an explanation of the relative advantages of the successful supplier's tender.
기록의 유지	**Maintenance of Records**
3. 조달기관은 제 11.10 조제 3 항에 규정된 기록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입찰 절차 및 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보고서를 계약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한다.	3. A procuring entity shall maintain the documentation, records and reports relating to tendering procedures and contract awards for covered procurement, including the records and reports provided for in Article: 11.10.3, for at least three years after the award of a contract.
제11.18조 **조달 관행의 무결성 보장**	**Article 11.18** **Ensuring Integrity in Procurement Practices**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에서 부패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동안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criminal or administrative measures exist to address corruption in its government procurement. These measures may include procedures to render ineligible for participation in the Party's procurements, either indefinitely or for a stated period of time, suppliers that the Party has determined to have engaged in fraudulent or other illegal actions in relation to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Party's territory. Each Party shall also ensure that it has in place policies and procedures to eliminate to the extent possible or manage any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n the part of those engaged in or having influence over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procurement.
제11.21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Article 11.21** **Facilitation of Participation by SMEs**
1.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contribution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MEs") can make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SMEs in government procurement.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2. If a Party maintains a measure that provid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SMEs,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 including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is transparent.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3. To facilitate participation by SMEs in covered procurement,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if appropriate: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a) provide comprehensive procurement-related information that includes a definition of SMEs in a single electronic portal;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b) endeavor to make all tender documentation available free of charge;
다. 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c) conduct procurement by electronic means or through other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라.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이용을 포함하여 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d) consider the size, design, and structure of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use of subcontracting by SMEs.
제11.23조 **언어**	**Article 11.23** **Language**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 제8절에 기재된 공표물을 포함하여 제11.7조에 따른 자료나 정보	To improve market access to each Party's procurement market, each Party shall, where possible, use English in its publication of materials or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1.7, including in the publications listed i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의 공표에 영어를 사용한다.	Section H of each Party's Schedule in Annex 11-A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한-UAE CEPA는 조달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임차·리스 등 계약을 통하여 양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것에 적용되고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과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등을 규정함(협정 제11.2조).

공중도덕,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국가안보 목적의 조치 등을 적용 예외로 하고, 당사국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협정 제11.4조).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적용대상 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절차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선택입찰과 제한입찰 절차를 인정하며, 나아가 대응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됨(협정 제11.5조).

제한입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하고, 조달계획 공고를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함(협정 제11.7조).

적용 대상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

인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하고, 조달 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찰실적이나 사전 작업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협정 제11.8조).

공급자 간 경쟁 회피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당사국 공급자를 차별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한, 협정문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입찰의 이용이 가능함(협정 제11.10조).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기술규격을 준비·채택·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기술규격을 정함(협정 제11.12조).

조달의 성격, 하도급 계약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입찰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필요시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음(협정 제11.14조).

정부조달 시장 내 부패 관리를 위하여 형사 및 행정 조치를 보장하고, 조달 관련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보장함(협정 제11.18조).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소기업 우대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함. 아울러 가능한 수준에서 중소기업 정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고 모든 입찰서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협

정 제11.21조).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위하여 조달예정 공고, 조달계획 공고 등을 공표할 때, 가능한 경우 영어를 사용함(협정 제11.2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 정부조달 챕터는 UAE가 GPA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GPA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됨. 기체결 FTA 정부조달 챕터 규정이 대부분 개정 GPA 규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UAE CEPA 정부조달 챕터는 조달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체결 FTA 정부조달 챕터와의 비교 >

<table>
<tr><th></th><th>GPA
가입</th><th>비차별
대우</th><th>대응구매
금지</th><th>입찰절차</th><th>기술규격</th><th>기한</th><th colspan="2">시장개방</th></tr>
<tr><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BOT</th></tr>
<tr><td>UAE</td><td>X</td><td>O</td><td>O</td><td>O</td><td>O</td><td>최소 10일</td><td>O</td><td>X</td></tr>
<tr><td>칠레</td><td>X(옵)</td><td>O
(NT)</td><td>O</td><td>O
(舊 GPA)</td><td>O</td><td>최소 10일
(舊 GPA)</td><td>O</td><td>O</td></tr>
<tr><td rowspan="2">싱가포르</td><td rowspan="2">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 rowspan="2">O</td><td rowspan="2">X</td></tr>
<tr><td colspan="5">* 협정문상 별도 규정 없이 舊 GPA 준용</td></tr>
<tr><td rowspan="2">EFTA</td><td rowspan="2">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 colspan="7">* 협정문상 별도 규정이나 부속서 없이 舊 GPA 준용</td></tr>
<tr><td rowspan="2">EU</td><td rowspan="2">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 colspan="7">* 협정문상 별도 규정이나 부속서 없이 舊/개정 GPA 준용(BOT 포함 명시)</td></tr>
</table>

	GPA 가입	비차별 대우	대응구매 금지	입찰절차	기술규격	기한	시장개방	
								BOT
페루	X	O (NT)	O	O	O	최소 10일 (개정GPA)	O	O
미국	O	X	X	X	X	최소 10일 (개정GPA)	O	O
		* 舊/개정 GPA 준용(중앙정부에 관한 추가 시장개방 부속서 별도 마련)						
호주	O	O (NT)	O	O	O	최소 10일 (개정GPA)	O	O
캐나다	O	X	X	X	X	X	O	O
		* 개정 GPA 준용(중앙정부에 관한 추가 시장개방 부속서 별도 마련)						
뉴질랜드	O	O	O	O	O	최소 10일 (개정GPA)	O	O
콜롬비아	X(옵)	O	O	O	O	최소 10일 (개정GPA)	O	O
중미	△	O	O	O	O	최소 10일 (개정GPA)	O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이번 한-UAE CEPA의 정부조달 챕터는 WTO GPA 비회원국인 UAE와 양자적인 차원의 정부조달 협정을 개정 GP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특히 동 챕터에서는 조달예정 공고, 조달계획 공고 등 조달 공고를 공표할 경우 가능한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1.23조). 이는 요약공고[50]를 WT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공표할 의무

50) 요약공고(Summary Notice/Announcement) :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은 원본 공고문(입찰, 채용, 법적 절차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문서

외에 언어 관련 규정이 없는 개정 GPA 대비 강화된 규정으로 평가됨.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시 언어 장벽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보고됨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은 우리 기업의 UAE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입찰 서류의 무료 이용, 조달 관련 정보의 단일 전자 포털 공표, 전자적 수단을 통한 조달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협정 제11.21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찰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입찰 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정부조달 양허표 (협정 부속서 11-가)

1) 부속서의 내용

부속서 11-가에서는 동 챕터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상품, 서비스 및 기타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양 당사국의 조달예정 공고 등 조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기재함.

2) 기체결 FTA와 비교

한-UAE CEPA는 UAE측이 DPP 활용 연방기관(27개)만 양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양측 중앙정부기관만을 개방하고, 추후 DPP 활용 기관이 추가될 경우 조달 챕터가 자동 적용되도록 합의함.

양측 모두 기체결 수준의 기준금액에 합의하고, 우리측은 개정 GPA와 동일한 기준금액을 채택함.

<WTO GPA 및 기체결 FTA 정부조달 챕터 기준금액 비교>

(단위: 별도 표기가 없는 한 SDR)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중앙정부기관</th><th colspan="3">지방정부기관</th><th colspan="3">기타기관(공기업)</th></tr>
<tr><th>상품</th><th>서비스</th><th>건설</th><th>상품</th><th>서비스</th><th>건설</th><th>상품</th><th>서비스</th><th>건설</th></tr>
<tr><td colspan="2" rowspan="2">개정 GPA
(한국)</td><td>13만
(2.3억원)</td><td>13만
(2.3억원)</td><td>500만
(88억원)</td><td>20/40만
(3.5/7.1억)</td><td>20/40만
(3.5/7.1억)</td><td>1,500만
(265억원)</td><td>40만
(7.1억원)</td><td>40만
(7.1억원)</td><td>1,500만
(265억원)</td></tr>
<tr><td colspan="3">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td><td colspan="3">모든 광역 자치단체(시·도),
서울·부산·인천시 소속
기초자치단체(군·구)</td><td colspan="3">산업은행, 기업은행,
조폐공사, 전력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24개 기관
양허</td></tr>
<tr><td rowspan="2">UAE</td><td>한국</td><td>13만</td><td>13만</td><td>500만</td><td colspan="6" rowspan="2">미양허</td></tr>
<tr><td>UAE</td><td>13.4만</td><td>13.4만</td><td>584.4만</td></tr>
<tr><td rowspan="2">칠레</td><td>한국</td><td>5만</td><td>5만</td><td>500만</td><td>20만</td><td>20만</td><td>1,500만</td><td>45만</td><td>미양허</td><td>1,500만</td></tr>
<tr><td>칠레</td><td>5만</td><td>5만</td><td>500만</td><td>5만*</td><td>5만</td><td>500만</td><td>45만</td><td>미양허</td><td>1,500만</td></tr>
<tr><td rowspan="2">싱가포르</td><td>한국</td><td>10만</td><td>10만</td><td>500만</td><td>20만</td><td>20만</td><td>1,500만</td><td>40만</td><td>미양허</td><td>1,500만</td></tr>
<tr><td>싱</td><td>10만</td><td>10만</td><td>500만</td><td colspan="3">미양허(지방정부 없음)</td><td>40만</td><td>40만</td><td>500만</td></tr>
<tr><td colspan="2">EFTA</td><td colspan="9">개정 GPA 양허 수준과 동일</td></tr>
<tr><td rowspan="2">미국</td><td>한국</td><td>1억원</td><td>1억원</td><td>500만</td><td colspan="6" rowspan="2">미양허</td></tr>
<tr><td>미국</td><td>10만$</td><td>10만$</td><td>500만</td></tr>
<tr><td colspan="2">EU</td><td colspan="9">개정 GPA 양허 수준과 동일</td></tr>
</table>

구 분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페루	한국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페루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콜롬비아	한국	7만	7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콜롬	7만	7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호주	한국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호주	13만	13만	500만	35.5만	35.5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캐나다	한국	1억원	1억원	500만	미양허					
	캐나	10만C$	10만C$	500만						
뉴질랜드	한국	13만	13만	500만	미양허					
	뉴질	13만	13만	500만						
중미	한국	13만	13만	500만	20/40만	20/4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코스	13만	13만	500만	35.5만	35.5만	1,500만	20만/40만	20만/40만	1,500만
	엘살	26만(3년) →13만	26만(3년) →13만	595만(3년) →500만	48.2만 (3년) →35.5만	48.2만 (3년) →35.5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온두	13만	13만	500만	40만	4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니카	26만(3년) →13만	26만(3년) →13만	600만(3년) →500만	미양허			27.4/55만 (3년) →20/40만	27.4/55만 (3년) →20/40	1,800만 (3년) →1,500만
	파나	13만	13만	500만	40만	4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영국		개정 GPA 양허 수준과 동일								
이스라엘		개정 GPA 양허 수준과 동일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GPA 비회원국인 UAE와 양측 기체결 수준으로 상호 중앙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UAE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제12장 투자 원활화 협력

1. 개 요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은 2002년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제2조제1항[51]의 후속조치로서, 양 당사국 간 투자 증진 및 원활한 협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2. 협정문의 구성

협정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은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은 목적(제12.1조), 협력활동(제12.2조) 투자원활화위원회(제12.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제12.4조) 등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정부는 UAE측이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양측은 투자 증진 및 원활화를 위한 협력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 없이 합의한 것으로 설명함.

5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2.1조 **목적**	**Article 12.1** **Objectives**
양 당사국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증진하려는 자국의 희망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2002년 6월 9일 아부다비에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제2조제1항 및 그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합치되게 투자를 장려하고 원활화하며 양 당사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The Parties affirm their desire to promote an attractive investment climate. Consistent with Article 2.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done at Abu Dhabi, on 9 June 2002,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the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investment and to secur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rties.
제12.2조 **협력 활동**	**Article 12.2** **Cooperation Activities**
양 당사국은 투자 활동을 증진하고 원활화하는 데 협력한다.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promoting and facilitating investment activities. Cooperation on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include the following:
가.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에 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	(a) to promote and enhance the economic cooperation on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the Parties;
나. 투자 관계를 점검하고, 투자 확대 기회를 확인하며, 적절한 포럼에서 협상에 적절할 수 있는 투자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것	(b) to monitor investment relations,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expand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issues relevant to investment that may be appropriate for negotiation in an appropriate forum;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투자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는 것	(c) to hold consultations on specific investment matters of interest to the Parties;
라. 투자 흐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d) to work toward the enhancement of investment flows;
마. 투자 흐름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또는	(e) to identify and work toward the removal of impediments to investment flows; or
바. 적절한 경우, 투자원활화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간 부문의 의견을 구하는 것	(f) to seek the views of the private sector, where appropriate, on matters related to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Investment Facilitation. Parties
제12.3조 **투자원활화위원회**	**Article 12.3** **Committee on Investment Facilitation**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원활화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아랍에미리트 재무부 대표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Committee on Investment Facilitation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Chapter), which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he Committee shall be co-chai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UAE. The Committee may establish working groups as the Parties deem necessary.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하되, 양 당사국은 최소 연 1회 회합하도록 노력한다. 한쪽 당사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함으로써 특정한 투자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요청 당사국이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이 전달된 후 신속하게 그 사안을 논의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 위원회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nd venues as agreed by the Parties, but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meet at least once a year. A Party may refer a specific investment matter to the Committee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at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atter concerned. The Committee shall take up the matter promptly after the request is delivered unless the requesting Party agrees to postpone discussion of the matter.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Committee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discuss a matter before taking action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investme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제12.4조 제15장(분쟁해결)의 비적용	**Article 12.4 Non-application of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양 당사국 간 투자 확대 기회 모색, 투자 장애요인의 식별 및 해소 노력 등 투자활동 증진 및 원활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규정함(협정 제12.2조).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원활화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 특정 투자사안 논의, 다른쪽 당사국의 투자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사전 논의 등 역할을 수행함(협정 제12.3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 투자 원활화 협력을 위하여 별도로 챕터를 구성한 사례는 없으며, 한-아세안 및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일부 기체결 FTA에서 협력 챕터에서 협력분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동 챕터는 투자 확대 도모, 투자 장애요인 식별 및 해소 등 양국 간 투자원활화 협력활동을 규정하고, 그 협력활동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원활화위원회 설립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양국 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챕터 상 투자원활화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제13장 경제 협력

1. 개 요

양 당사국은 무역·투자 및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한-UAE CEPA의 이행 및 활용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활동을 규정함.

2. 협정문의 구성

경제 및 기술 협력 챕터는 9개 조문과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목적(제13.1조), 적용 범위(제13.2조),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 프로그램(제13.3조), 공급망(제13.4조), 경쟁정책(제13.5조), 자원(제13.6조), 협력 수단(제13.7조), 경제협력위원회(제13.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제13.9조) 등 세부조항과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바이오 경제 등 5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협력활동 및 협력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협력 수요를 토대로 협력 분야로 에너지·자원, 시청각 서비스 및 공동제작,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하고, 에너지·자원,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협력 범위 및 협력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부속서를 추가 제안하였음.

나. UAE 측 입장

UAE측은 협력 분야로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 · 무역, 귀금속, 순환경제 등을 제안하였으며, 우리측이 제안한 협력 분야 중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협력은 자국이 체결한 CEPA에 포함된 분야가 아니어서 UAE 내 토후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다. 협상 결과

양측은 협력 분야가 다양하여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UAE측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자국의 기체결 CEPA 최초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협력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동 협정문 합의에 도달하였음.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 적용범위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3.1조 **목적**	**Article 13.1** **Objectives**
1. 양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for their mutual benefit in order to liberalize and facilitat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m and foster economic growth.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이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무역 및 투자 원활화 계획을 지원하며 양 당사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성과 개방성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한다.	2.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be built upon a common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with the objective of maximizing its benefits, supporting pathways to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further improving market access and opennes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Parties.
제13.2조 **범위**	**Article 13.2** **Scope**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	1.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suppor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this Agreement through activities that relate to trade and investment.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다음의 분야에 집중한다.	2.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initially focus on the following area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에너지 및 자원	(a) energy and resources;
나. 선진산업	(b) advanced industry;
다. 순환경제	(c) circular economy;
라. 시청각 서비스와 공동제작	(d) audiovisual services and co-production;
마.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e)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바. 보건의료 산업	(f) healthcare industry;
사. 관광	(g) tourism;
아. 운송	(h) transport;
자. 해운과 해양	(i) shipping and maritime;
차. 디지털 경제/무역	(j) digital economy/trade;
카. 귀금속	(k) precious metals;
타. 공급망	(l) supply chain;
파. 경쟁	(m) competition;
하. 바이오경제, 그리고	(n) bioeconomy; and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o) any other area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3.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그 밖의 분야의 추가를 포함하여 위의 목록을 수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The Parties may agree in the Annual Work Program on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to modify the above list, including by adding other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4. 부속서 13-가부터 13-마까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Annexes 13-A through 13-E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hapter.
제13.3조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	**Article 13.3** **Annual Work Program on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1. 경제협력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1. The 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 shall adopt an Annual Work Program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연례작업프로그램(이하 “연례작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채택한다.	on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nual Work Program”) based on proposals submitted by the Parties.
2. 이 장에 따라 개발된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각 활동은	2. Each activity in the Annual Work Program developed under this Chapter shall:
가. 제13.1조에서 합의된 목적에 따른다.	(a)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greed in Article 13.1;
나. 무역 또는 투자 원활화와 관련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한다.	(b) be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facilitation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다. 양 당사국에 관련된다.	(c) involve both Parties;
라. 양 당사국의 상호 우선순위를 다룬다. 그리고	(d) address the mutual priorities of the Parties; and
마.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의 중복을 피한다.	(e) avoid duplicating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제13.4조 **공급망**	**Article 13.4** **Supply Chain**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need to ensure secur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and to minimize disruptions and vulnerabilities, which may require improving coordin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s.
2. 양 당사국은 충격을 예측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거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고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공급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2. To achieve the goal of resilient supply chains that can anticipate, withstand, or rapidly recover from shock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conomies, the Parties intend to undertake relevant activiti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diversification, security, and sustainability, while being in full observance of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3.5조 **경쟁정책**	**Article 13.5** **Competition Policy**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법, 규정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경쟁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러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ree and undistorted competition in their trade relations. The Parties may cooperate to exchang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available resources. The Parties may conduct such cooperation through their competent authorities.
2.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과 그것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경쟁법과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집행하는 자율성과 무관하다.	2. The Parties may consult on matters related to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their adverse effects to trade. The consult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autonomy of each Party to develop, maintain, and enforce its domestic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제13.6조 **자원**	**Article 13.6** **Resources**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1. Resources for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be provided in a manner as agreed by the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2. 양 당사국은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당사국과의 협력 및 비당사국의 기여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	2.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may consider cooperation with, and contributions from, non-Part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nnual Work Program.
제13.7조 **협력 수단**	**Article 13.7** **Means of Cooperation**
양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을 통하여 기술적, 과학기술적 및 과학적 경제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encourage technical,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following mea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및 지원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주최	(a) joint organization of conferences, seminars, workshops, meetings, training sessions, and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나. 전문 훈련을 위한 연구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문 및 정부기관의 대표단, 전문 직업인,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b) exchanges of delegations, professionals, technicians, and specialists from the academic sector, institutions dedicated to research,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al agencies, including study visits and internship programs for professional training;
다. 무역 진흥에 관련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과 기관 간의 대화 및 경험 교환	(c) dialogue and exchange of experiences between the Parties' private sectors and agencies involved in trade promotion;
라.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경험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개발 및 현대화 분야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공유플랫폼의 개시	(d) initiation of the knowledge-sharing platform aiming to transfer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government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o other countries through UAE's Govern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마. 양 당사국 기업가 간의 공동 사업 이니셔티브 증진, 그리고	(e) promotion of joint business initiatives between entrepreneurs of the Parties; and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f) any other form of cooperation that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제13.8조 **경제협력위원회**	**Article 13.8** **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For purposes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2.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The Committee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func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a) monitor and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나. 장래의 협력 또는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발상에 합의한다.	(b) identify new opportunities and agree on new ideas for prospective cooperation or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다. 연례작업프로그램 제안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고 개발한다.	(c) formulate and develop Annual Work Program proposals and their implementation mechanisms;
라.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조정, 점검 및 검토한다.	(d) coordinate, monitor, and review progress of the Annual Work Program to assess its overall effectiveness an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개정을 제안한다.	(e) suggest amendments to the Annual Work Program through periodic evaluations;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상황 파악, 점검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또는 부속기구와 협력한다. 그리고	(f) cooperate with other committees or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to perform stocktaking, monitoring, and benchmarking on any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s well as to provide feedback and assistance in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and
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동위원회와 협의한다.	(g) report to and, if deemed necessary, consult with the Joint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3.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정된다.	3. The Committee shall be coordinated by: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a)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its successor; and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b) in the case of the UAE, the Ministry of Economy, or its success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그 승계기관 **제13.9조** **제15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Article 13.9** **Non- application of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양국은 협정의 효과적 · 효율적 이행 및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초기 중점 협력 분야로서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와 공동제작,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산업, 관광, 운송, 해운과 해양, 디지털 경제,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 경제 등을 규정함(협정 제13.2조).

경제협력위원회는 연례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양국 공동 관심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무역 · 투자 원활화및 협정 이행을 지원하도록 함(협정 제13.3조).

양국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공급망 교란과 취약성의 최소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경쟁정책 관련 정보 교환 및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협정 제13.4조, 제13.5조).

자원 제공은 각국 법 · 규정에 따라 합의된 방식에 따르며, 제3국과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고, 협력 수단으로 컨퍼런스 · 세미나 · 훈련 공동 개최, 전문가 · 연구자 · 정부 · 민간 교류, 민간 부문 간 대화 및 경험 공유 등을 규정함(협정 제13.6조, 제13.7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ASEAN, RCEP 등 우리의 다수 기체결 FTA에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 챕터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분야를 별도 챕터로 반영하는 추세임.

FTA	협력 분야
한-UAE CEPA	①에너지 · 자원, ②첨단산업, ③순환경제, ④시청각서비스 · 공동제작, ⑤스마트팜, ⑥보건산업, ⑦관광, ⑧수송, ⑨해상운송, ⑩디지털경제 · 무역, ⑪귀금속, ⑫공급망, ⑬경쟁, ⑭바이오경제
한-인도 CEPA	①무역 및 투자진흥, ②에너지, ③정보통신기술, ④과학기술, ⑤중소기업, ⑥인프라 및 수송, ⑦시청각 콘텐츠, ⑧섬유 및 가죽, ⑨제약, ⑩관광, ⑪보건의료, ⑫정부조달, ⑬재생에너지자원
한-ASEAN FTA	①통관절차, ②무역·투자 진흥, ③중소기업, ④인적자원 관리·개발, ⑤관광, ⑥과학·기술, ⑦금융서비스, ⑧정보통신기술, ⑨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⑩지식 재산, ⑪환경산업, ⑫방송, ⑬건설 기술, ⑭표준 및 적합성 판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⑮광업, ⑯에너지, ⑰천연자원, ⑱조선 및 해상 운송, ⑲영화
RCEP	①상품무역, ②서비스무역, ③투자, ④지식재산, ⑤전자상거래, ⑥경쟁, ⑦중소기업
한-캄보디아 FTA	①무역·투자 증진, ②농·수산·임업, ③전자상거래, ④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⑤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⑥무역·투자 관련 법적 틀, ⑦사회기반시설 개발, ⑧산업 발전, ⑨정보통신기술, ⑩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한 협력
한-인도네시아 CEPA	①산업, ②농·수산·임업, ③무역규칙·절차, ④자연인의 이동, ⑤중소기업 지원정책, ⑥통계, ⑦공정경쟁, ⑧사회기반시설, ⑨투자, ⑩과학·기술·혁신, ⑪문화, ⑫에너지·광물자원, ⑬보건의료, ⑭환경, ⑮건설서비스
한-필리핀 FTA	①COVID-19 대응, ②백신, ③기후변화, ④헬스케어, ⑤희소금속 가공, ⑥혁신생태계, ⑦전기차, ⑧농·수산·임업, ⑨녹색성장, ⑩문화산업, ⑪영화, ⑫표준, ⑬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⑭지식재산권, ⑮전자상거래, ⑯소상공인, ⑰소상공인·중소기업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야별 부속서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13-가 **에너지 및 자원**	**Annex 13-A** **Energy and Resources**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as a means of building a stronger, more s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in the field of energy and resources.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의 증진이 양국의 공동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2. The Parties agree that their joint objective shall be to foster cooperation across the entire energy supply cha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업스트림 활동	(a) upstream activities such as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나. 석유의 정제, 석유화학물질의 처리, 가스의 액화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다운스트림 및 미드스트림 활동, 그리고	(b) downstream and midstream activities such as the refining of oil, processing of petrochemicals, liquefaction of gas, and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crude oil and oil products; and
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응용 및 충전소	(c) hydrogen produ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pplications, and fueling stations.
3. 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Areas of energy and resources cooperation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가.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를 포함한다) 및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a)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natural gas, sustainable hydrocarbon energy (including CCUS and hydrogen), and bioenergy;
나.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b) design and development of mechanisms that allow an efficient use and administration of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및 개발, 그리고	territories of the Parties related to energy and resources; and
다. 환경 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c) 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with low environmental impact.
부속서 13-나 **선진산업**	**Annex 13-B** **Advanced Industry**
1. 양 당사국은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on advanced industry with the purpose of enhancing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stability, and prosperity that are grounded i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2. 선진산업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Areas of advanced industry cooperat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가.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그리고	(a) advanced manufacturing, such as smart machinery and autonomous manufacturing; and
나.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기술	(b) advance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biotechnology.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3. The Parties shall foster cooperation on advanced industry through:
가.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정부 간(G2G) 협업 증진 및 제3국(다자간 G2G)으로의 협력 증대	(a) implementing collaborative projects, strengthening business-to-business(B2B) and business-to-government(B2G) ties, promoting government-to-government(G2G) collaboration, and scaling cooperation into third countries (multilateral G2G);
나. 공동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제공, 그리고	(b) joint R&D and joint establishment of start-ups or joint venture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funding for such projects; and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선진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c)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on advanced industry as agreed by the Parti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13-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Annex 13-C**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동의 비전으로 인정하며,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1. Recognizing sustainable farming as a shared vision,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as a means of building a stronger, more s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in the field of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2.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2.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facilitate, and promote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areas:
가.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의 경험, 정보, 우수 관행, 혁신 및 현대 기술의 교환	(a) exchange of experiences, information, best practices, innovation, and modern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나. 소규모 농장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기술을 강조하는,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b) research to find innovativ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related to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that emphasizes economically beneficial technologies for smallholder farms;
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회 및 투자 증대	(c) enhancement of opportunities and investment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private sectors in the field of smart farming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라. 양 당사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d) joint arrangement of project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to the Parties; and
마.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e)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that may be jointly decided upon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s
부속서 13-라	**Annex 13-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보건의료 산업	**Healthcare Industry**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 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1. Both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s of each country.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2. Areas of healthcare industry cooperat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b) medical and pharmaceutical policy and management; (c) hospital healthcare; (d) digital healthcare; and (e) new technologies in healthcare and medical equipment.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양 당사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 한쪽 당사국의 의료 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라.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3. The Parties shall foster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through: (a) personnel training in the fields of healthcare and medical and pharmaceutical science; (b) improving access to the healthcare services of the Parties; (c) promotion of medical institutions of one Party in the other Party; and (d) cooperation on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promoting the healthcare industry.
부속서 13-마 **바이오 경제**	**Annex 13-E** **Bioeconomy**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For purposes of this Annex: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바이오경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바이오기기 그리고 바이오자원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The bioeconomy sector may include biopharmaceuticals, biochemical and bioenergy, bioenvironmental, biomedical equipment, bioinstrument and bioequipment, and bioresource sectors.
제1절: 혁신에 대한 협력	**Section A: Cooperation on Innovation**
2.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 당사국 간 기술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은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2.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the bioeconomy sectors and shall cooperate to create an innovation ecosystem to encourage and promote technical innovation between the Parties. Cooperation to create an innovation ecosystem may include the following areas: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특정 분야를 지정	(a) designation of a specific area agreed upon by the Parties;
나. 연구소, 기업 및 투자자 간의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 양 당사국은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포함한 중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최소 연 2회 개최될 것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b) actively supporting match-making between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s, and investors. The Parties shall organize match-making events, including business forums and business roundtables. These events wi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will encourage participants to exchange information, discuss ideas, and develop collaborative relationships to enable innovation; and
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이행할 양 당사국의 연구소 및 기업을 지정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산출물의 소유 및 활용은 양 당사국과 프로젝트 이행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c) designing joint research projects, designating the research institutes and enterprises of the Parties to implement the projects, and provid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projects, as available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y policies.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developed technologies and outputs through the projects shall be determined by prio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roject implementers.
3. 양 당사국은 제2항에 규정된 분야 및	3.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이오경제전담반을 설치한다. 전담반은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이 절의 제2항가호에 규정된 협력 분야의 지정이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전담반은 또한 이 절의 제2항나호에 규정된 그 밖의 분야가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Bioeconomy Task Force comprising officials of each Party to carry out the areas set out in paragraph 2 and any other activities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Task Force shall hold regular meetings at least once a year to review progress, exchange ideas, and plan future activities. The Task Force shall make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designation of areas for cooperation as set out in paragraph 2(a) of this Section is initiated prompt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Task Force shall also make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other areas set out in paragraph 2(b) of this Section are initiated prompt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4.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대표 및 연구 전문가들의 개방형 혁신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는 개방형 혁신의 구성 및 기능, 그 이점 및 그러한 모델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전파를 포함할 것이다.	4. Both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open innovation models by relevant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research professionals. This will include the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open innovation, its advantages, and the necessary regulatory framework to encourage such models.
제2절: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Section B: Cooperation on Supply Chain Resilience**
정의	*Definitions*
5. 이 절의 목적상,	5.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바이오공급망이란 양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제 · 상업 · 무역 관계를 말한다.	**Bio Supply Chains** means the economic, commercial, and trad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enterprises in the bioeconomy sector of the Parties.
공급망 교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	**Supply Chain Disruptions** includes severe interruptions, delays, or shortages tha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a) impact either Party; and
나.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해한다.	(b) significantly impair cross-border movement of, or access to, materials, articles, or commodities.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Cooperation on Supply Chain Resilience*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바이오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6.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minimize unnecessary, arbitrary, and unjustifiable restrictions or impediments affecting Bio Supply Chains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share relevant information if requested.
7. 조치의 개발 · 채택 · 적용 시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7. In developing, adopting, and applying a measur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nsider the effect of measures on Bio Supply Chains.
8.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수입 의존도, 가격 및 교역량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 및 수요 변화를 점검하도록 노력한다.	8. Both Parties shall endeavor to monitor import dependencies, prices and trade volumes, and changes of global supply and demand where appropriate and feasible to assess Bio Supply Chains vulnerabilities.
9. 양 당사국은 원재료 수요, 수요 예상치, 제조 및 가공 능력에 관하여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대한 시장 집중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원의 다변화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9. Both Parties shall endeavor to promote diversification of sources where market concentration exists for the sector or good regarding raw material needs, demand expectations,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apacities.
10. 양 당사국은 어떠한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이 바이오경제에 필수적인지 공동으로 결정하고, 각국의 영역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품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자국의 저장 용량의 최적화 및 향상을 증진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0. Both Parties shall jointly determine which materials, articles, or commodities are essential for the bioeconomy, and shall endeavor to assess storage capacities o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for such products.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promot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이용 가능한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the optimization and enhancement of its storage capacities for such products and assess available capacity as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practicable.
공급망 교란 시 협력	*Cooperation in Times of Supply Chain Disruptions*
11. 양 당사국은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operate to respond promptly to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support each other to recover from Supply Chain Disruptions.
12.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12. Upon request of a Party experiencing Supply Chain Disruption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요청 접수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한다.	(a) establish a Working Group comprising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and meet either in-person or virtually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from the receipt of a request;
나.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하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망 교란의 원인, 공급망 교란의 예상 지속기간 및 도움이 될 다른 쪽 당사국의 지원과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b) share information on the sector or product experiencing Supply Chain Disrup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fected sector or product"), such as the cause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the expected duration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assistance that would be helpful from the other Party; and
다.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화, 필요한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용의가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양 당사국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그 밖의 조치나 정책과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나 정책을 논의한다.	(c) discuss measures or policies to respond to Supply Chain Disruptions such as expediting customs procedures for the affected sector or product, providing information on enterprises willing to export the necessary product, and other measures or policies that both Parties consider helpful.
13.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 동안 바이오공	13. If a Party imposes measures tha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이 협정, WTO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한다. 그러한 조치나 정책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may significantly affect Bio Supply Chains during a Supply Chain Disruption, those measures shall b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temporary, and in conformance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WTO Agreement,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 Party which has imposed or maintained such measures or policies shall endeavor to: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시의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보장한다.	(a) ensure the timely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all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되며 이메일, 영상 또는 전화 회의나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b)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undertake consultations regarding the measure. These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and may be held by e-mail, video or telephone conference, or any mean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다. 그러한 협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c) undertake any steps as may be agreed in such consultations.
제3절: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	**Section C: Capacity Building and Professional Personnel Exchanges in the Bioeconomy Sector**
1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 특히 집중하여, 바이오경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요 기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 개발에 협업한다.	14.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develop and operate demand-based workforce training progra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bioeconomy industry, with a specific focus on areas as agre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o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curricula, methodologies, and materials, leveraging each Party's know-how and expertise.
15.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부 공무원 간 정보 및 지식 교환의 증진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15.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develop and operate training programs for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and to promote exchanges of informatio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분야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and knowledge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in the bioeconomy sector.
16. 양 당사국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의 우수 관행과 경험을 공유한다.	16.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strategies related to capacity building and professional personnel exchanges in the bio industry and share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s.

양국은 석유 · 가스 업스트림에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 주기 협력, 재생·대체에너지 협력,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규정함(협정 부속서 13-가).

또한 AI, IT, 바이오, 스마트 제조 등 첨단기술에서 합작사업, 공동 R&D, 스타트업·투자 협력을 규정함(협정 부속서 13-나).

양국은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관련 기술·정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규모 농가 중심 혁신 연구, 민간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협정 부속서 13-다).

양국은 보건의료 산업 관련 공중 보건, 의료·제약 정책, 디지털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인력 양성, 의료 접근성 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홍보 및 투자 협력을 증진함(협정 부속서 13-라).

양국은 바이오의약, 화학, 에너지, 환경, 의료기기, 장비 등 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 또한 바이오 공급망 복원 및 교란

대응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를 증진함(협정 부속서 13-마).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아세안 FT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등에서는 경제협력 챕터 내 개별 분야 협력에 대한 부속서를 도입하였음.

5. 검토의견

5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양국의 협력 분야를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산업 협력 중심에서 에너지·자원·바이오·공급망 등으로 확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제14장 중소기업

1. 개 요

제14장(중소기업)은 각 당사국 내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을 규정함.

2. 협정문의 구성

협정 제14장(중소기업)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은 일반원칙(제14.1조),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제14.2조) 정보공유(제14.3조), 중소기업문제위원회(제14.4조), 분쟁해결 비적용(제14.5조) 등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가.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양국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UAE측이 제안한 협정문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중소기업문제 위원회 개최 방식을 대면 또는 비대면 중 선택 가능하도록 대체문안을 제안하였음.

나. UAE 측 입장

UAE측은 경제 다변화 및 비석유 부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혁신형 스타트업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며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장(章) 마련을 먼저 제안함. 양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무역·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였음.

다. 협상 결과

양측은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무역 절차, 행정적 장벽 등을 완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뿐 아니라 정부간 협력, 정보 공유 및 역량 구축을 위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장(章) 문안에 합의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4.1조 일반원칙	**Article 14.1 General Principl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양 당사국은 각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 증진에 협력한다.	1. The Parties,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respective economies, shall foster close cooperation between SMEs of the Parties and cooperate in promoting jobs and growth in SMEs.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이행될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The Parties recognize the integral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ME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under this Chapter.
제14.2조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Article 14.2** **Cooperation to Increas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MEs**
중소기업의 상업적 기회를 향상하기 위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 및 투자 기회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다음을 한다.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enhance commercial opportunities for SMEs, each Party shall seek to increas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in particular shall:
가. 우수 관행 공유, 시장 조사 교류 및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와 현지 시장에서의 사업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센터,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수출지원센터 그리고 적절한 그 밖의 센터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소기업 지원 인프라 간 협력을 증진한다.	(a)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mall business sup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dedicated SME center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export assistance centers, and other centers as appropriate, to create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sharing best practices, exchanging market research, and promoting SM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business growth in local markets;
나. 여성 및 청년이 소유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그러한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와 그들의 국제 무역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b)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Party on activities to promote SMEs owned by women and youth, as well as start-ups, and promote partnerships among these SM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다.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개선, 적용대상정부조달 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및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 지원 등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c)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the other Part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including on improving SME access to capital and credit, SME participation in covered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and helping SMEs adapt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and
라.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가 및 상담사가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목적으로 구축된 모바일 또는 웹 기반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	(d) encourage participation in purpose-built mobile or web-based platforms, for business entrepreneurs and counselors to shar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to help SMEs link with international suppliers, buyers, and other potential business partners.
제14.3조 **정보 공유**	**Article 14.3** **Information Sharing**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its own free, publicly accessible website containing information regarding this Agreement, including:
가. 이 협정의 문안	(a) the text of this Agreement;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b) a summary of this Agreement; and
다. 다음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c) information designed for SMEs that contains:
1)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i) a descrip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that the Party considers to be relevant to SMEs; and
2)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모든 추가적인 정보	(ii)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ould be useful for SMEs interested in benefitting from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is Agreement.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한 다음에 대한 링크 또	2. Each Party shall include in its website links or information through automated electronic transfer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무역, 투자 또는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a) the equivalent websites of the other Party; and (b) the websites of its own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appropriate enti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the Party considers useful to any person interested in trading, investing, or doing business in that Party's territory.
3.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2항 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지식재산, 영업비밀 및 특허보호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 다. 기술 규정, 표준 및 품질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라.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마. 외국인 투자 규정 바. 사업자 등록 사. 무역 진흥 프로그램 아. 경쟁력 프로그램 자.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조달 프로그램 차. 과세 및 회계 카.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타.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3. Subject to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b) may include: (a) customs regulations, procedures, or enquiry points; (b) regulations or procedur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trade secrets, and patent protection rights; (c)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quality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relating to importation or exportation; (e)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f) business registration; (g) rade promotion programs; (h) competitiveness programs; (i) SME investment and financing programs; (j) taxation and accounting; (k)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and (l) other information which the Party considers to be useful for SM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여기는 그 밖의 정보	
4.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Each Party shall regularly review the information and links on the websit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o ensure the information and links are up-to-date and accurate.
5.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조에 기술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정보가 이 협정의 다른 정본 언어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5.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make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this Article available in English. If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nother authentic language of this Agreement, the Party shall endeavor to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as appropriate.
제14.4조 **중소기업문제위원회**	**Article 14.4** **General PrinciplesCommittee on SME Issues**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중소기업문제위원회(이하 “중소기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Committee on SME Issu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ME Committee”), compris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2. 중소기업위원회는	2. The SME Committee shall:
가. 양 당사국 영역 내 중소기업이 이 협정에 따른 상업적 기회를 이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a) identify ways to assist SMEs in the Parties’ territories to take advantage of the commercial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 and to strengthen SME competitiveness;
나.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고 권고한다.	(b) identify and recommend ways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develop and enhance partnerships between SMEs of the Parties;
다.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훈련 프로그램, 무역 교육, 무역 금융, 무역 사절단,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에 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자를 지원하고 도우	(c) exchange and discuss each Party’s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ing and assisting SME exporters with respect to, among other things, training programs, trade education, trade finance, trad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며, 양 당사국 영역 내 상업적 파트너를 확인하고, 우수 비즈니스 인증을 확립하는 데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교환하고 논의한다.	missions,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establishing good business credentials;
라. 이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혜택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웨비나, 멘토링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증진한다.	(d) promote seminars, workshops, webinars, mentorship sessions, or other activities to inform SMEs of the benefits available to them under this Agreement;
마. 중소기업 수출 상담 · 지원 ·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향상에 대한 각 당사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회를 모색한다.	(e) explore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to facilitate each Party's work in developing and enhancing SME export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s;
바. 당사국이 제14.3조에 언급된 웹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권고한다.	(f) recommen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a Party may include on the website referred to in Article 14.3;
사. 작업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이 협정에 따른 무역 및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기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 기구의 작업과 함께 중소기업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g) review and coordinate its work program with the work of other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o avoid duplication of work programs and to identify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to improve the ability of SMEs to engage in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
아. 중소기업 관련 약속 및 활동을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의 작업에 고려하도록 그들과 협업하고 그들에게 장려한다.	(h) collaborate with and encourage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to consider SME-related commitments and activities into their work;
자. 이 장과 이 협정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향후 작업 및	(i)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and SME-related provisions within this Agreement and report finding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Joi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결과 보고 및 권고를 한다.	Committee that can be included in future work and SME assistance programs as appropriate;
차. 중소기업이 양 당사국의 지역 공급망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한다.	(j)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assist SMEs to participate and integrate effectively into the Parties' regional and global supply chains;
카. 이 협정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고 새로운 시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를 증진한다.	(k)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SMEs in digital tra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 and rapidly access new markets;
타. 양 당사국의 영역 내 창업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과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l)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s for youth and women to promote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파.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그리고	(m) submit on an annual basis,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a report of its activities and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the Joint Committee; and
하.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 중소기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n) conside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SMEs as the SME Committee may decide, including issues raised by SMEs regarding their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Agreement.
3. 중소기업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 발효일 후 1년 내에 소집하고 그 이후 매년 회합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3. The SME Committee shall convene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meet annually,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Meetings may be held in person or virtually, as the Parties may decide.
4. 중소기업위원회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 시, 적절한 전문가 및 국제공	4. The SME Committee may seek to collaborate with appropriate experts and international donor organiz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여기관과의 협업을 추구할 수 있다. **제14.5조** **제15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in carrying out its programs and activities. **Article 14.5** **Non-Application of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Fifteen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중소기업이 경제성장, 경쟁력,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임을 공동 인식하며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및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함(협정 제14.1조)

중소기업의 국제 진출과 상업적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 인프라 협력, 여성·청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접근성 개선, 네트워킹 및 플랫폼 활용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함(협정 제14.2조).

각국은 중소기업 친화적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유지하며 중소기업 관련 협정 규정 설명, 협정 활용에 필요한 실무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며 가능한 한 영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협정 제14.3조).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문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세미나·워크숍·멘토링 등 인식 제고 활동

등 활동을 추진함(협정 제14.4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아세안 FTA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는 주로 중소기업간 협력 및 교역 촉진을 통해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조항을 협력장(章)에 포함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다자협정인 RCEP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별도 장(章)으로 구성한 적은 있었으나, 중소기업 분야를 별도 장(章)으로 구성한 양자 FTA는 동 협정이 최초임.

3. 검토 의견

제14장(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내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와 시장 접근 지원 등 협력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제15장 분쟁해결

1. 개 요

“분쟁해결”은 협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FTA 협정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와 해당 FTA상의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된 분쟁해결절차 이외 다른 분쟁해결절차는 배제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제15장(분쟁해결)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총 30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동 장은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 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및 구성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정문은 분쟁해결의 목적(제15.1조), 협력(제15.2조), 적용범위(제15.3조), 연락처(제15.4조), 정보요청(제15.5조), 협의(제15.6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제15.7조), 패널의 설치(제15.8조), 패널의 구성(제15.9조), 최종보고서 이행(제15.20조), 준수 검토(제15.22조),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15.23조),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검토(제15.24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제15.25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제15.26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15장 (분쟁해결) 세부조항 >

1	목적	6	협의	11	패널위원의 요건	16	패널 절차	21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	26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2	협력	7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2	패널위원의 교체	17	정보의 접수	22	준수 검토	27	비용
3	적용범위	8	패널의 설치	13	패널의 기능	18	잠정보고서	23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	28	상호합의된 해결
4	연락처	9	패널의 구성	14	위임사항	19	최종 보고서	24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검토	29	기간
5	정보요청	10	긴급 결정	15	해석 규칙	20	최종보고서의 이행	25	절차의 정지 및 종료	30	부속서

※ 부속서 15-가. 패널 절차 규칙, 부속서 15-나. 패널위원 및 이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하는 그 밖의 인에 대한 행동 규범

또한, 부속서 15-가(패널 절차 규칙) 및 부속서 15-나(패널위원 및 이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하는 그 밖의 인에 대한 행동규범)를 통하여 패널 구성원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절차의 세부 운영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정부는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한 협상은 기술적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설명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적용범위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3조 **적용범위**	**Article 15.3** **Scope of Application**
1. 제15.3조제2항 및 제15.3조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이하 "대상 규정" 이라 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15.3.2 and 15.3.3, this Chapter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ered provisions"), wherever a Party considers that: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a)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b) the other Party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2. 이 장은 비위반제소와 그 밖의 상황제소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This Chapter shall not cover non-violation complaints and other situation complaints.
3. 양 당사국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다음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 제13장(경제협력) 및 제14장(중소기업)	3. The Parties agree tha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Chapter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e following Chapters of this Agreement: Chapter Five(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hapter Twelve(Cooperation on Investment Facilitation), Chapter Thirteen(Economic Cooperation), and Chapter Fourteen(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한쪽 당사국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동 협정 제15장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협정 제15.3조).

다만,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 제13장(경제협력) 및 제14장(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음(협정 제15.3조).

아울러, 제15.3조에 따라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52] 및 기타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ts)[53]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기존의 한-인니 CEPA 및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UAE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RCEP	한-아세안	한-미국	WTO
비위반제소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허용	도입

※ 자료: 산업통상부

52)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 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3) 기타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ts) : 협정 위반이나 비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어떠한 사태의 존재로 혜택이 침해된 경우

3) 검토의견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협정 위반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쪽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상대국이 협정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감소하거나 침해된 경우 이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임.

한편,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ts)'[54]란, 특정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으나, 특정 상황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상대국의 기대 혜택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제소를 의미함. 즉, 비위반제소보다 더 넓은 상황적·환경적 요인을 근거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함.

제15.3조는 '비위반제소 및 그 밖의 상황제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협정상 명시적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UAE CEPA에서는 협정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이익 침해만을 근거로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는 정책 주권 침해 가능성, 기대 이익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55]

54) WTO GATT 1994의 불만유형에는 3가지가 있음. '위반제소', '비위반제소', '상황제소'(또는 상황불만)이 있음.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범위는 협정 위반만을 심리하는 다른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보다 범위가 더 넓음 (출처: WTO 홈페이지> 무역 주제> 분쟁> 분쟁해결시스템 교육모듈 : 챕터 4 > 4.2 GATT 1994의 불만유형 및 요구되는 주장, https://www.wto.org)

55) 비위반제소는 협정 위반이 없음에도, 기대이익 침해를 근거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외부 간섭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기대 이익의 존재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이 크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러한 논점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

따라서 동 협정은 분쟁해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한 의무 위반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소 가능성과 정책적 부담을 일정 부분 축소한 구조로 볼 수 있음.

한편, 제15.3조 제3항은 위생·식물위생조치, 투자원활화협력, 경제협력 및 중소기업 분야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해결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투자원활화협력, 경제협력 및 중소기업 분야는 협력적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 권리·의무 교환 구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위생·식물위생조치(SPS)[56] 분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SPS 협정(위생·검역협정)을 중심으로 이미 정교한 분쟁해결 체계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 보건·검역 정책의 높은 민감성과 과학적 판단의 전문성, 그리고 기술적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일반적인 운영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됨.

56) 1947년에 출범한 WTO GATT 체제에서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 즉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조치가 국제적으로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각국은 SPS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종종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간 분쟁 및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였음. 때문에 SPS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결국 WTO협정에서 별도로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적용에 관한 협정」(위생·검역협정, SPS협정이라고 약칭)이 체결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중임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농림해양수산 > 농업구조개선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나.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6조 **협의**	**Article 15.6** **Consultations**
1.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다는 목적으로 신의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solve any dispute referred to in Article 15.3 by entering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 the aim of reaching a mutually agreed solution.
2. 한쪽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그 사실적 근거 및 적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대상 규정을 명시한 법적 근거의 서술을 포함하여 요청의 사유를 적시한,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2. A Party shall seek consultations by means of a written request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the measure at issue and a description of its factual basis and the legal basis specifying the covered provisions that it considers applicable.
3.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한다.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shall reply to the request promptly, but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Consultations shall be hel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 consultations shall be deemed to be concluded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4. 부패성 상품 또는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15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Consultations on matters of urgency including those which concern perishable goods or where appropriate, seasonal goods or seasonal services, shall be held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 consultations shall be deemed to be concluded within those 15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5. 협의 중에,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During consultations each Party shall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o as to allow a complete examination of the measure at issue including how that measure is affecting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6.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공개한 모든 정보와 취한 입장을 포함하여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6. Consultations, including all information disclosed and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during consultation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in any further proceedings.
7.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7. Consultations may be held in person or by any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greed by the Partie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consultations, if held in person, shall take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8. 요청받은 당사국이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가 제15.6조제3항 또는 제15.6조제4항 각각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의를 구한 당사국은 제15.8조를 이용할 수 있다.	8. If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its receipt, or if consultations are not held within the timeframes laid down in Article 15.6.3 or 15.6.4 respectively, or if the Parties agree not to have consultations, or if consultations have been concluded and no mutually agreed solution has been reached, the Party that sought consultations may have recourse to Article 15.8.
제15.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Article 15.7**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다.	1. The Parties may at any time agree to enter into procedures for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They may begin at any time, and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any tim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특정 입장은 비밀이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2. Proceedings involving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nd the particular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in these proceeding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in any further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or any other proceedings before a forum selected by the Parties.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3. If the Parties agree, procedures for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may continue while the panel procedures proceed.

분쟁 발생 시, 협의는 서면 요청으로 개시되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60일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패성 상품 등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기한이 반으로 단축됨(협정 제15.6조).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국은 언제든지 주선·조정·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절차는 양 당사국의 합의로 개시될 수 있음. 또한 당사국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협정 제15.7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한-UAE CEPA는 한-인니 CEPA 및 기존의 FTA와 유사하게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분	한-UAE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RCEP	한-아세안	한-미국	WTO
협의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도입
협의 기간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60일 (긴급한 경우 30일)	60일 (긴급한 경우 20일)
공동위 회부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도입	도입	미도입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제15조.6조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신의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방식과 답변 기한, 개최 및 종결 시한 등 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부패성상품 또는 계절성상품 등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단축된 기한을 적용하며, 협의 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비밀 유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일정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 설치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5.7조는 양 당사국이 언제든지 주선·조정·중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절차는 합의에 따라 개시·종료되며 패널 절차와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절차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와 입장은 비밀로 유지되며, 향후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

패널 절차 개시에 앞서 협의 및 주선·조정·중개 등 외교적·우호적 해결 수단을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과 분쟁의 확대 방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엄격한 기한 설정과 절차의 비밀성 보장을 통해 효율성과 당사국 간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 점은 기존 FTA 분쟁해결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임.

다. 패널의 설치, 구성 및 운영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8조 **패널의 설치**	**Article 15.8**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f:
가. 피소 당사국이 제15.6조에 언급된 기한에 따른 협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a) the respondent Party does not reply to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ime frames referred in Article 15.6; or
나. 이 협정의 제15.6조제8항에 언급된 협의가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이나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과 관련하여 15일 내에 개최되지 않거나,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도	(b)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5.6.8 of this Agreement are not held within 30 days or 15 days in relation to urgent matters including those which concern perishable goods or wher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록 합의하거나 피소 당사국의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appropriate, seasonal goods or seasonal services, if the Parties agree not to have consultations, or fail to settle a dispute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respondent Party.
2. 패널 설치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되는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적시하고 제소의 사실적 근거와 그러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어떻게 불합치하는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2.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by means of a written request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identify the measure at issue and indicate the factual basis of the complaint and the legal basis specifying the relevant covered provisions in a manner sufficient to present how such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those provisions.
3. 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요청을 한 경우, 패널이 설치된다.	3. When a request is made by the complain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panel shall be established.
제15.9조 **패널의 구성**	**Article 15.9** **Composition of a Panel**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1.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a panel shall consist of three panelists.
2. 제15.8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 설치 요청부터 20일 내에, 각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제15.8조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부터 40일 내에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패널위원을 공동합의로 임명한다.	2. Within 20 days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2, each Party shall appoint a panelist. The Parties shall, by common agreement, appoint the third panelist, who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within 40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3.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20일의 기간 내에 WTO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3. If either Party fails to appoint a panelist within the period established in paragraph 2, the other Party, within a period of 20 days, may request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appoint the unappointed panelists within 20 days of that request.
4.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20일 내에 WTO 사무총장 자신이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의 양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국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4. If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notifies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at he or she is unavailable or does not appoint the unappointed panelist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the request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any Party to the dispute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o appoint the unappointed panelist within 20 days of that request.
5. 양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패널의장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내에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각 3명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의장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후보자 명부를 교환하는 기한의 만료부터 10일 내에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추첨에 의한 패널의장의 선정은 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5.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within the time period established in paragraph 2, they shall within the next 10 days, exchange their respective lists comprising three nominees each who shall not be nationals of either Party. The chairperson shall then be appointed by draw of lot from the lists within 10 days of the expiry of the time period during which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ir respective lists of nominees. The selection by lot of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shall be made by the Joint Committee.
6. 당사국이 제5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후보자 3명의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6. If a Party fails to submit its list of three nominees within the time period established in paragraph 5,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by draw of lot from the list submitted by the other Party.
7. 패널의 구성일은 3명의 선정된 패널위원 중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이다.	7. The date of composition of the panel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last of the three selected panelists is appointed.
제15.10조 **긴급결정**	**Article 15.10** **Decision on Urgency**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패널의 구성으로부터 15일 내에 분쟁이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긴급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다.	If a Party so requests, the panel shall give a preliminary ruling, within 15 days of its composition, determining whether the dispute concerns matters of urgency.
제15.11조 **패널 위원의 요건**	**Article 15.11** **Requirements for Panelists**
1. 각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무역 및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의 전문성을 입증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에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라. 부속서 15-나에 규정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그리고 마.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1. Each panelist shall: (a) have demonstrated expertise in law, international trade, and oth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b)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c)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not take instructions from any organization or government with regard to matters related to the dispute; (d)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established in Annex 15-B; and (e) be chosen strictly on the basis of objectivity, reliability, and sound judgment.
2. 패널의장은 또한 분쟁해결 절차에 경험이 있다.	2. The chairperson shall also have experience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3.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15.7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한 인은 그 사안에서 패널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3. Persons who provided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to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15.7 in relation to the same or a substantially equivalent matter, shall not be eligible to be appointed as panelists in that matter.
제15.12조 **패널위원의 교체**	**Article 15.12**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원 패널의 어떠한 패널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행동 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제15.9조에 따른 원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Replacement of Panelists** If any of the panelists of the original panel becomes unable to act, withdraws, or needs to be replaced because that panelist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de of Conduct, a successor panelist shall be appointed in the same manner as prescribed for the appointment of the original panelist under Article 15.9 and the work of the panel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appointment of the successor panelist.
제15.13조 **패널의 기능**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가.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상규정과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나. 패널의 결정과 보고서에 사실 및 법적 조사결과와 패널이 한 모든 조사결과 및 내린 모든 결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rticle 15.13** **Function of the Pane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a) shall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of the measure at issue with the covered provisions; (b) shall set out, in its decisions and reports, the findings of fact and law, and the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and conclusions that it makes; and (c) should consult regularly with the Parties and provide adequate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제15.14조 **위임사항** 1.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일부터 15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5.14** **Terms of Reference**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panel,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shall b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양 당사국이 인용한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에 비추어 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와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를 하고, 제15.18조 및 제15.19조에 따라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covere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ited by the Parties, the matter referred to in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make findings on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t issue with the relevant covere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recommendations, if any, on the means to resolve the dispute, and to deliver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5.18 and 15.19.”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명시된 일정 내에 그 항에 언급된 것 외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그들의 합의 후 5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2. If the Parties agree on other terms of reference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within the timeline specified therein, they shall notify the agreed terms of reference to the panel no later than five days after their agreement.
제15.15조 해석 규칙	**Article 15.15 Rules of Interpretation**
1.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 규칙에 따라 대상 규정을 해석한다.	1. The panel shall interpret the covered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 적절한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보고서와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2. When appropriate, the panel may also take into account relevant interpretations in reports of panel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nd report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dop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3.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3. The rulings of the panel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협의 요청을 한 제소국은, 피소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회신하지 않거나 피소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 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양 당사국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긴급사안 3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협정 제15.8조).

3인으로 구성되는 패널 임명 절차는 각 당사국이 각 1명씩 임명하고, 제3자인 패널 의장은 공동 합의로 선임함(협정 제15.9조).

당사국 요청 시 패널은 구성 후 15일 내에 분쟁이 긴급 사안인지 여부를 예비 결정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5.10조).

패널 위원은 법·국제무역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임 또는 행동규범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5.11조, 제15.12조).

패널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결정과 보고서에 사실 및 법적 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5.13조).

패널은 협정 합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 해석 규칙에 따라 협정을 해석함. 다만,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사

국의 권리·의무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정함(협정 제15.14조, 제15.15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구분	한-UAE	한-캄보디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국	WTO
패널의 설치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	마지막 패널위원 임명	패널의장 임명	-	분쟁해결기구 결정
패널위원 임명 미합의시 절차	WTO 사무총장 PCA 사무총장	명부 추첨	명부 추첨	WTO 사무총장 PCA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명부 추첨	-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제15.8조부터 제15.15조까지는 패널의 설치, 구성, 자격요건, 기능 및 해석기준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의 핵심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패널위원 임명 지연시 WTO 사무총장 및 PCA(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의 보충적 임명 절차를 둔 것은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또한 패널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요건과 국제공법상 관습적 해석규칙

의 적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이는 WTO 분쟁해결체계와 유사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을 당사국 합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57]으로써 강행적 절차와 당사국 자율성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임.

라. 패널 절차 및 보고서의 채택·이행

1)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16조 **패널 절차**	**Article 15.16** **Proceedings of the Panel**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모범 절차 규칙을 따른다.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shall follow the model Rules of Procedure set out in Annex 15-A.
2.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2. There shall be no *ex parte* communications with the panel concerning matters under its consideration.
3. 패널의 심의 및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3. The deliberations of the panel and the documents submitted to it shall be kept confidential.
4.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	4. A Party asserting that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57) 제15.14조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명시된 일정 내에 그 항에 언급된 것 외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그들의 합의 후 5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such inconsistency. A Party asserting that a measure is subject to an excep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exception applies.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panel should consult with the Parties as appropriate and provide adequate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6. 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정을 컨센서스로 내리며,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패널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별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6. The panel shall make its decisions, including its reports, by consensus, but if consensus is not possible, then by majority vote. Any member of the panel may furnish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not unanimously agreed, and such separate opinions shall not be disclosed.
7 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7. Rulings of the panel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제15.17조 **정보의 입수**	**Article 15.17** **Receipt of Information**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를 양 당사국으로터 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한다.	1.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panel may seek from the Parties relevant information it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The Parties shall respond promptly and fully to any request by the panel for information.
2.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어떠한 정보원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다.	2.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panel may seek from any source any informa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3.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3.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panel may seek technical advice or expert opinion from any individual or body that i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조언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eems appropriate, and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agree.
4. 이 조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정보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양 당사국은 그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Any information obtained by the panel under this Articl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and the Parties may provide comments on that information.
제15.18조 **잠정보고서**	**Article 15.18** **Interim Report**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9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잠정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1. The panel shall deliver an interim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composition of the panel.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this deadline cannot be met,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for the delay and the date on which the panel plans to deliver its interim report.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the delay exceed 30 days after the deadline. The interim report shall not be made public.
2. 잠정보고서는 서술적 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규정한다.	2. The interim report shall set out a descriptive part and the panel's findings and conclusions.
3. 각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일 내에 잠정보고서의 정확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서면 의견과 서면 요청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그 요청의 전달부터 6일 내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Each Party may submit to the panel written comments and a written request to review precise aspects of the interim report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terim report. A Party may comment on the others Party's request within six days of the delivery of the request.
4. 잠정보고서에 대한 각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을 고려한 후,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After considering any written comments and requests by each Party on the interim report, the panel may modify the interim report and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19조 **최종보고서**	**Article 15.19** **Final Report**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135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 The panel shall deliver its final report to the Parties and Joint Committee within 135 days of the date of composition of the panel.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this deadline cannot be met,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shall notify the Parties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for the delay and the date on which the panel plans to deliver its final report.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the delay exceed 30 days after the deadline.
2. 최종 보고서는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패널은 자신의 최종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The final report shall include a discussion of any written comments and requests made by the Parties on the interim report. The panel may, in its final report, suggest ways in which the final report could be implemented.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부분적으로만 공표하거나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기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한 전달부터 15일 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3. The final report shall be made public within 15 days of its delivery to the Partie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o publish the final report only in parts or not to publish the final report.
제15.20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Article 15.20**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1. 피소 당사국이 제15.3조에 따른 대상 규정에 불합치하게 행동했다고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선의로 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Where the panel finds that the respondent Party has acted inconsistently with a covered provision pursuant to Article 15.3, the respondent Party shall take any measure necessary to comply promptly and in good faith with the Panel's ruling.
2.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	2. If it is impracticable to comply immediately, the respondent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우, 피소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통보하고,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shall,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elivery of the final report, notify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the final report and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agree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required for compliance with the final report.
제15.21조 **준수를 위한 합리적 기간**	**Article 15.21**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Compliance**
1.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15.20조제2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이 한 통보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원 패널에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이 항에 언급된 20일의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1. If the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length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plaining Party shall, no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made by the respondent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20.2 request in writing the original panel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Such request shall be notified simultaneously to the respondent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The 20-day period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2. 원 패널은 관련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2. The original panel shall deliver its decision to the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within 20 days of the relevant request.
3.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3. The length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compliance with the final report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제15.22조 **준수 검토**	**Article 15.22** **Compliance Review**
1. 피소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	1. The respondent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fication of its progress in complying with the final report to the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한달 전에 최종 보고서 준수에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complaining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compliance with the final report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2.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충분한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모든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2. The respondent Party shall, no later than at the date of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deliver a notification to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of any measure that it has taken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along with a description on how the measure ensures compliance sufficient to allow the complaining Party to assess the measure before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의 존재 또는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5.23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이 구해질 수 있거나 혜택의 정지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3. Where the Parties disagree on the existence of measures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or their consistency with the covered provisions,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the original panel to decide on the matter before compensation can be sought or suspension of benefits can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23.1. Such request shall be notified simultaneously to the respondent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4. 그 요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왜 피소 당사국이 한 어떤 조치도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했는지 또는 달리 대상 규정과 불합치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4. The request shall provide the f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why any measures taken by the respondent Party fail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or are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provisions.
5. 패널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6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5. The panel shall deliver its decision to the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reques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23조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	**Article 15.23** **Temporary Remedies in Case of Non-Compliance**
1. 피소 당사국이	1. If the respondent Party:
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a) fails to notify any measure taken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before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or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또는	(b) notifies the complaining Party in writing that it is not possible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or
다.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가 대상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원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c) the original panel finds that no measure taken to comply exists or that the measure taken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as notified by the respondent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provisions;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 또는 대안적 방안에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The respondent Party shall, on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agreeing on mutually satisfactory compensation or any alternative arrangement.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2. If the Parties fail to reach a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complaining Party may deliver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respondent Party that i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3.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에 통보를 송달한 날 후 20일째 되는 날에 이전 항에 언급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The complaining Party may beg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20 days after the date when it served notice on the respondent Party, unless the respondent Party made a request under paragraph 7.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4.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가.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리고	(a) shall be at a level equivalent to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is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respondent Party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and
나.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으로 제한된다.	(b) shall be restricted to benefits accruing to the respondent Party under this Agreement.
5.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5. In considering wha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to suspen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complaining Party shall apply the following principles: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 the complaining Party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the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as that affected by the measure that the panel ha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통지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적시한다.	(b)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n other sectors, if it considers that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n the same sector(s). The communication in which it notifies such a decision shall indic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6.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제1항에서 예견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는 일시적이며 조치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불합치가 제거되거나, 양 당사국이 제15.28조에 따른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때까지만 적용된다.	6.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or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foreseen in paragraph 1 shall be temporary and shall only apply until the inconsistency of the measure with the relevant covered provisions has been removed, or until the Parties have reached a mutually agreed solution pursuant to Article 15.28.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7.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 후 15일 이내에 원 패널에 그 사안을 조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원 패널은 피소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 또는 원 패널이 원래의 구성원으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새롭게 설치된 패널의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패널이 이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기 전까지 정지되지 않는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그 결정에 합치한다.	7. If the respondent Party considers that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does not comply with paragraphs 4 and 5, that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the original panel to examine the matter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at request shall be notified simultaneously to the complaining Party and to the Joint Committee. The original panel shall notify to the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its decision on the matter no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from the respondent Party, or if the original panel cannot be established with its original membe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last panelist of the newly established panel is appointe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shall not be suspended until the panel has delivered its decis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this decision.
제15.24조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검토**	**Article 15.24** **Review of any Measure Taken to Comply After the Adoption of Temporary Remedies**
1.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1. Upon the notification by the respondent Party to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of the measure taken to comply with the final report:
가. 제15.23조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종료한다. 또는	(a) in a situation where the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has been exercised by the complain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23, the complaining Party shall terminate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receipt of the notific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나. 필요한 보상에 합의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b) in a situation where necessary compensation has been agreed, the respondent Party may terminate the application of such compensation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2. 양 당사국이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과 합치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은 각 경우에 맞게 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종료된다. 통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의 부분적 준수만을 달성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수준은 패널의 결정에 비추어 조정된다.	2. If the Parties do not reach an agreement on whether the measur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s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covered provisions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he complaining Party shall request in writing the original panel to examine the matter. That request shall be notified simultaneously to the respondent Party and the Joint Committee. The decision of the panel shall be notified to the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request. If the panel decides that the measur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s consistent with the covered provisions,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or the application of the compensation, as the case may be, shall be terminated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If the panel determines that the notified measure achieves only partial compliance with the covered provisions, the level of suspension of benefits or other obligations, or of the compensation, shall be adapted in light of the decision of the panel.
제15.25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Article 15.25**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roceeding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패널의 업무를 정지한다. 패널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이 장에 따른 관련 기간은 패널 업무가 정지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지 기간의 종료 전에 업무를 재개한다. 패널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패널의 권한은 실효되고 분쟁해결 절차는 종료된다.	If both Parties so request in writing, the panel shall suspend its work for a period agreed by the Parties and not exceeding 12 consecutive months from such request. In the event of a suspension of the work of the panel, the relevant time periods under this Chapter shall be extended by the same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work of the panel was suspended. The panel shall resume its work before the end of the suspension period at the written request of both Parties. If the work of the panel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12 consecutive months, the authority of the panel shall lapse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all be terminated.
제15.26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Article 15.26** **Choice of Forum[58)]**
1. 이 장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양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this Chapter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vailable under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2. 이 협정과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른 국제 무역협정에 따라 특정 조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If a dispute with regard to a particular measure arises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 an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the complaining Party may select the forum in which to settle the dispute.
3. 제2항에 언급된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이 장	3. Once a Party has selected the forum and initiated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or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절차들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under the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particular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selected forum shall be used to the exclusion of other fora.
4. 제3항의 목적상,	4. For purposes of paragraph 3:
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5.8조에 따라 당사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are deemed to be initiated when a Party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나.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e WTO Agreement are deemed to be initiated when a Party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DSU; and
다. 그 밖의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any other agreement are deemed to be ini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제15.27조 **비용**	**Article 15.27** **Costs**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costs of the panel and other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its proceedings shall be borne in equal parts by the Parties.
2. 각 당사국은 패널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국의 경비와 그 밖의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2.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expenses and other legal cost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panel proceedings.
제15.28조 **상호 합의된 해결**	**Article 15.28** **Mutually Agreed Solution**
1. 양 당사국은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에 대하여 언제라도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	1. The Parties may reach a mutually agreed solution at any time with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를 수 있다.	respect to any dispute referred to in Article 15.3.
2. 패널 절차 동안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의장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 따라 패널은 종료된다.	2. If a mutually agreed solution is reached during the panel procedure, the Parties shall jointly notify that solution to the chairperson of the panel. Upon such notification, the panel shall be terminated.
3. 각 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the agreed time period.
4.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모든 조치를 합의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4. No later than at the expiry of the agreed time period, the implementing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measure that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제15.29조 **기간**	**Article 15.29** **Time Periods**
1.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부터 달력상의 일로 계산된다.	1. All time periods laid down in this Chapter shall be counted in calendar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act or fact to which they ref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2. 이 장에 언급된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2. Any time period referred to in this Chapter may be modifi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3.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긴급한 경우에 대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절반으로 단축된다.	3. All time periods laid down in this Chapter for cases of urgency shall be cut by hal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58) 국제통상협정에서 ‘choice of forum’은 동일한 분쟁이 둘 이상의 분쟁해결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국이 어느 분쟁해결 절차(예: 해당 FTA 분쟁해결절차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를 해결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하며, 선택된 체계는 이후 해당 분쟁에 대한 배타적 절차가 됨.(출처: WTO 사무국, “RTA Provisions Glossary” (용어집),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rtais.wto.org)

*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 상품·서비스 등의 교역에 대해 특혜적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을 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

패널은 부속서의 모범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심의 및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됨. 패널의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됨(협정 제15.16조).

패널은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는 양 당사국에 제공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협정 제15.17조).

패널은 협정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주장에 기초하여 서술적 부분, 사실과 법적 판단을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보고서를 발행함. 최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패널은 이행에 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음(협정 제15.18조, 제15.19조).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즉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전달 후 30일 이내에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통보함(협정 제15.20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에서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취할 수 있음(협정 제15.23조).

또한, 한-UAE CEPA와 WTO 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협정(EPA·CEPA)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WTO는 이러한 협정들을 RTA로 분류·관리하고 있음.

밖의 협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국은 적용할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의 이용을 배제함(협정 제15.26조).

2) 기체결 FTA와의 비교

구분	한-UAE	한-캄보디아	한-인니	RCEP	한-아세안	한-미국	WTO
패널위원 개별의견 제시	-	-	-	가능 (익명)	가능 (익명)	-	가능 (익명)
잠정 보고서 제출 기한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긴급 시 45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긴급 시 45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150일 내 (긴급 시 90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의장임명 180일 내	-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15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15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 (긴급한 경우 패널 설치일부터 90일 내)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45일 내	패널 설치일부터 6개월 (긴급한 경우 3개월)
패널심의 총 소요기간	135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30일 연장 가능)	180일 (30일 연장 가능)	120일 (60일 연장 가능)	225일	180일 (90일 연장 가능)

※ 자료: 산업통상부

3)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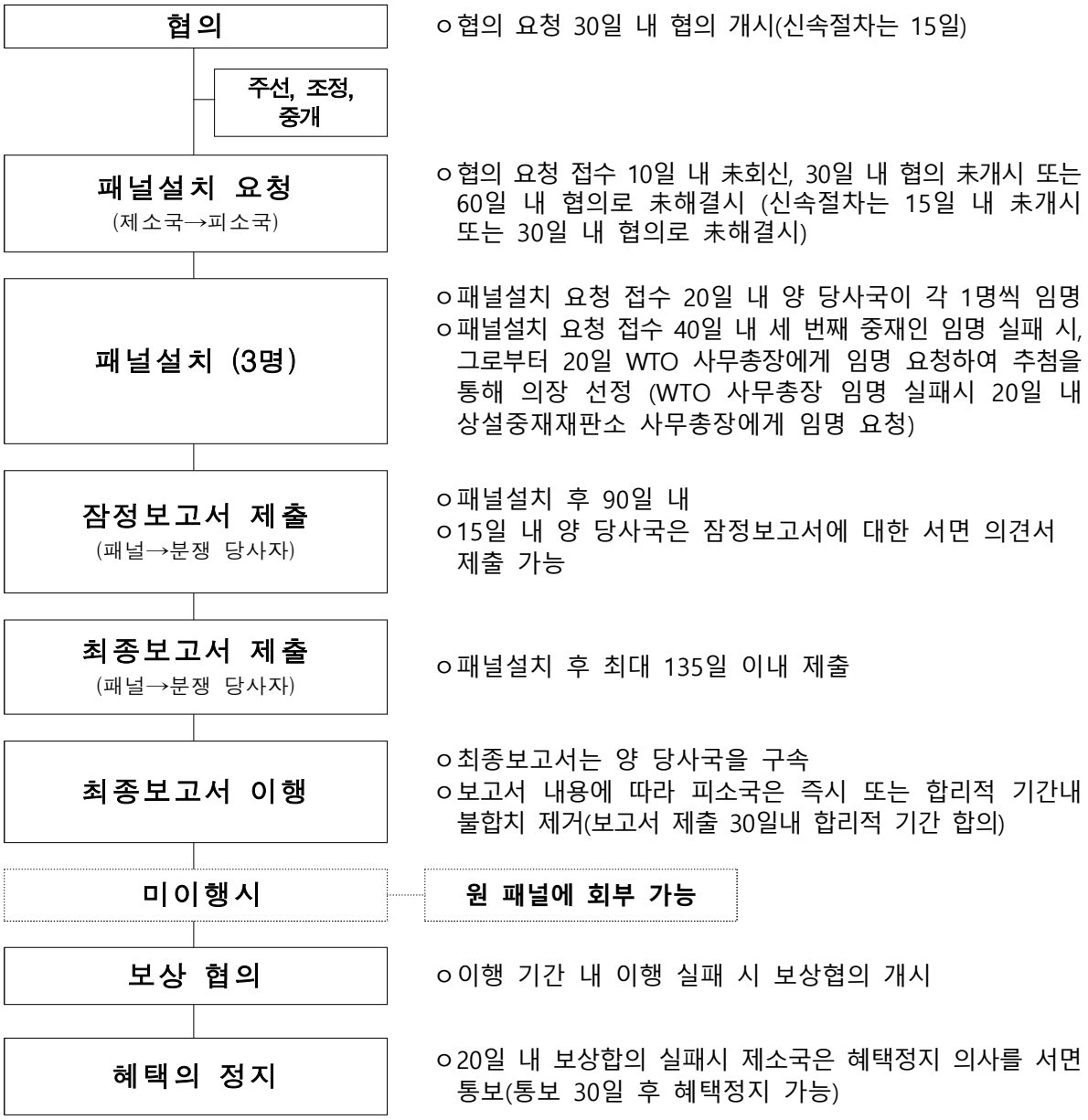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제15.16조(패널 절차)부터 제15.29조(기간)까지는 패널 절차의 운영, 보고서 채택, 이행 및 미준수 시 구제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구체화하고 있음.

입증책임, 비밀유지, 정보수집,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종보고서의 이행, 합리적 기간의 결정, 준수 검토 및 보상·혜택 정지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판정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규정을 통해 WTO 등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 제소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함.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FTA 분쟁해결 구조에 부합하는 체계로 보임.

한-UAE CEP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한-UAE CEPA 분쟁해결 절차 >



5. 소결

제15장(분쟁해결)은 협의-패널-이행-미준수 시 구제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갖추어,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특히 협의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긴급 사안에 대한 단축 절차를 두는 한편, 패널의 구성 방식·자격요건·보고서 채택 및 이행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절차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준수 검토, 합리적 기간의 결정, 보상 및 양허정지[59] 등 후속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분쟁해결절차의 선택(choice of forum) 규정[60]을 통해 WTO 등 타 협정과의 관계도 명확히 하고 있음.

59) 양허정지(Concession Suspension)는 WTO 등 국제 통상 협정에서 약속한 낮은 관세율(양허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높은 관세율을 다시 부과하는 조치를 말함. 이는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행위(예: 세이프가드 남용)를 했을 때 WTO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일종의 보복 관세임

60) 분쟁해결절차의 선택(Choice of Forum) 규정 : 계약 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느 곳(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 내 핵심 조항

제16장 예외

1. 개 요

제16장(예외)는 동 협정의 적용상 예외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WTO 협정상 인정되는 예외를 포함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WTO 협정상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61]의 일반적 예외가 동 한-UAE CEPA에도 적용됨.

2. 협정문의 구성

제16장(예외)은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시장 접근 등 일부 분야에 GATT 제20조를 준용하는 일반적 예외(제16.1조), 안보 예외(제16.2조) 및 과세(제16.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정부는 예외와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는 WTO 및 기체결 FTA의 일반적인 규정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설명함.

61) GATT 제20조상의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4. 협정문의 주요 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6.1조 **일반적 예외**	**Article 16.1** **General Exceptions**
1.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1. For purposes of Chapter Two (Trade in Goods),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Chapter Four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Chapter F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Chapter Six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XX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 are incorporated into and form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디지털 무역)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For purposes of Chapter Eight (Trade in Services) and Chapter Nine (Digital Trade),ArticleXIVofGATS, including its foot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forms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제16.2조 **안보 예외**	**Article 16.2** **Security Exceptions**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a) to require any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b)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1)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i) relating to fissionable and fu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2)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3) 군사시설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iii) relating to the supply of services as carried out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provisioning a military establishment;
4)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iv)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c)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16.3조 **과세**	**Article 16.3** **Taxation**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taxation measure.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ch tax convention, that tax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3.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협약 상에 기재된 기관이다.	3.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those listed under that convention.

양 당사국은 상품무역 등 관련 장에 대하여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및 그 주해를, 서비스무역 및 디지털무역에 대하여는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각주 포함)를 각각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하고 그 일부로 하여 일반적 예외를 적용하도록 규정함(협정 제16.1조)

또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핵물질·무기거래·군사시설 관련 조치, 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비상시 조치 등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도 허용함(협정 제16.2조).

아울러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 상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범위에서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며, 조세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협약에 기재된 기관으로 규정함(협정 제16.3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62]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62) 한-캄보디아 FTA, 한-베트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미국 FTA, 한-EU FTA, 한-콜롬비아 FTA 등

5. 검토의견

제16장(예외)는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정상 의무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조정한 장으로, WTO 협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제16.1조는 상품무역 등 관련 장에 대하여 1994년 GATT제20조 및 주해를, 서비스무역 및 디지털무역에 대하여는 GATS 제14조를 각각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협정에 통합함으로써, 공중도덕·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등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제16.2조는 필수적 안보 이익 보호 및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협정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주권적 판단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제16.3조는 과세조치를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협약과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분야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제16장은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예외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협정상 의무와 공공정책 목적 간의 균형을 도모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제17장 협정의 운영

1. 개 요

제17장(협정의 운영)은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정에 따른 각종 위원회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협정의 운영에 관한 제17장은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7.1조는 공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제17.2조는 협정 관련 공식적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 지정 및 언어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협상경과

정부는 협정의 운영 규정과 관련한 협상은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진행되었고, 내용상의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설명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7.1조 **공동위원회**	**Article 17.1** **Joint Committee**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2. 공동위원회는	2. The Joint Committee:
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a)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the UAE; and
나.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	(b) may establish standing or ad hoc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and assign any of its powers thereto.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한 번 회합한다.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3.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within one year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reafter, it shall meet every two year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o consider any matter relating to this Agreement. The regular sess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held alternately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4. 공동위원회는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특별 회기 요청일부터 과도한 지체없이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4. The Joint Committee shall also hold special sessions without undue delay from the date of a request thereof from either Party.
5.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 The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가. 이 협정을 적용하는 동안 획득한 경험과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이 협정의 결과와 전체적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a) to review and assess the results and overall operation of this Agreement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gained during its application and its objective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나.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양허의 수정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할 수 있는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한다.	(b) to consider any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hat may be proposed by either Party, including the modification of concessions made under this Agreement;
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발생하는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c) to endeavor to amicably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d) to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work of all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e) to consider any other matter that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부여될 상호 합의된 해석을 제안한다.	(f) if requested by either Party, to propose a mutually agreed interpretation to be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사.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결정을 채택하거나 권고를 한다. 그리고	(g) to adopt decisions or make recommendations as envisaged by this Agreement; and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h) to carry out any other function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6.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6. The Joint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working procedures.
7. 공동위원회와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7.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and of any standing or ad hoc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may be conducted in person or by any other means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8.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한다.	8. The Joint Committee shall take decis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by mutual agreement.
제17.2조	**Article 11.2** **Communications**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의사소통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식적 의사소통을 수신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to receive and facilitate offic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relating to this Agreement. 2. All official communications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제17조.1조는 양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의 이행 상황을 검토·평가하며, 협정의 개정 검토, 분쟁의 우호적 해결 노력,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감독·조율, 협정의 해석에 대한 상호합의된 해석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또한 공동위원회는 상호합의로 결정을 채택하고 권고를 하며, 자체 업무절차 규칙을 수립하도록 함.

제17.2조는 협정 관련 공식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접촉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기체결 주요 FTA와 비교할 때, 한-UAE CEPA의 공동위원회 정기

회합 주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필, 한-미, 한-EU, 한-인니 FTA는 모두 매년 회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산하위원회 구성 측면에서도 한-UAE CEPA는 7개의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어 비교 대상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UAE	한-필리핀	한-미국	한-EU	한-인니
공동위 회합 주기	2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산하 위원회 (부속 기구)	**분야별** ● 상품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기술장벽 ● 서비스무역 ● 투자원활화 ● 경제협력 ● 중소기업문제	**분야별** ● 상품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 역외가공지역 ● 무역구제 ● 경제및기술협력	**분야별** ● 역외가공 ● 수산	**분야별** ● 상품 ● SPS ● 관세 ● 서비스·투자 및 전자상거래 ● 지속가능발전 ● 역외가공	**분야별** ● 상품 ● 서비스·투자 ● 경제협력 ● 관세 및 무역원활화

※ 자료: 산업통상부

5. 검토의견

한-UAE CEPA는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 주기가 2년[63]으로 규정되어 있어, 협정 운영의 체계성과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당사국 요청에 따라 특별 회기를 개최[64]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 보임.

63) 제17.1조(공동위원회)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한 번 회합**한다.

64) 제17.1조(공동위원회)
4. 공동위원회는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특별 회기 요청일부터 과도한 지체없이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산하위원회는 대부분 매년 1회 회합하거나 필요 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도록 규정[65]되어 있어 각 분야별 협정 이행 점검과 조치 권고 등 세부 기능 수행이 가능함.

산하위원회는 총 7개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요 FTA와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협정 장에서 별도의 산하위원회를 두어 협정 이행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공동위원회와 산하위원회 간 역할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정 이행 과정에서는 각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65) **제2.18조(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제4.17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위원회)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제8.17조(서비스무역위원회)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12.3조(투자원활화위원회)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하되, **양 당사국은 최소 연 1회 회합하도록 노력**한다.

제14.4조(중소기업위원회)
3. 중소기업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 발효일 후 1년 내에 소집하고 그 이후 **매년 회합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와 경제협력위원회의 회합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한-UAE CEPA 위원회 규정 및 기능 >

구분		규정(조)	주요 기능
위원회	상품 무역위원회	제2.18조	▪ 제2장(상품)의 이행 및 운영 점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최신화 조치 등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제4.17조	▪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일관된 운영 보장, 해석 및 이행, 개정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제6.10조	▪ 제6장(기술장벽)의 이행과 운영 점검,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개선에 대한 협력, 기술규정·적합성 평가의 개발·채택·적용·집행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 보장, 규제당국·인정기관·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제안 검토,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과 관련된 요청 등 검토, 정보교환 및 협력 등
	서비스무역 위원회	제8.17조	▪ 제8장(서비스무역)의 이행과 운영 점검, 서비스무역 증진을 위한 조치의 식별 및 권고 등
	투자원활화 위원회	제12.3조	▪ 제12장(투자원활화)의 이행과 운영 점검, 특정한 투자 사안 등
	경제협력 위원회	제13.8조	▪ 제13장(경제협력)의 이행과 운영, 장래의 협력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확인, 연례작업프로그램 제안과 그 이행 메커니즘 개발,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 조정·점검 및 검토·개정 제안 등
	중소기업문제 위원회	제14.4조	▪ 제14장(중소기업)의 이행과 운영, 중소기업 지원 방법 확인,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법 확인 및 권고, 우수 관행 교환 및 논의, 중소기업 혜택을 알리는 세미나·워크숍·웨비나·멘토링 등 활동 증진,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 증진 등

※ 자료: 산업통상부

제18장 최종 규정

1. 개 요

‘최종 규정’은 동 협정의 부속서・부록・부속서한 및 각주, 개정, 존속 및 종료, 발효 및 정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협정문의 구성

제18장(최종 규정)은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문의 본문에서는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협정 제18.1조), 개정(협정 제18.2조), 존속 및 종료(협정 제18.3조), 발효(협정 제18.4조), 정본(협정 제18.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협상경과

최종 규정과 관련하여 협정의 발효, 개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국제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설명함.

4. 협정문의 주요내용 검토

가. 협정문의 내용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8.1조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	**Article 18.1** **Annexes, Appendices, Side Letters, and Footnotes**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The Annexes, Appendices, Side letters, and footnotes to this Agreemen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제18.2조 **개정**	**Article 18.2** **Amendments**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Either Party may submit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o the Joint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
2.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권고 후, 그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양 당사국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2.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after recommendation by the Joint Committee, be submitted to the Parties for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3.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8.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3.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8.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제18.3조 **존속 및 종료**	**Article 18.3** **Duration and Termination**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1.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n indefinite period.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to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있고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the other Party, and such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제18.4조 **발효**	**Article 18.4** **Entry into Force**
1. 이 협정의 발효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와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외교 경로를 통한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	1.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y each Party and the exchange of written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test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제18.5조 **정본**	**Article 18.5** **Authentic Texts**
이 협정은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This Agreement is done in duplicat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2024년 5월 29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9th day of May, 2024,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 통보로 교환한 날을 조건으로 발효하며, 발효 시점은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양 당사자국이 합의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18.2조, 제18.4조).

협정의 존속과 종료에 관하여 동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한쪽 당사국이 협정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종료됨(협정 제18.3조)

또한 한국어본, 아랍어본, 영어본 모두 정본으로 효력을 가지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 적용됨(협정 제18.5조).

나. 기체결 FTA와의 비교

구분	한-UAE	한-필리핀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한-미국
발효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날 또는 합의일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날 또는 합의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날	서면통보로부터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일	서면통보로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일
개정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종료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6월 후	서면통보로부터 180일 후

※ 자료: 산업통상부

5. 검토의견

최종 조항 규정 관련 협정의 개정, 발효, 종료 등은 모든 FTA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3
02) 6788-5264
02) 6788-5266
02) 6788-5270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며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협정 제2장(상품 무역) 제2.4조제2항에서는 한국은 부속서 2-가-1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국내법인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는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때에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협정 제2장에 따른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

협 정	관 계 법 령
제2장 **상품 무역**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생 략) 2. 이 협정의 발효 시, 한국은 부속서2-가-1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부속서2-가-2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생 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생 략)

○ 따라서, 이 협정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한-UAE CEPA 영향평가 결과

□ (**개요**)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효과**(GDP, 소비자후생, 고용, 세수) 및 **산업별 영향**(수출입, 생산효과) 분석*

*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라 타결 이후 영향평가를 실시. 대외경제硏, 산업硏, 농촌경제硏,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 참여('24.9~12월)

< 한-UAE CEPA 영향평가 결과 >

실질 GDP (10년 누적)	소비자 후생 (10년 누적)	생산효과			고용효과 (10년 누적)	세수증감 (10년평균)
		제조업 (15년 연평균)	농업 (15년 연평균)	수산업 (10년 연평균)		
0.02%	3.68억불	4,967억원	△5800만원	△1000만원	3,737명	△286.9억원

□ (**거시효과**) 한-UAE CEPA 발효에 따라 장기(10년간) ①**실질 GDP는 0.02% 증가** ②**소비자 후생은 3.68억불 증가 예상**

○ (**고용**) 발효 이후, 10년간 3,737**명의 고용 창출효과**

○ (**세수**)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약 286.9억원 감소** 예상*

* 관세수입 및 수입분 내국세 등 연평균 944.8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효과는 연평균 657.9억 원 발생 예상

□ (**산업영향**) **제조업 중심의 수출생산 확대** 기대

○ (**제조업**) 발효 이후 15년간, **자동차**(1,294억원), **화학**(1,059억원) 등 연평균 **약 4,967억원의 생산 증가효과 및 1,930억원의 순수출*** 확대 예상

* (수출) 자동차(914억원), 화학(625억원), 전기장비(284억원), 일반기계(211억원) 등 증가 예상

○ (**농축산업**) 대추야자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액 약 58백만원 감소** 예상

○ (**수산업**) 10년간 연평균, **수산업 생산액은 약 10백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식용해조류(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은 **수출 증가 기대**

【참고자료 3】 한-UAE CEPA 국내 보완대책 추진 계획

1 추진경과

□ 한-UAE CEPA 타결('23.10)에 따라 동 협정 **체결 이후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추진**

* (연구기관/연구기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기간) '24.9~12월

○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보완대책 수립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시 첨부**(통상조약법 제13조)

(통상조약법 제13조)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영향평가결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법률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 결과

◇ **(증가) 제조업은**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액 약 4,967억 원 증가**

◇ **(감소) 농업분야**는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액 약 58백만원 감소**
수산업분야는 10년간 연평균, **국내생산액 약 10백만원 감소**

□ 총괄

○ **(경제성장 효과)** 한-UAE CEPA 발효 후 10년 기준, ①**실질 GDP 0.02% 증가** ②**소비자 후생은 3.68억 달러 증가 예상**

○ (**고용**) 한-UAE CEPA 발효 10년 후 3,737명* **고용 창출효과** 예상

* 취업자 수 증가 효과: 서비스업 2,584명, 제조업 1,163명, 농수산업 △10명 順

○ (**세수**) 한-UAE CEPA 발효 후 10년간 **평균 286.9억 원 감소** 예상

* 관세수입 및 수입분 내국세 등 연평균 944.8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효과는 연평균 657.9억 원 발생 예상

□ 산업영향

○ (**제조업**) 발효 이후, **국내생산은** 15년간 연평균 자동차(1,294억원), 화학(1,059억원) 등 **약 4,967억원 증가, 순수출 1,930억원 확대** 예상

○ (**농업**) 대추야자 등 수입증가 영향으로 15년간 연평균 기준 **생산감소액은 약 58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누적 총 8.69억원 감소)

○ (**수산업**) 새우 등 수산물 수입증가로 10년간 연평균 기준 **생산감소액은 10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누적 총 1억원 감소)

- **어묵, 굴, 전복** 등이 유망 품목으로 수출 증가 기대

3 국내보완대책

□ 한-UAE CEPA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했던 한-미 FTA, 한-중 FTA* 등에 비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

* 농수축산업 생산감소액 : 한-중 FTA △181억원(20년간 연평균)

○ 농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비중, 피해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책 마련보다는**, 이미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 등을 필요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21～'23 한국의 對UAE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0.06%로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음

○ 발효 이후, **한-UAE CEPA 활용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동 **협정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